



분야별 통상환경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및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및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요약문

2





발 간 사

2016년 우리 경제는 수출 20% 감소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교역량 축소, 유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에는 8분기 만에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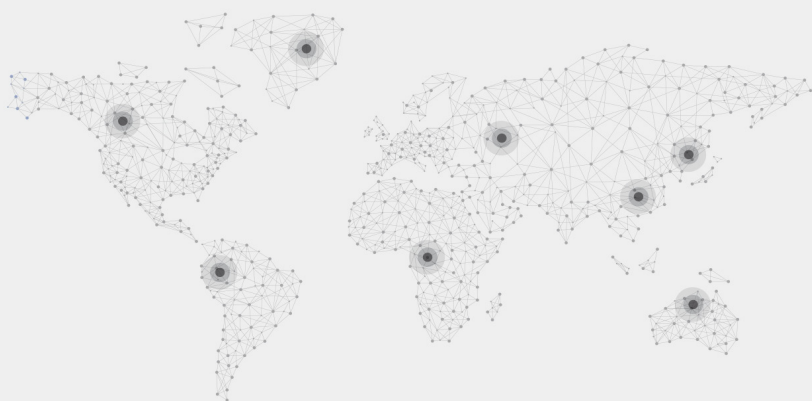
2017년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다시금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경제상황은 결코 우호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기업 모두 외국의 통상정책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에는 루마니아 등 5개국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어 전 세계 92개국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수시로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최신 정보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6

Contents

PART I 무역장벽보고서

PART II 분야별 통상환경

PART III 아시아 · 대양주

PART IV 아메리카

PART V 유럽

PART VI 아프리카 · 중동

관세	2
수입규제	29
통관절차	77
세이프가드	107
반덤핑 및 상계관세	113
보조금	127
원산지규정	133
정부조달	154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185
지식재산권	250
서비스	278
금융서비스	329
투자	341
환경	387
경쟁정책	431
요약문	463

분야별 통상환경

관세 수입규제(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요약문

2

관세

개관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 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관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세장벽 완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는 IT제품, 환경상품 등을 중심으로

WTO 복수 회원국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expansion)의 최종타결이 선언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7월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되면 전체 FTA 발효건수가 15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2015년 9월에 개시된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는 2016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밖에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 바, 각국의 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분류되고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분류된다. 또한,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분류되며 과세의 성격에 따라 국정관세, 협정관세 등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 관세의 종류

- 과세의 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 과세의 목적: 재정관세, 보호관세
- 과세의 방법: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 과세의 성격: 일반관세(국정관세, 협정관세), 특수관세(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동 관세율표에는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에 있으면 재정관세, 섬유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으면 보호관세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지리아 등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수단으로써의 관세는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종가세와 상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대부분의 경우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공평하게 과세되며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과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종량세는 일부 농림수산업 등에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한 관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합쳐 과세하는 복합세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가 있다.

또한,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국정관세(보통 기본관세(general tariff))라 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하는데, 협정관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WTO 협정 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율 인상은 할 수 없으며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각국은 국내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건의 변화에 따라 관세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간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황분석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로 여기에는 다자통상 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 등)가 종종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이 13.9%, 평균 양허세율이 16.8%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 2015년 주요국별 평균관세율

(단위: %)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평균양허세율	16.8	3.5	4.8	4.4	6.8	9.9	10.0	31.4	48.5	7.6
평균실행세율	13.9	3.5	5.1	4.0	4.2	2.5	9.9	13.5	13.4	7.8
양허비율	94.5	100	100	99.7	99.7	97.0	100	100	74.4	100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16, World Tariff Profiles 2016.

주요 품목별 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그리고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아래 표 참고).

》》 2015년 국가별 주요 품목별 평균관세율

(단위: %)

국가		농산물		운송장비		전기기계		섬유		의류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양허	양허	양허	실행	양허	실행
선진국	미국	4.8	5.2	3.0	3.1	1.7	1.7	8.0	7.9	11.6	11.6
	EU*	10.9	10.7	4.1	4.3	2.4	2.8	6.5	6.5	11.5	11.4
	일본	16.6	12.9	0.0	0.0	0.2	0.1	5.5	5.4	9.2	9.0
	캐나다	16.6	16.7	5.6	5.7	4.4	1.1	10.6	2.3	17.2	16.5
	호주	3.4	1.2	12.5	4.7	11.0	2.9	18.2	4.2	41.4	4.6
개도국	중국	15.7	15.6	11.4	11.4	9.0	9.0	9.8	9.6	16.1	16.0
	브라질	35.4	10.0	33.1	18.2	31.9	14.1	34.8	23.3	35.0	34.9
	인도	113.5	32.7	35.7	19.4	27.8	7.2	27.2	11.8	37.4	12.3
	러시아	11.0	10.8	8.9	8.9	6.2	5.6	7.7	8.9	8.7	11.0
한국		57.9	56.8	8.2	5.5	9.4	6.2	16.6	9.0	28.4	12.5

주: 자료 출처 차이로 이후 국별로 서술된 부분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WTO, 2016, World Tariff Profiles 2016.

국별 자료를 토대로 최근 각국의 관세율구조 및 운영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자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비롯된 일반적인 현상이다. WTO 가입국이 급증하면서 다자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무역상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예컨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2000년대 이후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관세율 체계를 신속하게 국제적 표준에 조화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도와 같이 전통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근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자체제가 힘을 발휘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둘째, 지역주의의 확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현재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43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별로 특혜관세율을 지역무역협정국에게 부여하면서 관세율 체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특혜관세로 인한 역외국의 손실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각국은 관세율을 여전히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취약산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각국의 관세율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DDA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관세율 운영체계를 투명화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율만으로 각국의 개방도를 가늠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업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외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국내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별 관세인하의 추세와 잔존하고 있는 고관세 품목, 그리고 관세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 관한 WTO의 2015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10,514개 세번)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8%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체 품목의 36.8%가 무관세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3배가 넘는 품목이 7%에 달하며, 특히 섬유류, 의류 및 농산물 등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2012.3.15.일에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 품목의 82.1%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92.8%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게 된다.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특히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스웨터(32%), 양말(13.5%), 남성바지(28.2%)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되었다.

EU는 2014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379개 세번)의 단순평균관세율이 6.5% 수준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4.6%, 비농산물의 경우는 4.4%이다. 전체 품목 중 23.9%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6%이다. 2011.7.1 한·EU FTA의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 철폐 양허에 따라 2013.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도 발효 5년 후인 2015.7.1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일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평균실행관세율 4.6%, 공산품의 평균관세율 2.6%)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16.6%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에서 보호가 필요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관심 품목인 농수산물이나 가죽/고무, 섬유 등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육가공류 58.2%, 쇠고기(목, 어깨살) 38.5%, 쇠고기(머리살) 50%, 가공하지 않은 치즈 40%, 가죽에 대하여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밖에 소주에 대한 고율관세(16%) 적용, 자동차용 카펫에 대한 관세부과(Roll 형태, 7.6%)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는 2014년 기준 평균관세율 2.7%, 농산품 관세율 1.2%, 비농산품 관세율 3.0%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과 직물, 의류 및 신발류(TCF: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평균 5%)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제품(2.9%), 일반 기계(2.9%), 기타 제조업(1.3%) 등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대외 수출입 정책 차원에서 승용차 및 TCF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세 인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직물, 신발은 2010.1월부터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의류는 종전 17.5%에서 10%로 인하한데 이어 2015년부터는 5%로 추가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주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관세자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¹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

1_ 호주 수입관세 정보는 <http://www.border.gov.au/Busi/Tari/Curr#Schedule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 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호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12.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는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에 해당하는 우리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발효 5년내 철폐할 예정(품목수 기준 90.9%에 대해 발효 즉시철폐)이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일 즉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바 있다.

캐나다의 2014년 기준 최혜국 평균관세율은 2.48%, 공산품에는 평균 2.38%, 농산품에는 평균 3.1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WTO DB 통계).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에 대해 19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한 이래로 매 10년마다 연장을 해 오다가 2014년에 종료하였다. 이후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최혜국 평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및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였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은 최혜국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개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가금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

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2016년 787개에서 2017년에는 822개로 증가(2017.7월부터 805개로 축소 예정)하였다. 2017년 중국 세칙의 세목 수는 8,547개로 전년에 비해 253개 늘어났으며, 선진설비, 중요부품과 에너지원재료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잠정세율 방식으로 집적회로시험선별설비, 항공기용 압축작동기, 고해상도 디스크방식 디지털 영화상영기 부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었다. 또한 중국소비자의 구매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금붕어, 북극새우, 크랜베리와 같은 특색식품과 조소품 원료 등 문화소비재의 수입관세도 인하하였다. 국내 산업의 발전과 기술진보 상황을 반영하여 2017년 이전에 잠정세율 적용을 받던 제3나트륨폴리머, 변화기능이 있는 반도체구조, 변성에탄올 등의 수입관세도 이에 맞게 조정하였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양자 및 다자간 경제무역협력과 FTA 체결에 따라 해당국가와 지역의 원산지 수입상품에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으로 정보통신상품, 반도체 및 그 생산설비, 디스플레이상품 등 280여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을 인하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5. 12. 20일 발효된 한·중 FTA를 통해서는 2017. 1. 1일에 이행 3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FTA를 통해 지금까지 총 4,287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가 있었으며, 발효 20년이 되는 해에는 전체 품목수의 92.2%(한국수입 기준), 90.7%(중국수입 기준)에 대해 무관세가 실현될 예정이다.

대만은 2002.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4,491개 품목이며, 2015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4.66%, 4.23%이다.

한국에게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인 ASEAN 시장은 2007.6월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장벽

이 많이 완화되었다.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정에서는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품목군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0%이다. 또한 2012년까지 20%로, 2016년까지 0~5%로 관세가 인하되는 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6~7%, 수입액 기준 7%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초민감품목은 수입액 기준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등이 수입액 기준 상한선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분류되지 않고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CKD(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은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완성차도 국별로 2010년 관세철폐 또는 2016년 0~5%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산 철강제품 역시 경쟁상대국인 중국, 일본제품에 비해 유리한 시장접근의 수준을 확보하였다.

동남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하여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0개), 담배(30개), 유류(7개), 자동차(151개) 등 4개 품목군, 238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일본·중국·호주 등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MFN 평균 관세율을 보면 WTO 가입전인 2000년에는 16.2%였으나, WTO 가입 후인 2011년도에는 11.1%로 낮아졌다. 그리고 최근 발효된 한국과의 양자간 FTA(2015.12.20)를 비롯하여 미국 등과의 TPP, EU와의 FTA 등이 추가적으로 발효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인 한·베트남 FTA는 한·ASEAN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한국 94.7%(+3%p), 베트남 92.4%(+6.1%p)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한 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등을 3년, 전동기,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 철도 차량부품,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화장품 등은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의 관세율표는 「재무부 시행령 122/2016/ND-CP(2016.09.01.)」을 따른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5년 기준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9,822개 품목의 58%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6%의 품목에 대해 20~6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2015년 평균 관세율은 7.1%이며 부문별로는 농업분야가 11.83%로 가장 높고 광업 2.3%, 제조업 6.16% 가량이다. 한국은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면서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이 관세가 철폐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 시행으로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 2012.1.1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은 2016.1.1까지 0~5%로 감축되었다. 전체 품목수의 3%에 해당하는 상품(초민감품목, 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식으로 보호된다. 2016.1.1 이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개 초민감품목

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니 CEPA 협상의 주된 시장개방 대상이 되고 있다. 한·인니 CEPA는 2014.2월 7차 협상 이후 중단된 상태로 2014.12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간 면담에서 재개를 합의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내 의견 조율을 이유로 아직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태국은 1999.1.1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0%, 중간제품은 3%, 완성 제품 등은 7% 또는 1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1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12.28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10월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 1,047개, 농산품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아세안에서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권역 내 무역·투자 장벽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2016. 10월 현재 11개로 이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5건(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페루와의 FTA)이며, 나머지 6건은 아세안 차원에서 체결한 FTA 협정이다. 태국은 과거 추진했던 EU와의 FTA 협상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 파키스탄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역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가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캄보디아는 시장개방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로 특별한 관세장벽은 없다. 2004년 WTO 가입 이후 추가 관세인하에도 적극적이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자재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중아시아의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 밀, 계란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국내 맥주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와 특수용도 자동차, 항공기 및 관련 부속품, 중소기업용 공장 자재 및 장비 등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화 수준이 낮은 관제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수제 모직 및 견직 카펫은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1㎡당 20달러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주요 수입품목(식료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의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인상하였다.

서남아 국가들은 개도국 가운데서도 대체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역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아직까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서 2016/2017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세수 중 14.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는 2007년 10%로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 양등 및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한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2015.2월 현재 주요 사치성 소비재 품목(314개)에 대한 관세를 5~15% 부과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보통 원재료에 대해서는 0~5%, 완제품에 대해서는 10~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스리랑카의 평균 실행 세율은 농산품이 25.6%, 비농산품이 9.2%이며, HS2012 기준 6,965개 품목 중 56%가 무관세이다. 다만,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스리랑카의 주요 제조업 생산품목과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차(茶)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커피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총생산 중 제조업분야가 약 10%에 불과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제

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의류, 신발, 섬유 등을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MFN 평균 관세율은 2.4%이며, HS code 기준 전체 7,510개 품목 중 4,381개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2015. 12. 20일에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한국의 수출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6.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양허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고 관세율 역시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세 이외의 장벽도 많아 관세율 인하 자체만으로 무역장벽의 완화를 속단할 수 없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1995년 발족한 MERCOSUR의 일원으로 대외공동관세(CET)를 채택하고 있다(2012.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는 과거(1990년 32%)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6%), 중국(8%) 등 여타 신흥경제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이다. MERCOSUR의 예외품목 리스트(2012.1.1 발효)에 따라 브라질의 해당 100개 품목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한편 2015.7월 MERCOSUR는 예외품목 리스트 제도를 2021년 말까지 연장기로 하였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0%가 적용되는 것은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추가됨으로서 가치를 갖는 품목이다. 그 외 멕시코 내 생산여부, 자본재 및 부품인지 소비재인지 여부에 따라 3~5%, 10~13%, 15~20%, 23~35%로 구분된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멕시코 정부는 2011. 11.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165개 석유화

학 제품과 315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방안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는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세인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관세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 평균 4.2%→4.0%, 농수산물은 21.7%→14.2%로 인하된다. 또한, 2016.1.6 일 멕시코는 「수출입일반관세법」에 명시된 항목들 중 화학제품, 섬유, 의류, 신발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MERCOSUR 회원국인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고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균치는 10.3%이다. CET에 산업별·국별 예외가 존재한다. 산업별 예외는 자본재, 정보기술, 통신에 관련된 물자가 해당되며, 국별 예외는 각 회원국들이 특정 물자를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루과이가 CET 예외 목록에 포함시킨 품목은 총 2,115개이며, 그 중 1,223개가 산업별 예외 대상이고 892개는 국별 예외 대상이다.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나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2~6%), 중간재(8~9%), 소비재(10~20%)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과테말라는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역내국(중미공동시장 참여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한다. 중미관세제도(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1005.90.30),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껌(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SAC의 품목분류체계는 지난 2016.8월 중미공동관세체계 6차 개정 결과에 따라 2017.1.1일부터 기존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 될 예정이다. 과테말라는 2012년부터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최초등록세(세율은 차량가액의 5~20%)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자동차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과테말라에서 최초등록세 제도는 수입관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진행된 CAN와 EU간의 통상협정은 난항을 거쳐 2014.7.17일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써 에콰도르 바나나, 참치, 브로콜리 등 농수산품의 대EU 수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EU로부터는 자동차, 의약품, 주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주었던 「안데스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이 2013.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으나, 2015.6.29.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에콰도르의 경우 약 275개 제품이 미국의 GSP에 적용되었으며, 과일 및 야채, 목재, 특정섬유, 세라믹, 비금속광물 제품과 화훼(장미 제외) 등의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되었다. 에콰도르는 한국, EFTA, 캐나다 등을 다음 무역협정체결 대상국으로 정하고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8.25.일 서울에서 한국과 에콰도르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상 개시선언을 하였다. 이후 2016.1월 한-에콰도르 SECA 1차 협상이 시작되어 2016.11월 현재까지 5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페루는 2012년 1월부터 발효된 「법령(238-2011-EF)」 하에 기준 품목수(7554개)를 기준으로 약 70.3%가 0%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고, 20.7% 정도가 6% 관세율, 9%가 11%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율 0% 적용의 5,309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468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3,195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1,646개 품목이다. 페루 평균 관세율은 2010년 5%에서 2011년 3.2%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5년 현재 2.2%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가전제품, 기계류, 운송기기류 등은 한·페루 FTA 발효와 더불어 지속된 페루의 관세인하 정책으로 對 페루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파나마의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관세에 부가하여 모든 수입품에는 일종의 판매세인 ITBMS(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es Muebles y Servicios)

을 부과한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와 ITBMS이외에 특별소비세(Selective Consumption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파나마의 전체 수입 관세품목은 8,988개에 이르고, 무관세인 0%에서 최고 260%까지 29단계의 관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 97%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6단계(0%, 3%, 5%, 6%, 10% 및 15%)로 구분되는 관세율 내에 들어간다. 또한 요트를 비롯한 여가용 선박 28개 품목의 경우에는 선체 크기에 따라 \$100-\$20,000 사이의 고정 관세가 적용된다.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으로 농민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10%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따라서 파나마는 최소한의 공산품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선박용 디젤유 30% 관세 등)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방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 다수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도 하였다. 2015.4월 발표된 관보에 따르면, 쌀의 경우 관세율이 90%에 달하며 우유를 비롯한 낙농제품에는 최고 15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13부터 2015년간 매년 사료용 옥수수 가격 통제를 위해 40%에 달하는 옥수수 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에 따라 관세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하기도 한다.

니카라과는 「수입관세법」과 CACM(중미공동시장) 협약에 따라 역외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편, 2006.4.1.일부터 발효 중인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를 무관세로 수입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물(돼지고기,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관련 제세는 최고 40%의 관세, 10~130% 특별소비세(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담배 등), 18%의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0.4%의 세관서비스 수수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관세, 특별소

비세 및 세관서비스 수수료는 CIF 가격 기준,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수출자유구역(Zona Franca)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며, 국내시장 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 양허 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수입품목을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세율(0%, 5%, 10%, 15%, 20%)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15%이다.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2013.2.21일 정식서명된 한·콜롬비아 FTA는 2016.7.15일 발효되었다.

온두라스는 CACM(중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자국의 기본관세체제를 CACM의 대외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서적,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트럭 및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킬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면세혜택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및 세원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법」 및 「관세법」상 적용받는 모든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관련 신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맥주, 브랜디 등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8%의 특별소비세가, 이외 세관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온두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할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동유럽 국가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과 함께 2015.1.1. 일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의 회원국이다. 그러나 EEU가 출범

하여도 기존의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구역 등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2015.5월 EEU와 베트남 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도 검토 혹은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간 FTA 협상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30개국이 EEU와의 FTA 체결 의향을 표한 상태이다. 한편 EEU 회원국들은 현재의 「관세동맹 관세법」을 대체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2016.12월 예정인 최고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개정안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청해 온 사항(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개인용 물품은 비용 또는 중량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EEU 국경 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반영되어 있다.

세르비아는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은 8.7%이다.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6.2%이나 농산물은 17%이며, 국내 농산물 보호자원에서 최고 수준인 30%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관세율은 10%), 가전제품(5~10%), 폴리에틸렌(5%), 기계류(1%) 등이다.

중동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활용하거나 제도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가 발견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HS기준에 따른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12%, 20%로 구분하고 있다. 쌀, 설탕 등 기본 생필품은 무관세,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는 5%, 자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품과 경쟁이 예상되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중이다. 한편, 걸프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관세행정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최저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 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UAE는 개방적 시장경제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한다. 단 예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해 무관세(왕실, 정부 및 외교관용으로 수입하는 상품이나 병원, 자선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원산지가 GCC회원국인 상품) 또는 고율(담배 100%, 주류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가축류, 기초 식품류, 약품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UAE 내 수입된 물품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MFN 관세 평균은 6.4% 수준이며,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4.6%)에 비해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24.5%)이 높은 편이다. 농산품 중 낙농제품에 대해 관세율은 1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TAMA(추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TAMA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구매세와 연동되어 있다. TAMA의 가산율은 수입업자의 평균수익율과 국내산 상품 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TAMA 및 구매세는 관세율표에 표기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1985년 미국과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EU, EFTA, 캐나다, 멕시코, 터키, MERCOSUR, 콜롬비아 등 4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2016.11월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등과 FTA 협상 또는 관련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과는 2016.6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바레인은 2003년 1월 GCC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관세부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5년 현재 428개의 물품(주로 식료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술과 담배는 제외). 또한 원칙적으로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에 사용될 반제품들, 혹은 재수출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바레인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125%와 110% 관세를 부

과해 왔으나, 2016.2월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동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각각 225%, 200%로 인상하였다. 바레인 GCC 내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GCC 국가들은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통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수입되는 GCC 국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게 하고 그 후 다른 GCC 국가로 이동될시 세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란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 간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 적용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8개 ECO(이슬람경제공동체) 회원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란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품이 덤핑이나 부당한 혜택 하에 이란으로 반입되어 동종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란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관세 산정방식은 CIF 가격(US \$) × 1달러당 환율(Rial) × 해당수입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본관세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에 대해 저율의 관세(통상 5%)가 적용되고 완제품 및 소비재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라크는 2010년 「관세법」을 마련하여 5~35% 수준(주류 등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6.1월부터 동 법을 전격 시행하였다(쿠르디스탄 제외).

모로코의 수입관세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산품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과 자국 산업 발달유무에 따라 0%부터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되고 농산품의 경우 밀(73%), 설탕(60%) 등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2009~2012년간 진행되어 온 자발적인 최혜국 실행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현행 공산품 수입에 부과되는 30%의 최고 관세를 2012년 25%로 낮추고 관세부과 단계를 2008년 7단계에서 2012

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2012년 이후 추가적인 관세인하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모로코는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미국, 터키,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UAE, 여타 아랍국가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모로코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EU와는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미국 및 터키와는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철폐가 완료되어 자동차 등 한국산 주력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카타르는 GCC 관세동맹국들이 합의한 공통관세율을 2003.1월부터 채택, 적용하고 있다. 기준관세율은 일반적으로 CIF 가격의 5%이다. 철근, 철봉, 시멘트 20%, 요소는 30%, 악기류는 15%, 술과 담배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단, 카타르산업개발은행이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계류, 원자재 및 기타 산업자재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장벽은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상품의 9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은 1996년 13.82%에서 2013년 7.44%로 점차 인하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는 점차 인하되는 추세로, 1999년 50.5%에서 2013년에는 20~25%까지 인하되었으며, 동일 수준의 관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2015.2.18.일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 범위 내인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집트는 시장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특히, 2004.7월 출범한 Nazif 총리 내각은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2008.4월에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135%),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3월 이집트 정부는 선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또한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 목적으로 2016.1월에는 대통령령(No.25, 2016)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하였다.

나이지리아의 관세는 원유 수출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수입관세는 Import Duty와 Sur Charge, VAT 및 특정품목에 대한 조합공제금 등 약 4가지로 구분된다. 2008.8.26일 발표된 새로운 관세율은 나이지리아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관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강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여 해외기업의 현지화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2014.7.1일부터 해외기업의 나이지리아 현지화를 강화하여 고용창출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완성자동차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 관세는 대폭 인상하고,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부품 수입 관세는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나는 WTO 및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회원국이다. 가나는 2016.2.1일 ECOWAS의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가나는 의약품 및 비료 등 기초 필수재는 0%, 원자재는 5%, 중간재는 10%,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감사, 가공 초콜렛, 가공 육류 등)는 35%

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COWAS는 2014년 가나에서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에서 EU와의 경제파트너협정(EPA)을 체결하기로 하고 현재 회원국별로 서명·발효를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가나는 2016.8월 EU와 EPA 협정에 서명하여, 가나와 EU간에는 수입 쿼터나 관세가 상호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나의 ECOWAS 공동역외관세 시행과 EU와 가나간 EPA 체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통상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단은 2015년 현재 WTO 회원국이 아닌 읍저버이다. 수단의 평균 관세율은 20.4%로 관세율이 높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 등 8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의 평균관세율 12.5%나 저소득 국가 그룹 평균관세율 11.4%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별 관세율의 편차도 매우 큰데 가령 의료기와 제약은 수입 품목 중 무관세의 대표적인 품목이며 사치품은 현재에도 높은 관세율과 여러 다른 제약을 받고 있다. 농산물과 非농산물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19.5%인데 반해 非농산물 품목은 15.7%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에티오피아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35%의 수입관세와 15%의 VAT를 부과하나, 신산업 육성 및 국내 산업, 제품 보호를 위해 기계, 장비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나 차등적 부과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과 면세 신청서를 에티오피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30여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12개국과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와는 가서명(2014.7월) 상태로 본서명과 비준을 앞두고 있다. 관세는 0~35%까지 6단계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다르다. Excise Tax는 주로 사치재에 부과되며, 주류(맥주, 위스키 50%, 기타 알콜음료 100%), 담배(20%, 시가 75%) 등이다.

앙골라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0.9%(농산물 23.5%)로 2005년의 7.4% 대비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경제다변화 정책을 위해 일부 품목(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관세법」을 재개정하여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맥주, 과일주스, 토마토, 양파, 마늘, 콩, 감자 등 야채 및 벽돌, 지붕 자재 등 건축 자재의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다. 동시에 앙골라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앙골라 정부는 외국 석유회사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석유제품 수입 관세를 결정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WTO 및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 그리고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1998.1.1.일부터 발효된 UEMOA 공동대외관세(CET)에 이어 2015년부터는 ECOWAS CET가 발효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 경제통합 및 활성화가 진전되고 있다. ECOWAS CET에 따라 서아프리카 지역 수입품은 사회적 생필품 면세, 필수원자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 담배 및 주류 등 35%의 5가지 관세대역으로 부과된다.

DR콩고는 관세를 정부 세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와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COMESA와 SADC, ECCAS(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자유무역시대 창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며, 2015.6.10일 3개 공동체 대표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TFTA(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TFTA는 3개 공동체 26개 회원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시차를 두어 점차 관세를 낮춤으로서 종국적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협정은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약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면 2017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² 현재 DR콩고의 관세는 HS2012에 기초

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면세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평균 관세율이 2006년 45%에서 2016년 14%로 대폭 하락하였다. 현재 관세율은 0%, 20%, 36%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최고 관세율도 2006년 150%에서 2009년 36%로 조정되었다. 평균 관세율 하락은 EU와 체결된 제후협정에 힘입은 바 크다.

2_ TFTA가 발효될 경우, 아프리카 26개국, 약 6억 3,000만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시장에 최대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개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GATT 협정문 제XI조는 수출과 수입에 대해 관세나 세금, 과징금 이외의 수량제한, 수출입허가 등에 의한 규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제XI조 2항), 국제수지문제(제XVIII조 2의 b항)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GATT 협정문 제XIII조는 제I조에서 일반적인 최혜국대우(MFN treatment)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예외적으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각 계약국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에 가장 가깝게 수량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해야

합을 규정하고 있다. 수량제한 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수량제한이 관세와 비교할 때 자유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즉, 관세는 일국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 되더라도 외국의 상품이 관세에 의한 장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국제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제한된 수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다.

WTO산하 수입허가위원회에서 수입허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정한 규율위반여부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수입허가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즉각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

(단위: 건)

무역관련 수입조치 유형	2011.10 ~ 2012.10	2012.10 ~ 2013.11	2013.11 ~ 2014.10	2014.10 ~ 2015.10	2014.10 ~ 2015.5 (7개월)	2015.10 ~ 2016.5 (7개월)
수입	118	153	119	136	77	116
관세	54	106	74	88	52	66
통관절차	38	25	26	20	10	25
Tax	6	6	7	11	4	11
수량제한	20	15	11	11	6	10
기타	0	1	1	6	5	4

주: 각 기간은 해당 월의 중순 경을 의미함.

자료: WTO(2016), WT/TPR/OV/W/10, p.23

최근의 보호주의적인 추세는 수입관세, 통관절차, 수량제한 등 수입관련 조치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2015년 10월 중순~2016년 5월 중순) WTO 회원국의 수입관련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총 116건(전년대비 51% 증가)의 무역관련 수입조치가 신규 부과되었다. 수

입조치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통관절차, 내국세, 수량제한 등의 순이다. 특히 수량제한 조치가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하여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조치가 최근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³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거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해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한다.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에 따라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통제 및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 및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3_ 이와 관련하여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를 통한 규제가 드물게 존재하고 있다.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주로 1차 산품이며 대표적인 품목은 원목으로 미국이 특정 조류(점박이 올빼미; spotted owl)의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이 국내 가공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식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국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 시 최혜국대우(MFN) 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사례⁴⁾는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아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없다. 다만,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구한다.

페루는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비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다. 내외국인 동일대

4_ 일반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페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5년 이상 수령의 중고승용차, 8년 이상 수령의 3톤 이상 트럭 및 중고자동차 부품 등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규제가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Decreto 10-2012’에 따라 연식규제를 2012.3월부터 시행하여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의 수입(등록)을 금지하였으나, 이 규제는 2013년 6월 29일 철폐되었다. 단, 차종별로 10~15년을 초과하는 모델을 수입할 경우 시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검사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무기류, 탄약, 페타이어, 화약물질 및 마리화나, 모르핀 등 항정신성 약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파나마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 선전물,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내용물과 다른 표시 이 부착된 의약품,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도검 및 무기류, 복권, 아편 등 마약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등과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농산물, 남극대구 및 비막치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브러시류, 화학무기, 씹는담배, 인간 배아, 마약류, 애완동물용 추적기, 특정 개 품종, 멸종 위기류, 폭발물, 허위과장광고상품, 위험물질, 위험폐기물, 해양 포유류, 현금, 불법개조차량, 유해물, 오존파괴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처방약품, 무선전파방해 장비, 방사능물질, 송어류,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규격 미달 및 표기 삭제된 타이어, 남방 참다랑어 등에 대해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농·수산물과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은 유럽연합에서 EU 내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품목으로 스페인에서는 동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2013년 초,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위법벌채를 막기 위해 「EU 목제품 수입 규제법」이 채택되었다.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 및

금지하고 있으며 2014.11월 기준 총 2,195개의 농·공산품(농산품 968개 품목, 공산품 1,227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다.

싱가포르를 보건, 공공안전 등의 이유로 껌, 씹는담배(chewing tobacco), 전자담배와 같은 담배모조품, 물담배, 권총 모양의 라이터, 금지약물 및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부산물, 폭죽, 음란물, 저작권 침해물, 선동물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3년 이상 된 중고차, 석면 또는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잔류성 대기오염물질,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수입금지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 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뉘어진다. 수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에, 수입전매 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에,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 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관계,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 결과, 2000.12월에 714 품목, 2002.2월에 715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몽골의 수입금지품목은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잣, 잣나무 등이다. 수입제한품목은 우라늄과 그 부산물, 유해 화학물질,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무기 및 관련 부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등이다.

방글라데시의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모조 화폐, 공서양속,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 또는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아비산나트륨(Sodium Arsenite),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파라냐(Piranha fish) 어족류, 거북이 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독성 화학물,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등 16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수입금지품목을 압수하고, 최대 5,000 링깃(RM)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웨이트 역시 종교상의 이유로 돼지고기와 주류 등 수입금지 품목이 존재한다. 특정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일부 동물 제품, 닭을 제외한 산동물(live stock)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쿠웨이트는 수입쿼터제 등에 의한 공식적인 별도 규제는 없다. 다만 총포류, 약품 등의 반입 시에는 특별한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며, 특수 화학물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또한 아랍국가 금지규정(Arab Boycott Rules)을 적용하여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전 검사 용역을 맡고 있는 ‘표준화 및 품질검사 위원회(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응해야 한다.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이후 이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동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2013년 9월 기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튀니지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폭약(2013.12.20일부터 국내 생산, 판매, 수입 전면 금지), 마약, 모조품, 헌옷, 야자수, 공격/위험견, 미풍양속/보건/공공안전에 유해한 제품, 국가안전을 해치는 제품 등이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 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도

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국가나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보건 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으로 당시 2009년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2011년 유럽의 E. coli(대장균) 박테리아 오염 파동으로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오이 수입을 금지하였다.

시리아는 그동안 총 7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수입금지 리스트를 갖고 있는 등 수입관련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08.4.30일부로 수입을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시리아의 시장접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시리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및 제한 혹은 수입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① 환경, 안보, 위생, 종교상의 이유로 한 수입 금지(총 174개 품목), ② 시리아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품목 및 이스라엘 보이콧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제한(해당 품목 수시 변경) ③ 정부 수입독점품목 수입 금지 및 제한(석유 및 관련 제품, 알코올성 음료, 무기류, 일부 곡물 제품, 제약, 소금, 블랙 시멘트, 의류, 과일, 올리브 오일, 사료, 인광 등) 등이다.

알제리 정부는 수입제한조치를 여타 산업 및 농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전자제품, 콩, 옥수수 등이 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제리 정부는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대외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긴급보호조치(safeguard)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단은 대부분 공산품에 수입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자국 산업 보호 명목의 수입규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수단은 WTO 비회원국으로 반덤

핑, 상계관세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에 명시한 품목을 제외할 모든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수단은 이슬람 규율인 샤리아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는 제품인 알코올음료, 외설 영상물, 무기, 도박용품 및 중고의류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수단 「관세법(Custom Act, 1986)」따라 주류(술)는 「형법」에 준하여 금지, 보건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림은 「약사 및 독극물법」에 준해 금지, 위조수표 등 위조 유가증권, 공중도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 음악, 사진, 또는 인쇄물, 이스라엘에서 반입되는 물품들, 과학적 조사와 의학적 처방으로 인가된 것들을 제외한 마약류, 브롬화칼륨(진정, 최면제) 등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종류의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수단 정부는 수단 분리 독립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우려로 2010.9월부터 당해 연도에 제작되지 않은 중고차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1.1월에는 플라스틱 제품, 나무 및 식물, 묘목을 제외한 화훼류 및 일부 동물 제품, 가구류, 닭을 제외한 산 동물 및 가금류, 잡종 소 및 염소, 생수, 냉장 및 냉동 육류, 어류, 설탕 및 과자류, 유상액(emulsion), 페인트, 가공 담배류, 밀가루 제품, 원피 및 가공 피혁 제품, 실크 및 관련 제품, 깃털 제품, 인조 화훼류, 낙하산, 막대기, 건초, 지팡이, 대나무 제품 및 다용도 분유를 제외한 낙농 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별도 수입자유화 발표가 없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으로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없다.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약품, 자동차, 타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화, 마약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식료품의 경우 위생증명서 및 식품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통관 시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육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류 및 광우병 안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에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 없다. 다만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 8월 1일부로 연식 5년 이상의 중고차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주요 제한수입규제 품목은 ①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폐플라스틱, 디젤류 승용차 등의 보건 및 환경관련 제품, ②원유 및 정제유, 시멘트, 화약 및 폭발물, 중고 타이어, 무기 등 방산제품 등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에 국한된다.

이집트는 1986.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내 제조기반이 있는 소비재 25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닭고기 내장 및 다리, 가금류 내장,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모든 종류의 석면,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유전자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DDT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중고제품(13개 품목군 제외) 등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차량 및 부품, 기계, 장비, 스포츠 장비, 컨테이너, 무기류,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스크랩,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프로젝트를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 폐지 및 폐잡지,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낚시, 예술품, 금속 및 목재 기둥 및 지지대 등의 13개 품목 이외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규제에 관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 마이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839/2001, GS 1024/2001)를 원칙으로 한다.

바레인은 재활용 타이어,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살아 있는 돼지, 마약류,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야생동물, 양식진주,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염화메틸(methyl chloride) 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등과 같은 품목들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

가나는 육로로 수입되는 커피 원료, 음란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동물 사체 등의 수입을 금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위험폐기물 바젤협약 등 국제 협약에 따른 위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동·식물, 토양, 영화 필름, 도박기계, 열쇠 복사기계, 항공우편 용지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식물이나 토양을 수입하려면 식량농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열쇠 복사기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는 가나 연안의 참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년 중 1~2월에 일정조건에 따라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05.4월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였다. 2015.10월 현재 산 또는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돼지고기, 소고기(육과 식용 설육), 새의 알(계란 등), 정제된 식물성 기

름 및 지방,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 코코아, 스파게티, 라면, 과일주스, 물, 맥주, 포대시멘트,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4개 품목), 폐 의약품, 비누 및 세제, 모기(퇴치)향, 플라스틱 위생용기, 재생 및 중고 타이어,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카펫 등 섬유식품 및 섬유사, 신발 및 가방, 빈 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중고 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냉동고,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이상), 가구(보행기, 실험실용 캐비닛 등은 제외), 불펜 등 25개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가 공시되어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다만 중고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예정).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누, 세제, 음료, 생수, 신발 등과 가금류, 축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대부분 품질이 조악하여 고급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인근 국가를 통해 밀수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금지 예외규정을 두어 수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 나이지리아 최대수출 품목이었던 자수직물의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2009.10월에 새로운 시멘트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핵심은 자국 시멘트 산업 육성을 위해 포대 시멘트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 설비기계와 석고와 같은 원재료에는 면세혜택까지 주어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총기·무기,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규제 대상품목이다.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리비아의 수입금지 품목은 총 10개 품목으로서 돼지고기, 주류, 과일, 생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 총기, 의약품 등은 리비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DR콩고의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무역경제부 장관은 건강에 위험하거나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플라스틱 비닐(환경오염 방지), 원석상태의 광물(다이아몬드, 동, 코발트, 금) 및 총기류, 총탄, 부레옥잠, 성인용품 등이다.

한편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의 이유로 자동차와 중고자동차부품, 중고기계류, 중고기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히, 중고차의 경우 아직 자동차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향후에도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1994.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여 미국과 캐나다산의 중고차 수입은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제조연도로부터 8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마이크로버스, 이륜 오토바이 포함) 및 경화물차(픽업트럭, 3톤 이하 트럭 등), 10년 이상 사용한 버스, 15년 이상 사용한 중화물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미니카는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1.3 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 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니카라과의 경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육상운송법(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하지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아르헨티나 역시 중고자동차, 중고모터사이클, 중고장비 및 부품, 중고의료 등의 중고품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는 중고품은 프탈레이트가 고농축 함유된 장남감 및 유아용품(「보건부 Resolution 583/2008」), 활성성분으로 니메슬리드(Nimesulide)를 함유한 의약품(「Disposition 4430/2009」), 백열등(「Law 26473」), 특정중고기계, 장비, 장치 및 그 부품(「경제부 Resolution 909/1994」), 올라킨독스(Olaquinox)를 함유한 식품 및 의약품(「SENASA Resolution 84/2007」), 납 함유 페인트(100g 당 0.06 그램 초과) (「보건부 Resolution 7/2009」), 중고 자동차(「Decree 110/1999」), 중고 오토바이 및 세발자전거(「경제부

Resolution 790/1992」), 중고 의류 및 악세서리(「Decree 2112/2010」), 중고 타이어(「Law 25626」), 중고 의료기기(「Decree 509/07-ANEXO X」), 위험 폐기물(「Law 24051」), 특정 위험 물질(「Resolutions 750/2000, 845/2000, 182/1999」) 등이다.

페루는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도 동일하다.

또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 등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품,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볼리비아는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중고 의류제품,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나 오토바이(단, 차량중량이나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은 예외규정 적용)는 수입할 수 없다.

칠레는 수입규제제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법」 제 9397조에 의거하여 중고타이어의 수입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 18483조에 의거, 중고자동차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풍양속 저해물(음란서적 및 비디오 등), 독성 산업폐기물, 중고오토바이 등은 수입이 금지된다. 중고자동차 중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차량은 수입이 가능하다. 석면 수입은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건법」 제 656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본부, 적십자본부, 긴급재난본부 및 구청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입 그리고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인도의 중고 자동차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Mumbai 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라오스는 최근 차량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되면서, 2011.10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 수입에 대한 잠정중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경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수입금지 조치에도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되자 2012년 들어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리령을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중고차량 수입재개 전망이 불확실하다.

또한, 라오스는 고위험 화학물질, 총기류, 마약류,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물 등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은 2013년 11월 20일, 「국제적인 재화 판매와 구매, 외국과의 판매·구매·가공·중계 대행활동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Decree 187/2013/ND-CP)」을 발표하였고, 2014년 2월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 금지 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 총리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할 부처 장관에게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 허용 범위를 과학적 연구 목적, 인도적 원조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

발하거나 전염병 및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 허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탄약, 폭약, 산업용 폭약, 군사장비, 폭죽,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 우측 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블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 번호가 조작된 차량),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화학무기 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의 전구체(Schedule I) 등이다.

중국은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產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수량 제한 등의 수입규제 사례나 여타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무기, 아스베스토 등이며, 관련부처의 특별승인을 요구하는 품목은 식물의 종자, 가축, 책·잡지, 오디오 및 동영상물, 의약품, 화학품, 향료 등 알코올을 함유한 제품, 무선장비 등 61개 품목류이다. 2009.6월부터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은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2010.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

을 금지시켰다. 한편 사우디 정부는 2011.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 및 자국 내 제조를 2012.5.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모로코는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고의류 및 재생상품에 대한 수입허가가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도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케냐는 표준청의 품질규정에 따라 생산된 지 8년 이상 된 차량은 수입할 수 없으며, 예멘 역시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디젤승용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건,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의 공통적인 목적 외에도 자국의 산업보호 또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예시한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여건도 살펴보아 수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입허가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분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 파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는 상무부의 수입허가제의 대상이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무부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된다. 동 제도는 철강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함으로써 수입피해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천연가스법」). 장기 및 단기로 신청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가격, 공급업체, 물량 등의 정보를 최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월별로 각종 정보들을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페루의 경우 식음료제품은 수입 시 위생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산물 및 어패류는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적합증명서가 필요하다. 종자, 동식물 및 축산물은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다.

도미니카는 1998.3.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신장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에콰도르는 2014.1.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 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COMEX 고시 116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들의 수입은 2014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에콰도르 국내 생산이 일부 증가해 당초 정부가 의도한 대외무역수지 흑자 및 국내생산 증가 등 일부 목표를 실현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수입대체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우루과이의 경우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80일간 유효하다.

EU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은 위생요건을 고려하여 계속 변경되며 EU 관보에 공고된다.

오스트리아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동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른다.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다. 그러나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해야 하며, 교부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이다. 다국간 섬유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은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 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크로아티아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향신료, 골동품, 귀금속, 폐기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튀니지는 전문 음향기기, 위성전화, 동식물, 사냥총, 측량 및 측정기기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신청 시 pro forma와 같은 무역계약서를 공인중개자를 통해 통상부에 전달해야 한다. 수입 허가는 통상부의 결정(최대 30일 소요)으로부터 최대 1년, 최소 2개월(민감품목)이다.

파나마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상업송장, 영사송장, 관세지불증명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수입이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는 관세할당(Tariff Quotas)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파나마의 WTO 가입 시인 1997.7월 제정된 Law 23에 의거, 관세할당허가위원회(농축산개발부장관, 경제재정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구성)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 산하 기술사무국이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돼지고기(20개 품목), 가금류(2개 품목), 우유 및 낙농품(25개 품목), 감자(1개 품목), 콩(1개 품목), 쌀(4개 품목), 옥수수(3개 품목), 토마토 부산물(3개 품목)이다.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

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의 경우 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이 필요하며,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 장비류 및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 등에는 공공안전부 공공안전국(DIASP)의 사전 수입승인이 필요하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 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한다. 또한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건축자재의 경우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재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한 규정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상품이 자동수입허가 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물,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수입 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수입허가서

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은 수입쿼터 대상 품목,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혜택을 받는 품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에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모든 중고 상품,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등이다.

베네수엘라는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나 정부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제품인증제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국가무역센터(Cencoex)의 외환 배정,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 제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 의료용품,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르비아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볼리비아 역시 의약품 및 보건제품, 농·수산물,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환경 공해 관련 품목 등을 수입할 경우 관련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2012.1.10일 조세청(AFIP) 결의 3252를 통해 신규 사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2012.2.1일부로 발효)함으로써, 기존의 수입규제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다. 동 제도 하에서 수입업자는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주문을 수출업자에게 송부하기 이전에 수입품의 최종 목적을 기술하는 법적서약문서(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조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청은 동 서약서를 관계기관(경제부 대외무역차관실)에 회람·의견을 수렴하여 수입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무역규범을 위반한다고 WTO로부터 판정을 받아 2015년 12월 이후 폐지되었다.

칠레는 무기, 탄약, 화약류, 알코올, 동식물, 비료,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방사성 물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또는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으로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볼리비아는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SENASAG)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는 농산물 및 가축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건인증 전문가들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기 위한 수출국 탐방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용 총기 및 탄약의 경우 「최고법령 29747호(2009.10.15.)」에 의해 전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유일하게 볼

리비아 경찰 및 군대만 정부의 사전 허가를 거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총기와 탄약과 같은 무기류, 화학물질, 항공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Telecommunications Office)의 승인이 필요하다. 상표가 있는 모든 의약품과 OTC (Over-The-Counter, 처방전이 필요 없이 조제 가능한 의약품) 의약품은 보건체육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에 등록해야 되며, 제약팀(Unidad de Medicamentos y Laboratorio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검사에 약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중요 제품 검사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뿐 아니라 기초 금속 및 일부 원자재, 수송기기, 기계류, 전기기기, 석유제품, 섬유류, 화학제품 및 일반적인 제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허가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수입업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무역부 또는 주무부처의 특별 관리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 (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진구허가증관리화물목록(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16년 2월 발표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수입허가증은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관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 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 辦法)」(2005.1.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4.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류용 기기(HS 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HS 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14년 현재 59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써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와 수입량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받

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원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고체폐기물수입허가증, 환경보호허가증제도, 수입폐기물원자재전자관리감독시스템이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여,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시 Open AP(중고차) 또는 Franchise AP(신차)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데, 2009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를 통해 통상산업부에서 각각 2015년, 2020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4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에서는 동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발표하여 자동차 AP의 최종 폐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및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품목,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품목,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필요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허가(NPIK)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화학제품, 중고기계, 섬유, 세라믹제품, 통신제품, 오일 및 기타 유류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

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7.7.1.일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다. 여기에 2008년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 다시 2개 철강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5개 품목에 대해 SNI인증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핸드폰, 핸드헬드/태블릿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무역부는 2013.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 품목이다.

필리핀은 쌀, 옥수수, 석유제품, 칼라복사기, 살충제 및 농약,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금류, 돼지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농수산물 품목은 국내 농업보호차원에서 수입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통신장비 등 일부 품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브루나이는 동식물, 무기류, 폭발물, 출판물, 쌀, 설탕, 소금, 중고자동차(오토바이, 미니버스 등 포함), 라디오 무선전화기, 통화 및 통신장비, 고미술품,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출입 인가가 필요하다.

라오스는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은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스리랑카의 국가안보,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입허가제는 '특별허가제(Special Licensing Scheme)'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곡물, 화학제품, 석유 및 자동차 등과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들어 중고제품 수입의 사용연수 제한을 조정하여 중고 건설기계류는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고 자동차는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하였다.

멕시코는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1994.1월에 발효된 NAFTA 협정 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 체결국산에 대해 40%라는 비현실적인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멕시코에 대한 수출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폴란드는 우유 및 유제품, 당류 및 당밀, 육류, 바나나, 포도주 및 포도주스 등의 농산물과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허가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EU와 동일하게 철강제품 및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신발, 철강제품은 수입 감시(Import Monitoring) 대상품목이다.

터키는 농산물,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공산물, 정보통신장비, 화학물, 의약품, 석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련 정부부처의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알코올제품, 담배, x-ray film, 보석류 등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필요시 ‘검사위원회’가 수량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체코는 설탕, 석탄, 폭발물, 유류, 천연가스, 화염관련 제품, 스포츠용 총기류, 총탄류, 군장비 등의 품목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의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기타 수입 신용장 개설시 수입업체로 하여금 거래은행에 인보이스 금액의 11% 이상을 사전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 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의약품,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사료,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환경유해물질, 폐기물(Waste) 등의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UAE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엄격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식품 및 의약품은 보건성 및 각 시청의 엄격한 검사(품질, 내용물, 포장 등)를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반드시 제조연월일, 사용 유효기간, 내용물 설명서 등을 아랍어로 표기해야 한다. 게다가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생산국 및 제3국에서 취득한 의약품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보건성의 의약품 수출국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성의 사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도 식품과 같이 포장에 반드시 제조연월일, 유효기간, 성분, 사용처 등을 아랍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국민보건 및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약간의 규제가 있는데, 특히 돼지고기 함유 여부 등 성분 검사가 까다롭고 제조업체에서 영문으로 명기된 성분 분석표를 첨부시켜 샘플테

스트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도축 식품, 할랄(Halal) 음식 수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특별부과료가 있고 매년 갱신료도 있다.

이라크 정부는 농업을 촉진하고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로 중고차 수입규정을 일부 개정, 10년 이하의 버스(20인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는 중고부품 수입을 전면 허용하였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하였다.

이란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수입금지 품목(무기류, 마약, 술, 도색출판물 등) 외 대부분의 품목이 조건부 승인 품목(Conditions-based)으로 산업광물무역부를 통해 관계부처의 건별 수입허가를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조건부 승인 품목은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해당부처가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으로 자동차,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수입금지 품목 외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부서가 수입허가 결정시 동종품목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여부와 생산량이 고려된다. 조건부 승인 품목 중 약 80%는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별도 수입허가 절차가 필요 없지만, 나머지 약 20%는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 접수시 지정하는 관련부서에서 수입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화장품, 시계, 보석, 의류, 전자제품 등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높은 시장 수요로 이란 수입상은 두바이, 터키, 이란 남부 Kish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수입이 이란 총 수입물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는 안경테, 직물류, 가전제품 등도 정식 수입 이외에 상기 경로를 통해 상당량이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란 정부는 자국 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삼푸, 치약 등 소비재 생필품류의 경우 수입제한 또는 수입불허 정책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오만은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된 회사와 제품에 한해 수입 통관이 허용된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비록 샘플일지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보건부에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자유수입명령(Free Import Order of 2008)의 특정 제품군인 동식용육,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스크랩(scrap), 자동차, 비행기 등의 수입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수입허가는 품목에 따라 경제부, 농업부, 보건부, 환경부 등에서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수입허가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제약도 많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는 있으나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UAE, 이란 등 28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스라엘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려면 경제부의 수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가나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량 제한(쿼터)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금화(gold coin), 비가공 다이아몬드, 통신장비, 영화 필름, 도박기계, 동·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시 상업송장, 물품 상세서, 적재 화물 운송장,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향신료의 경우), 식물 위생 증명서(밀가루, 곡물, 씨앗의 경우),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라벨 역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이나 잘못 표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 표기)은 수입 거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검역관들은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데, 불일치 적발 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된다. 게다가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가 엄격히 적

용된다. 단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 한다. 육류 및 가공육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또한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은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DR콩고는 모든 상품의 수입에 허가가 필요하다. 자동수입허가는 통계목적 위해서만 사용되며, 비자동 수입허가는 관세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가를 취득하는데 보증금이나 수수료는 필요 없으며, 물품 수입 또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에 관한 물량 한도가 없을 때에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자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쿼터, 비자동적허가 신청절차, 예외 및 면제 등에 관한 정보는 관보에 게재된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12.6)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액 급감(2013년 650억 달러→2015년 378억 달러) 및 외환보유액 감소(2015년말 기준 1,430억 달러 수준으로서 2001년 이후 최저치, 세계은행은 2018년도 알제리 외환보유액이 6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 적용을 받게 될 품목은 자동차, 시멘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inforcing bar) 등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이다.

르완다의 수입규제 품목은 통관 시 특정기준(certain condition)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수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으로는 산(acid) 처리된 뼈, 가공이 되지 않은 동

물의 뼈, 뿔, 이빨, 상아, 발톱, 부리, 산호류, 해면, 암석류, 금속류, 토종이 아닌 어종 혹은 어종의 알, 핵 원료, 몬트리올 의정서 및 비엔나 협정에 의거한 오존 고갈 물질, 화학류, 군함, 군수품, 역사적인 유물, 유전자조작 물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및 그 개정에 규제된 멸종위기종 등이 있다. 르완다는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약품 및 화학 물질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환경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가축 수입을 위해서는 르완다 농업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수단 「관세법」에서는 일부 품목의 경우 정부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 식품, 의약품 등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입수량제한, 관세할당제

수입수량제한(Import Quota)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주로 단순노동 집약적인 소비재에 대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두고 있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예였던 섬유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라 2005년에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섬유류 특별세이프가드가 한시적으로 발효

되기도 하였다. 이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2005.11월 미국과 중국 간의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2008년 동안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캐나다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쿼터 및 WTO 비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1월 제1단계 조치로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1월 제2단계 조치로 18.6%를 쿼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2.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 개방하고, 2005.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멕시코의 수입, 수출에 대한 쿼터는 「대외통상법」 23조 및 25조에 근거하여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가 발의한다. 수입수량할당(Cupo máximo) 제도는 특정기간 동안 일부품목에 관하여 수입 및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관세할당(Arancel Cupo) 제도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하는 경우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수입 129개, 수출 56개 총 185개의 쿼터조치가 발효되고 있다. 이 중에서 164개 쿼터는 경제부소속 대외 무역부가 직접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할당관세제도 외에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산 수입 직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쿼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최근 2~3년간 중국산 섬유제품이 대량 수입되자, 2006.2월 중국 정부는 브라질에 수입되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60%에 해당하는 70여 가지 품목에 대해 향후 3년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브라질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는 제조업 취약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코스타리카와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긴급재정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생산품목 보호를 위해 이들 수입국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입쿼터제를 마련하고 있다. 2015년 수입쿼터제 대상 국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밀/호밀가루, 콩, 해바라기/카놀라/겨자/옥수수유, 설탕 4,000이며, 파나마의 경우 돼지고기 100, 냉동멸균우유, 팜류, 토마토 소스, 미국의 경우 감자, 양파, 돼지고기, 분유,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기타유제품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는 닭고기, 가루우유 등이 있다.

과테말라도 쌀, 사과, 옥수수, 밀, 닭고기 등의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나 쿼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고관세가 적용된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4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2백만 대, 1억 4천 260만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의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 그리고 해외여행객의 휴대전화 허가개수를 개인당 1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는데, 2015년 총 수입쿼터로 38개 수입업체에 대해 2014년 4만 9132대에서 49% 축소시킨 2만 2277대, 2억 6,419만 달러의 쿼터를 배정하였고,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로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하였다. 동 조치는 2014.12.31까지 적용 예정되어 있으나 이후 2015.12.31 까지 연장 하였으며,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향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일부 농산물(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최대 40%)가 적용된다.

베네수엘라의 경공업무역부는 2008.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수입 쿼터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U는 EU회원국이 유지해오던 수량제한을 철폐 또는 공동체 차원의 쿼터로 전용하고 동 공동체 차원의 규제도 WTO 협정(자동차, 섬유 등) 및 양자협상의 결과 대부분 폐지하였다.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과 관련하여, 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기존 양자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온 모든 수량규제를 철폐함으로써 2005년부터 섬유무역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EU-중국 간 별도 협의를 통해 2006년과 2007년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쿼터를 적용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이 중 7개 카테고리(T-셔츠, 폴오버, 바지, 블라우스, 베드린넨, 드레스, 브래지어, 아마사(flax/ramie yarn))에 대해 수입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수입감시제도는 2009년에 폐지되었다.

스위스는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물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터키 역시 2005.1월부터 섬유에 대한 쿼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2004.5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감시 및 보호조치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총 17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물량이 제한된 17개 품목은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등이다.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IQ 제도는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1월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기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으며, 이중 일부 제품의 쿼터 및 허가증이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도 소맥 등 8종 상품은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세율은 불변하였다. 이중 요소비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계속 1%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쿼터외에 수입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환준세를 적용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농산품과 소형차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식용 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 대만의 품목별 할당량(2015)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
녹용	5	50kg	—	
동양배	9,800	20	—	
팔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땅콩	5,235	14	1,047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3	28	
	144	3	28	
마른 팽이버섯	50	3	10	
	51	3	10	
야자	3,000	20	600	
	7,000	2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5	2,374	
	12,000	15	2,400	
망고	7,000	11	1,400	
	5,755	11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 財政部 關務署(2013)

대만의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다.

》》 대만의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2015년)

(단위: 대, %)

구분/년도		2012	2012	2013	2014	2015
할당량	미국	∞	∞	∞	∞	∞
	EU 국가	∞	∞	∞	∞	∞
	캐나다	∞	∞	∞	∞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 (국가당)	∞	∞	∞	∞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17.5	17.5	17.5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17.5	17.5	30.0	17.5	17.5

자료: 財政部 關務署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대상품목은 무역부(MOT), 기획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16년 현재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으로는 가금류의 알(HS 0407), 담배(HS 2401), 설탕(HS 1701), 소금(HS 2501) 등이 지정되었다.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감자, 설탕, 마늘, 코코넛 등 2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다. 만약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해 수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 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의 제품은 「공공법(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앙골라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로 인한 외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15.1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할당제 및 수입제한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입할당 적용 품목은 국내생산량이 국내소비 수준의 60%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주로 식품 및 음료로 구성되어 있다(다만, 상금 수입할당제 미시행). 또한, 시멘트의 경우 2015년 이후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Cement Sector Commission)의

사전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으나, 시멘트 수요가 많은 3개주(Cabinda, Cunene, Cuando Cubango)에서는 각각 연간 15만 톤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알제리는 2016.5월 자동차 수입 쿼터제(총 83,000대, 금액 기준 10억 달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입액(2014년 기준 42만대, 57억 달러 수입)을 현격하게 축소시킴으로써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타 수입규제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수입금지, 수입허가제나 수량제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 (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을 수립하고 2007.7.18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안전작업반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을 구성하였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형태의 변화는 물론 인구학적 변화까지 반영한 것으로,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리콜 문제 등 아시아지역의 식품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동 계획은 사전예방, 사후 개입과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①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예방 ② 위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③ 위해요인 또는 위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i) 고위험 식품(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통제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ii) 고위험 식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iii)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 등록제도 2년마다 갱신, (iv) 우수제조수입품질관리기준 (cGMPs)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조사 비용 부과, (v)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리콜 실시권 부여

등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계획실행 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07~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재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10.12월 미 의회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의 식품시설 매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를 대상으로 한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견본(샘플)을 수입할 경우, 상품 또는 제품 견본 수입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가치를 가진 것에 한하며 오직 제품 확인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당사자 간에 매매가 없는 경우 견본품은 비상업적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000달러 이하의 선물과 2,000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견본 수입 시, 간이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FOB 가격으로 2,000달러 이상의 견본 수입 시, 단일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under value)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육류,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대두, 의류, 닭고기, PVC 케이블 등에 특별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특정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유해물질 등 일부 규제품목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량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 연방세입청(AFIP) 규정 1907호를 통해,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제도를 발표했으며, 2008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동 조치에 따라 국가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2003.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

환을 배정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 외환배정업무를 Cencorex에 이관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외환을 배정받은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수입 대금은 Cencorex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절차 종료에 당초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외환 부족현상이 심화된 2014년 이후에는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조차도 민간수입업자에게 배정되는 금액이 수요에 비해 매우 낮아 민간분야의 수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2013년 3월에는 부족한 외환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방식으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외환을 배정하는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14년 2월에는 은행을 통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을 결정하는 Simadi(외환한계제도)를 도입하면서 3가지의 공식 환율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외환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의 외환공급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면서, 오히려 암시장환율만 크게 올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환제도는 2016년에 DiCom(상업용 외환거래제도)로 일원화되었고, 기존의 Cencorex외환은 DiPro(보호 외환거래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6.12월 베네수엘라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r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생산 확인서” 및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및 3개월에 불과하고, 수입을 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부는 이전에는 국내 자동차조립업체에게 허용했던 완성차 수입제도를 2008년 말부터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수단 정부는 2009년 이후 국제 원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외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수입수요 억제를 통한 외환 보유고 방어를 위해 2010.9.16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세부 조치 내용은 밀, 설탕, 주재국 제조업체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 의약품 등 84개의 필수 수입품을 제외한 기타 비필수적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차 수입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2010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개발세(Development tax)의 세율이 현 5%에서 10%로 인상되었으며, 모든 수입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보증금(L/C 마진)도 100% 인상되었다.

DR콩고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영업세, 산업증진세 등 다수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한 추가 부과금은 수입 경로에 따라 5~40% 수준에 달한다. 미화 2,500달러 이상 가치의 모든 수입품은 DR콩고 정부의 위탁업체 BIVAC에 의한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기본료 100달러에 CIF 금액의 0.75%이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구입(수수료 12달러)해야 하며, 물자의 항구 도착 시 △관세청(DGDA)의 통관요금(CIF 금액의 1%), △수출입통제청(OCC)의 검사비용(CIF 2,500달러 초과 금액의 2%, 2,500달러 미만은 금액의 1%), 하역요금(1톤당 5달러), △산업증진청(FPI)의 산업증진세(CIF 금액의 2%), △상선운영국 (OGEFREM)의 커미션(CIF 금액의 0.595%) 및 수수료(0.59%), △국가항만국 (ONATRA)의 하역수수료(톤당 20달러) 및 항만사용료(톤당 32달러), 지방세(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 당 135달러) 등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DR콩고 정부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품목 수입자들은 통관비용으로 최종가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품, 자국 생산품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는 2012.1월부터 기존의 소비세(ICA)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4월 일부 의류 및 침구류, 전자제품 등 13개 수입 완제품의 경우, 통관 후 주재국내에서 12개월 이내에만 판매토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밀수, 저가 상품의 유통범

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내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수입상(바이어)들이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관계로 수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수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 불급품이라고 간주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커피, 캐비아, 바다가재, 초콜릿·코코아 함유 식품, 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타이어, 혈액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CD, TV, VTR, 차량, 모터사이클 등이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11.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2008.8월에 주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으나, IMF가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관리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2,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분급(分級관리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

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를 1997.4월부터 새로이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機電產品進出口司)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사(機電產品管理司)를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圳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등 7개 지역 이외에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광주황포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 13개 입항지로 확대하였다.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1999.1월부터 중국정부는 전자 환경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입최저가격제, 수입 시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미얀마의 수입절차는 수입자가 외환계좌에 수입대금 100%를 선 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에 수입허가(import license, I/L)를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건별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수입신청에서 허가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금이 은행에 한동안 예치되어야 하므로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얀마의 독특한 수입규제인 Export Earning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를 보유한 업체만이 동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제도로,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의 경우, 자체 수출실적이 없으므로 수출상으로부터 Export Earning을 구입해서 수입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상 15%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Export Earning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가 동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외환보유액(2009년 말 36억 달러)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관절차

개관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절차 전부를 의미하는 수입통관절차와 세관절차만을 포함하는 세관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부두배정, 하역, 보세운송 및 입고, 각종 수입 허가·추천서 구비, 세관 수입신고,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 세금납부 및 신고수리 물품 반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입과 관련한 모든 물류관련 민간업체와 수입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각종 협회와 단체, 세관 등이 전부 관련되어 있다. 반면 세관통관절차는 세관에 수입신고 후 세관의 통관요건 심사와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으로 오로지 세관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라고 하면 협의의 세관통관절차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나, 통관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넓은 의미의 수입통관절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역업자에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절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큰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 선진화는 세계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APEC, WTO, WCO, OECD, World Bank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통관절차와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교토협약이 있다. 교토협약은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세관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에 채택되었다. 정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일명 「국제관세법」이라고 불린다. 교토협약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C(European Community), 중국, 일본 등이 가입하였다.

WTO에서는 통관절차와 관련된 무역원활화 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함께 싱가포르 이슈로 선정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으로 한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4.8.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July Package)이 합의되면서 뒤늦게 DDA 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 10조(무역규제의 공표와 시행)의 명확화와 개선, 세관 당국 간의 국제협력,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부속서 D’는 개도국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지원이 없거나 개도국의 이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해당 개도국은 이행의무가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DDA 중단에 의해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역원활화는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대표적인 조기수확 의제로 거론되었으며, 이후 회원국 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발리 각료결정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인도의 반

대로 채택 시한인 2014.7.31일을 넘기며 이행 작업이 지연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미국과 인도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 2014.11.27일 정식으로 WTO 협정에 편입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협상으로 이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절차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서류 및 문서요건의 축소 및 조화 등 수출입 여건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WTO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에 기초하여 무역원활화 지수를 구축하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OECD(2011⁵, 2013⁶)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선진국은 10%, 저소득 국가는 14.5%, 중하위 소득국가는 15.5%, 중상위 소득국가는 13.2%의 잠재적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2013)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⁷

통관절차는 가시적인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조치와는 별개로 무역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APEC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⁸에 의하면, 중요한 무역 장애요인으로 관세(응답자의 30%) 다음으로 복잡한 통관절차가 선정되었다. 실증연구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체적으로 1~1.5% 수출 감소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⁹.

WTO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세계 각국은 통관절차를 원활화하는 방향으

5_ Moïse Evdokia, Thomas Orliac and Peter Minor, 2011,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Papers 118, OECD Publishing.

6_ Moïse Evdokia, Silvia Sorescu, David Hummels and Peter Minor, 2013,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Potential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rade",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44, OECD Publishing.

7_ Gary Hufbauer and Jeffrey Schott, 2013. Payoff from the world trade agenda 20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8_ 김상겸 외. 2006.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_ 최낙균·김정곤·박순찬. 2011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¹⁰ WTO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APEC 국가들의 경우 Shanghai Accord 채택 이후 역내 무역비용 감축을 위해 통관절차를 비롯하여 표준 및 적합성, 기업인 이동, 원산지 규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간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¹¹.

통관절차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운영과 관련한 국가 간 제도 및 절차적 상이성이 그간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는 여전히 무역원활화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등과 관련된 통관절차의 복잡한 운영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FTA의 확산으로 인해 원산지규정 적용상의 문제가 통관절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위생검역은 각국의 국내정책과 관련되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통관절차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의 경우 통관운영 자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역화물의 안전성과 물류원활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이러한 목적 하에서 AEO 제도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AEO 제도는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 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된 AEO 프로그램을 상호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¹².

10_ WTO, 2012,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11_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2010, 『보고르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황 분석

선진국 중 노르웨이의 통관절차는 대부분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한 편이나, 50NOK(약 45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높은 통관료가 부과되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대만의 통관제도에는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관할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자외선차단(UV) 기능이 있는 화장품 통관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품목별 현지기관의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이다. 수입제품의 반출이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과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는 담보를 제출하면 전산 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국의 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에는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완벽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12_ 정형곤·나승권·노유연, 2010.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편, 한·미 FTA에서는 양국 간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도착 후 최고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를 채택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물 반출 절차 도입,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미 국경 일선의 세관에서는 각 세관별 특성에 따라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및 자의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견본(sample)과 관련해서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 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안보통관절차(SFI, CSI, C-TPAT, Fast, CEAR 등)를 강화하여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수입자에 대해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종, 선사에 대해서는 화물탑재계획 등 2종의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이 제도의 이행으로 약 9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바 있는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서 2012년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6. 6월 말까지 시행이 유예되었다.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EU의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사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통관당국이 맡고 있어 원산지, 관세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능력, 신속도, 고객봉사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2004.5월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1월과 2013.7월에 각각 신규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따로 창설하지 않음에 따라 세관 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여,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체관세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공동체관세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8년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시스템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 상의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UCC는 EU 집행위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류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운영인의 권리 확대와 세관업무의 전면적인 전산화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유럽 의회는 2013.9.11일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11.1월에 UCC가 발효되었다. 단, UCC의 대부분의 조항은 2016.5.1.일부터 적용되었다.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을 통일하고,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TSC: New Computeriz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의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관 당국 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 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다. 이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외 통관안전(security and safety) 강화, 통관사기 방지, 통관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2008.1월에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이 채택되었으며, 2008.4월에는 「신통관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과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가 채택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 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EU 차원의 대처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최초 제품 수출시 품목분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우리나라 특수차량의 일본 내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어 같은 제품의 경우 일본 항만 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와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할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 내 등록절차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나라의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는 안전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1~71일 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사가 경쟁력 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전협의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10월 현재 규제대상 물질 수는 784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농산물 중에서 PLS에 포함되지 않는 농약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2016.10월 현재까지 고추의 아세퀴노실(acequinocyl) 농약

등 총 66건에 대한 한국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파프리카의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등 47건을 일본 잔류기준에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의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2008.3월부터 10kg 초과 휴대물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對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농산물은 파프리카, 토마토, 미니토마토, 청고추, 참외 등 5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하고 있다.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병해충(1997년부터 총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조치로 인해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부 농축수산물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호주는 1999.6월부터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1~2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산 배 수입허용(1999년)을 위한 검토도 10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으며, 201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한국산 육류 수입금지 조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산 과일 중 검역기준이 마련된 배와 포도의 수입은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이외 과일의 수입은 불가능하다.

싱가포르의 중계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할 만한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서류 없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된다.

터키의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세관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우 Red Line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으며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에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 2012.4월에 개시된 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 기업들은 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이러한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 개도국 통관절차의 문제점은 주로 통관 관련 제도 및 규정의 복잡·불합리성, 구비해야 할 서류 과다, 일선세관의 임의적인 규정 해석·처리, 규정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등 투명성의 결여, 세관직원의 부정부패 등이다. 최근 각국의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오스의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복잡한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한 통관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8일이 소요된다.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과거의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 방식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종이 없는(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선적물품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세관신고서 작성 시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베트남에는 65개의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되며, 각 도시 및 공단 등에는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총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관총국은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관세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중앙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은 2013.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4월부터 모든 신고는 VNACS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통관신고 시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발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이외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하는 등 범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스리랑카는 통관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장벽은 없으나, 비효율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컨테이너가 공장으로 바로 입고되지 못하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시간 및 비용이 입주기업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된다.

우즈베키스탄은 통관절차가 특별히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수입통관에 과다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세율을 책정할 때 Invoice 상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만든 세관 내 요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상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한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2011.8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개선조치를 시행하여, 2016.1월까지 모든 법인이 기술 설비(technological equipment) 설치를 위한 부품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2011.10.1일부터 조세·관세 등의 체납 시 적용되는 과태료를 인하하였다. 또한 2013.1.1일부터 전자세관 통관절차 시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자통관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서의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의 문제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2~3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1~2일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시간 소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 하역설비의 노후 및 항만노조

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이외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 정부의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되었다가 2004.12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10월 인도의 지방세관 중 한 곳은 연방재무부의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인도 정부가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 Auditing)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자 필수 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 허가(APIU), 세적등록(NPWP),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등이 있으며,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사치세(Luxuary Tax; PPNBM), 소비세(CUK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 있다. 유의사항으로 첨부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B/L 사본도 인정된다고 하나, 일선에서는 아직도 원본 제출 요구)해야 하며, 화물 검사시 수입신고서 내지 선적서류상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고액의 벌금 등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B/L상의 수하인과 수입자, 선적 서류상 수량·중량 및 B/L No·C/T No 등이 일치해야 하며, 정확한 품명 기재도 요구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창고·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BLC(Bonded Logistics Center) 등의 보세지역(Kawasan Berikat; Bonded Zon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지역으로부터의 수출입은 일반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과 비교하여 세관의 통제가 비교적 많지 않다. 한편, 2014.10월부터 보세지역 업체의 전산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모든 보세지역 업체를 위험도에 따

라 적색(red), 황색(yellow), 녹색(green), MITA(Mitra Utama)특급 경로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수입통관지를 지정하고 있다. 자동차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 신강 아라산구항 등 기존 7개 지역에서 청도, 광주신항, 광주남항, 광주황포항, 장가항, 영파, 복주 등을 포함하여 1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상기 기존 7개 지역 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호 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수입약품에 대해서 반드시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추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중국으로 화장품이 최초 수입되는 경우 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안전성검사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수출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점 검사항목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기업의 연구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단 소품목마다 개별적으로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다.

카자흐스탄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통관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

는 통관중개사에게 대리할 수 있다. 이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세법」에 의거해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통관과 관련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의 불투명한 업무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통관절차 상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는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을 수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 원부자재의 경우,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이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세관당국으로부터 추천받은 통관 브로커를 통한 경우 통관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등 관세행정의 수준이 낮다. 타지키스탄은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태국은 2000년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의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수수료 등 수출입 관련 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2월부터 AEO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통관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직원별로 상이한 해석 및 판단 등으로 인해 통관에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9.7일)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현재 관세환급처리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환급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급서류 작성 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필리핀은 통관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 뇌물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패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관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한 점이 많다.

과테말라 통관의 서류검사는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 청색신호인 경우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된다. 그러나 적색채널로 판정되는 경우 화물을 열어 전량 검사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테말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이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체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범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내 무역업무 담당자 간의 결탁으로 밀수가 이루어지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이후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

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금액도 다시 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09.12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어 20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재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부와 기준 및 과세표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 정도 인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입중고차의 Under-valued Invoice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재국 관세청의 조치로 이해되나, 한국산 중고차 수입에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3.8.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이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야기한다. 더욱이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인해 제품의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이 현실성 없는 최저가격을 고집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무작위 선별(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는데, 선별된 견본 중 잘못이 발견되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늦게 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통관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고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진 이후에는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

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가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통관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대체로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관세 저가신고(under-valued)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과거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2014.12.15일에는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정(No.615)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입품은 암묵적으로 유기물품에 분류되며,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가 상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연간 5천 달러 이하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며, 통관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볼리비아 통관절차정보시스템(DUI : Declaracion Unica de Importacion)에 통관정보가 입력되면, 세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SIDUNEA)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브라질의 경우 수입업자는 개발상공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1월부터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품목이 수입자동허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외무역국 등록은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최초 거래 시 납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어 수입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2007년부터는 무역자동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무역등록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브라질의 통관절차 소요시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이루어져야 하나, 반입품의 채널배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만약 세관에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이 가능해지고 그 진행속도 또한 현저히 느려진다. 한편, 많은 제품에 대해 세관에서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8월에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신고를 포함한 조세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여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존 세관운영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시스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2014.1.6일부터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물품 및 통과 물품에 대해 컨테이너당 X-ray 검사 수수료 1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로 국경세관에서의 통관 지연은 물론 수출입 업자들에게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의 수입은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나 통관은 세관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수입에 있어서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약 1,330달러이다. 통관 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 제품 등은 반

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방송용 음반과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달러 이하 음반을 제외한 모든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자메이카의 경우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통관업자를 통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코스타리카의 통관절차는 중미관세코드(CAUCA III)와 「일반통관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중미통합시장 회원국들은 2008.4월에 중미관세코드를 개정(CAUCA IV)하였으며, 코스타리카 의회는 2010년 이를 비준하였다(「법령 8881」). 그러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관련 이행법령 불충분으로 인해 CAUCA III가 현재 발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코스타리카 「일반통관법」은 2012년 개정되었으며 통관 시 E-Seal 사용, 자체위약금 지불(self-assessed penalties) 허용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통관절차상에서는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화물가격의 0.8%정도이다. 단, 자유무역지대수입, 수출용제품, In-bound 보관제품, 구급품(비상용품),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 긴급패키지, 우편, 면세점 구입상품, 비상업적 물품, 가족/친지를 위한 소포, 국가 혹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의 통관 시에는 통관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다.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단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재된 신고단가가 재무부 측 산정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보고서(Informe de Verificació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이 인증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자체적인 가격 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는 수입상품 총액이 1,000달러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 인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파나마는 온라인 통합통관시스템인 SIGA(Sistema Integrado de Gestion Aduanera)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는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홈페이지에

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신고나 비용지불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통관에 필요한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을 위해서는 통관 대행사를 통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 세관창고는 5일이 경과하면 창고료가 부과되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통관 절차의 진행이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페루 정부는 통관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절차 마련, 법령공표, 위원회 설치 등 통관개선을 포함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통관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2015년 현재 SIGAD라는 통관자동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하목록, 수입신고, 특급탁송, 출항신고서, 통합세금납부, 디지털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동구권과 러시아의 통관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소요되는 비용 역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통관검사 비율은 약 44%로서 미국·독일의 3%이하, 영국 2%에 대비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통관 시 평균 제출서류 건수는 수출 8건, 수입 10건으로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다. 또한 외국기업들과 관세당국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여 외국기업의 0.5% 정도만이 특별(단순) 통관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통관절차를 거친다. 러시아연방 전략기획청에 따르면 통관의 실소요 기간이 평균 36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통관지연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0.1월부터 통관 전자신고(e-declaration)를 도입하

였으며, 2012. 12월에는 2020년까지의 관세행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세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행정 발전 전략에 따르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8년까지 4개로 축소하고, 수입통관 시간도 2012년 96시간에서 2018년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통관 신고비중도 2012년 40%에서 향후 10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신고가격과 관세청이 인지하는 적정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세관에서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수입상품의 관세가격(customs value)을 가능한 높게 책정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관절차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품목 제한, 투명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통관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 시설도 통관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나에서는 모든 수입품이 도착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 금액의 1%이다. 도착지검사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4개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수입업체들이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주유(10~47.5%), 담배(150~175%), 생수(17.5%) 등의 특정상품에 대해서 10~15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며,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고, 10년 이상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2.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부과 목적으로 중고차량별 표준가치를 직접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나이지리아는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

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Lagos)항의 경우 하역 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48시간 이내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관에 관여하던 15개 기관 중에서 관세청 등 꼭 필요한 기관만 남기고 표준원(SON), 식약청(NAFDAC) 등 10여개 정부기관을 모두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4.9일부터는 관세청에서 'Nigeria Trade Hub' 포털¹³을 설치하여 수출입 관세, 수입금지 품목리스트,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항 및 항구에서의 통관지연 사례가 많으며, 세관 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관원들에 의한 절도행위,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과도한 규제 등으로 통관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모로코는 세관과 금융기관 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해 관세를 이체하면 세관이 납부증빙을 발부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추후에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용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모로코 세관에서는 웹사이트¹⁴를 개설하여 수입업자가 온라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모로코 수입통관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관료주의로 인한 급행료 요구, 자의적인 과세기준가격 결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품의 통관 시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작성이 까다로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 검역과 통관에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한국에서 모로코까지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3개월을 더할 경우 총 4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다.

13_ <http://www.nigeriatradehub.gov.ng>

14_ <http://badr.douane.gov.ma>

레바논의 수입자는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계약 체결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콧 대상 품목, 석유 혹은 석유부산물 등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과 사전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한편, 르완다의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유통을 위해서는 표준청(SASO)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통관문제가 사소한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선적품 통관이 보류될 경우에는 선적품을 수출국(한국)이나 제3국으로 백십(Back Ship)을 해야 하며,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5년 이상 경과된 중고 승용차와 중고자동차 부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의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세네갈 세관은 과거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약 10% 정도의 상품만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수입증명제도(DPI) 도입과 더불어 세관당국의 통관 분석장비의 현대화에 기인한다. 사전수입증명은 category C(최종소비재) 및 S(suspensive regimes)의 경우 FOB 가격이 100만 CFA프랑 이상이거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3백만 CFA프랑 이상의 수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네갈의 통관절차는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관련 당국의 부정부패로 인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출입 업자들은 세네갈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보관·하역·선적 등 수출입 관련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뇌물 없이는 원활한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UAE(UAE)의 수입통관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수입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유효한 수입업자 코드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 코드는 UAE에 등록된 회사(UAE 국민이 최소한 51% 지분을 소유)만이 획득 자격이 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송장(Invoice) 및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회사별로 담당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 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1999년부터 통관자동관리시스템(SIGAD)을 도입하였으며, 2003.4월에는 알제항에 컨테이너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여전히 알제항의 접안시설 및 컨테이너 처리시설 부족, 관료주의 등의 문제로 통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알제리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16.6월부터 발효되어 향후 양국간 세관분야 전문가 교류, 법규·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랍 보이콧’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생산품의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앙골라는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

담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10월 앙골라 최대 항구인 루안다(Luanda)항의 통관 평균 시일이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처분 하는 등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통관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추가비용 발생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상품운송 지연 개선을 위해 선적전 의무검사는 2013.7.17.일자로 폐지되었으나, 실제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검사와 관련된 계약은 정부 지정검사기관(Bromangol)과 높은 비용으로 체결해야 한다. 자발적 검증절차의 경우 수출입에 관계없이 요청자에 한해 검사 관리부(ADV)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가격조건, 수량, 기술·상업·위생 분야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이라크 남부 트레빌 세관의 경우, 관료주의, 부패, 독직 등의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투명한 세관 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행정력 미흡과 시설 부족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란의 통관절차 상에서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단,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 동의하에 CIF 가격의 5~25%의 벌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그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스탬프를 득해야 완전한 통관으로 간주된다. 만약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증명서의 중

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 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기간도 1~2주 정도 소요된다. 수입통관 시 실 중량 측정의 경우 철강, 종이, 파이프 등 제품은 무게를 측정하여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 세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중량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통관 시 필요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화증권(환적이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 보험증권, 포장명세서(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 수입허가서(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은 반드시 사전 취득 필요), 원산지증명서(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 시 반드시 필요, 아닌 경우 불필요), 특별확인증(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 해당) 등이다. 유의사항으로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리비아 등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팔레스타인으로 수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이 되므로 통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집트는 세계관세기구(WCO) 및 WTO 회원국으로 관세가액을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송장에 기재된 CIF 가격)로 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이보다 10~30%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일된 통관검사규정의 미비로 일선 행정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구매자 평가, 상담, 전시회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의 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상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자의적인 판정이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적도기니의 통관절차는 효율적인 시스템 부재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등에 기인하는 장애요인들로 인해 실질적인 소요기간이 44일로 길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련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세금산정 기준액으로 인정하나, 기준 금액 설정에 있어 세관원과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잦으며, 하역 이후에도 군부 측의 검열 등 규정 이외의 절차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도 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카메룬의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에 등록하여 납세번호(tax payers card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후 통상 2~3일이 걸린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일,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하여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특히 10~12월 중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적체로 인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일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카메룬까지의 해상 운송비용은 보통 1컨테이너 당 4,000달러, 운송기간은 50~60일 정도 소요된다. 단, 기간은 운송비용 등 옵션에 따라 10여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카타르에서 수입업자는 기본적으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 수입서류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상업송장은 주한카타르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쿠웨이트에서는 선적서류 도착 후 통관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통관에 약 2주가 소요된다. 컨테이너 등의 수입품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물품검사를 하며, 미국 및 유럽 통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심사한다. 물품을 위장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3년 내의 구류 형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한다. 단, 세관은 화물손상, 배달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DR콩고의 수출입 업무는 규정상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업무의 지연,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조율 부재 등으로 통관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콩고 정부는 2013년 OHADA(아프리카 비즈니스 법률 조화 기구) 가입 이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통관작업을 대부분 전산화함으로써 현재 자동차 통관에 3일, 컨테이너 통관에 5일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세금 및 비용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주요 항구인 보마(Boma)항과 마타디(Matadi)항이 협소하여 선박이 몰릴 경우 선박의 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급행로 등을 통한 세관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여전히 남아있다. 간혹 전산 장애로 인해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튀니지는 교역을 촉진시키고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통관서류의 전자처리, 전자서명 인정, 관세와 세금의 전자지급 채택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통관시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의 건강, 공정한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총 관세품목의 약 11%에 해당하는 일상 소비재 제품에 대해 엄격한 기술검사(controle technique)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기술검증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List A, B, C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며, 각 List별로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수단과 케냐의 통관은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통일된 규정 미비로 행정당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책정을 위한 제품의 기준가격 또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격차가 심한 편이다.

수단의 통관절차에서는 관세양허를 통해 면세혜택을 받은 제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복잡한 검사절차와 더딘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간접 부대비용으로 면세효과가 반감된다. 이러한 불투명한 세관 행정절차 및 처리지연은 각종 수입규제와 함께 수단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케냐의 통관절차 역시 케냐와의 무역에서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중 하나로써 절차가 느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규정 적용이 매우 자의적이며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세이프가드

개관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GATT 제19조에서는 ‘긴급조치’(emergency action)라는 용어를,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WTO 협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협정의 탈퇴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둘째, 동종

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셋째, 특정 상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이라는 요건은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인지 그리고 예견의 기준시점과 주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를 요건으로 인정한 판정례가 없지 않음에도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하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별된다.

WTO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절차에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 이해당사자들이 증거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조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의 공표가 포함된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는 예비판정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나 피해의 우려에 대해 긍정판정이 내려지고 또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다. 잠정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관세인상의 형태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량제한의 형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량제한조치를 사용하여 쿼터를 수출국 사이에 할당해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 적용이 허용된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하는 경우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최초 적용기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보상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지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않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을 상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처음 3년 동안에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에 규정된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이 되므로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대해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잠정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

현황분석

WTO 통계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1995.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총 311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1년 동안 연평균 약 1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것이다. 그러나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7건과 8건의 조사가 개시된 반면, 2002년에는 총 33건이 개시되는 등 연도별 기복이 심한 편이다.

2006.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최근 10년의 기간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사를 가장 많이 개시한 국가는 인도(26건), 인도네시아(25건), 터키(16건)의 순이며,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 일부 국가의 조사개시 횟수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 주요국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

년	인도	인도 네시아	터키	우크 라이나	이집트	칠레	요르단	튀니지	필리핀	모로코	계
15	2	1	1	1	2	4	0	1	0	1	13
14	7	3	3	0	2	0	1	2	0	1	19
13	3	0	1	1	0	2	0	0	2	0	9
12	1	7	0	0	4	1	1	0	0	1	15
11	1	4	1	2	1	0	0	0	0	0	9
10	1	7	0	3	0	0	1	0	0	1	13
09	10	0	1	2	0	1	0	0	1	1	17
08	1	2	1	1	1	0	2	0	1	0	12
07	0	0	3	2	0	0	1	0	0	0	7
06	0	1	5	0	0	1	1	2	1	0	10
계	26	25	16	12	10	9	7	5	5	5	124

자료: WTO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를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취한 국가 역시 인도네시아(17건), 터키(13건), 인도(10건)의 순이다. 순서만 다를 뿐 세이프가드 조치를 가장 많이 개시한 이들 3개 국가가 또한 가장 많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3개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 간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이집트는 조사개시 건수에 비해 실제 조치 부과는 각각 1/3~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철강제 연선, 갈바륨, 면사, 합금강, 판지 등 총 5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Dextrose Monohydrate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도는 2016.6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열연강판(코일형태), 포화지방알콜, 구연산나트륨, 무용접 강판, 디옥틸 프탈레이트(사실상 미적용)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열연강판(코일제외), 미가공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집트는 배터리 생산자인 클로라이드사의 제소로 이집트로 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조사결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12.12일 조사가 종결되었다.

요르단은 2002년 National Production Protection Law No. 50 발동 이후 카세트테이프, 파스타, 위생복 등의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필리핀은 2008년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kg 당 2페소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08.8월 국내생산자로부터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2009.7.27일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라는 이유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2012.3월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8월을 기준으로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정부는 2010.5월 판지(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 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 달러에 달한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그 결과, 2010.9.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3.6.14일 판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는 2013.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조

치를 취하였다. 또다시 2016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이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2016.6.12.~2017.6.13.)에 톤당 986.50페소, 2년차 937.17페소, 3년차 890.31페소, 4년차 845.80페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써 수입판지에 대한 필리핀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그 적용 기간이 10년에 이를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2015.5.11일부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15일 후 세이프가드가 발동을 하게 되어 2015.5.27일 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해서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필리핀에 수입되고 있다. 신문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18.4.31일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추가 관세 금액은 첫 해(2015.5.~2016.4.) PHP 980(약 22 달러)/톤이 부과되며, 두 번째 해(2016.5.~2017.4.)는 PHP 800(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5.~2018.4.)에는 PHP 640(약 14 달러)로 관세가 조정된다.

태국은 2012.11월부터 상무부 대외무역국이 합금열연강(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such as boron, chromium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여 2013.9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44.20%, 2년차 43.57%, 3년차 42.95%)를 확정하였고, 2015.7월 재심 결과 3년간 추가 연장되었다(적용관세율: 1년차 41.67%, 2년차 40.42%, 3년차 39.21%). 또한, 비합금 열연강판(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2014.1월 조사 개시, 2014.12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21.92%, 2년차 21.52%, 3년차 21.13%)를 확정하였다.

중국은 2016.9.22일부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17.3.22일 전에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칠레는 2016.4.22일부터 6개월간 강철선(Steel Wire)에 대해 제품 단위 가격의 38.9%의 증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관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수입(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반덤핑협정 제16조 제4항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제도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마진을 확대하거나 반덤핑협정의 재심제도를 남용하여 반덤핑조치를 장기간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2001년 공식 출범한 DDA에서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가 의제로 채택되었고, 각료선언문에서는 반덤핑협상의 목적을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 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건의 제안서 및 논평이 제출되었고, 반덤핑 프렌즈 그룹이 결성되어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지만, DDA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각국은 자국이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사와 부과에 관한 요건들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을 원용하며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황분석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01년 372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2008~2009년에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208건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편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03년에 224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98건까지 감소 하였으나,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81건에 이르고 있다.

»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건수(1995~2015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계
조사개시	226	246	266	358	298	372	315	234	220	201	204	165	213	209	172	166	208	283	236	230	4822
조치	92	127	181	190	237	171	218	224	154	138	142	108	139	141	123	98	117	159	157	181	3097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 조치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조치 건수(1996~2015년)

반덤핑			상계관세		
국가	조사개시	조치	국가	조사개시	조치
인도	764	565	미국	175	95
미국	555	326	EU	76	36
EU	447	294	캐나다	49	26
브라질	387	225	호주	20	11
아르헨티나	295	226	남아공	13	5
호주	294	131	브라질	10	7
남아공	213	137	이집트	10	0
중국	229	181	페루	10	5
캐나다	188	125	중국	8	6
터키	196	159	칠레	7	2

자료: WTO를 기초로 저자 편집

2016년에는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키면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반덤핑 조사의 관행에서 상당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미국 조사 당국이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과거의 관행과 달리,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손쉽게 높은 덤핑율을 적용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12.12일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으로써 분쟁(DS/515 및 DS/516)이 개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따라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제15조(a)항(ii))은 15년 뒤인 2016.12.11일에 만료되어야 하는데(제15조(d)항), 이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속적인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해당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여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장을 개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최근까지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 받더라도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정하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5.6.29일 TPEA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후 이 법안이 발효되어 적용되면서 2015년 하반기에 판정이 내려진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사건에서 전에 없던 고율의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미국은 과거 세탁기 사건(2012년), 유정용 강판 사건(2013년)에서 실제 법적 쟁점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으나, 이 법안의 발효 이후부터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율을 적용하고 있다.

도금강판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은 47.8%의 반덤핑률에 상계 관세율 1.19%를 더하여 총 48.99%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에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약 48만 톤, 금액으로는 약 5,800억 원 규모를 수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도금강판 수출량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도금강판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현지에 투자한 완성차 업체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냉연강판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율은 6.32%로 고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계 관세율이 58.36%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율을 합산하면 64.68%에 이른다. 열연강판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율은 최대 9.49%로 매우 고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계 관세율이 57.04%로 반덤핑관세와 상계 관세율을 합산하면 60.93%에 이른다.

EU는 2016.6.30일 기준 93건의 반덤핑 조치와 12건의 보조금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4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조치 중 중국산이 52건으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 상계조치의 경우, 중국과 인도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총 28건의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EU 전체 총 조사 개시 건수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6월말까지의 무역구제 신규 조사를 제품 분야별로 보면 철강과 화학제품이 주요 대상이 되어 왔으며, 철강제품의 경우 2012년 이후 총 32건에 대해 신규 조사가 개시되어 동기간 중 총 신규 조사개시 건수(58건)의 55%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16.10월말 현재 EU로부터 총 4건(철강제 관련결구류, 강철사, 실리콘, 방향성전기강판)의 반덤핑 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강철사와 실리콘은 우회덤핑 규제대상 품목이다. 한편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대EU 수출품은 없다.

EU의 무역구제제도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 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 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2006.12월 EU 집행위가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무역구제제도 개편 논의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상당 기간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에 따른 EU 역내 업계의 어려움 호소 등으로 인해 다시 동력을

확보하였다. 현재 2013년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안 및 지난 2016. 11월 발표된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에 대해 EU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잠정조치(반덤핑 관세, 상계 조치 등) 부과 전 사전 통보, 보복 위험시 집행위 직권(ex-officio) 조사 개시, 보조금 조사와 원자재 시장에서의 구조적 왜곡 존재시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미적용, 수출국에 중대한 시장왜곡 존재시 수출국 국내 가격 대신 구성가격 사용 등이다. 개편안은 회원국 사이의 합의 및 유럽의회 승인 등 EU내 입법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중국은 2016.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1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한국 제품은 석유화학제품이 7개 품목(PVC, ECH(에피클로로히드린), 비스페놀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품), 폴리우레탄 및 스팅렉스(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2003.7.1일 반덤핑 조치가 실시된 이후로 두 번째의 일몰재심을 거쳐 13년째 반덤핑 조치가 실시 중으로, 두 번째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여 2017.1.1일부터 5년간 반덤핑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중국은 2016.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인 폴리포름알데히드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2014.1.20일 반덤핑관세 최종판정이 있는 후 중국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2016.11.22일 중간재심 조사가 시작된 상태이다.

일본은 1995.1.1일부터 2014.12.31일까지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7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을 뿐이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2001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1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 반덤핑 조치를 부과(2012.6.28.일 종료)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2015.5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2016.8.9일 확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2015.2월 일본 칼리전해공업회가 한국산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였고, 2015.5월 일본은 이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트 고체로서 알칼리 전지 전해액, 화학비료의 원료, 사진현상액, 액체 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이 93.2%, 중국산 점유율이 4.2%이다. 2016.7월 일본 정부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49.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73.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하였으며, 2016.8.9일 동 반덤핑관세의 확정 조치(5년간 부과)가 있었다.

인도는 1996.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또한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국가이다. 이 기간 동안 인도는 총 764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565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등 2위인 미국(555건 조사 개시, 326건 반덤핑조치 실시)과 비교해 볼 때 인도가 반덤핑 조치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는 반덤핑조사가 반덤핑조치의 부과로 이어진 비율이 74%로 미국(59%)보다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하여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국가이다. 인도는 WTO 출범 이후 2015.12.31일까지 우리 기업이 수출한 상품에 대해 총 57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총 43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의 총수입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번째로 높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액을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가 많은 상황이다. 2016.6.30일 현재 인도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 1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원심을 기준으로 총 5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상품은 PVC페이스트 수지, 에틸헥사놀, 페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NBR고무, 인산, 가성소다, 탄산칼륨,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아크릴 섬유, 고순도 테레프탈산, 아세톤, 질산나트륨, 고무류, 알루미늄 휠, 염화메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무수프탈산, 나일론사이다. 그리고 2016.6.30일 기준 인도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상품은 냉연강판, 열연강판, 탄성필라멘트사, 스타이렌-뷰타디엔 고무, 과산화수소이다.

최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인도의 국내 철강기업들이 2010년도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집행한 뒤,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인도의 국내기업들은 중국, 일본, 한국산 철강제품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국가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11월 현재 한국산 상품 4건(열연코일, 냉연코일, 석도강판(Tin Plate), 질산암모늄)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해 2016.8.22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또한 열연코일은 일몰재심 조사가 있는 후 현재 중간재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냉연코일은 일몰재심 조사가 진행중이다.

2016.8.22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경우 2012.6.29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2013.12.10일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가 2014.3.2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공고를 하였으나, 다시 제소되어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태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2016.11월 기준 태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것은 5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우선,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5.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13.9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POSCO의 경우 2008년부터 재심을 통한 무혐의 판정으로 일반관세율(5%)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2012.8월 이에 대한 재심요구가 청구되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8월 POSCO 13.58%, 현대제철 13.96%, 동부제철 58.8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2015.2월 재심결과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한편, 도색 및 비도색 냉연강(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와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1.7월 제소되어 2012.7월 조사에 착수, 2013.1월 도색강판에 대해 2.51~10.25%, 비도색 강판에 대해 13.82~22.55%의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적용받게 되었다. 이후 2015.2월 도색강판에 대한 재심결과 반덤핑관세율이 10.7%로 변경되었다.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의 경우 2015년 9월 조사에 착수, 2016년 9월부터 5년간 반덤핑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세아제강을 제외(세아제강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11.96%)한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관세율은 51.53%로 결정되었다.

2016.1.18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강관은 2016.11.16일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된 상태이며, 현재 산세강판(Pickled and Oiled Strip)(2016.2.9일 조사 개시)과 아연도금강판(Galvanized flat sheet in coil and not in coil)(2016.9.14일 조사 개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계의 제소가 많다. 2014.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ITI 고위관계자는 반덤핑 제소 건수가 향후 수년간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이 올라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말레이시아 철강업계가 반덤핑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6.11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4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강철 선재, 전기도금 양철,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냉연강판 등이다. 강철 선재에 대해서는 2013.2.20일, 전기도금 양철에 대해서는 2013.11.16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해서는 2015.3.14일,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2016.5.24일부로 각각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가장 최근 최종판정(2016.5.24일)이 이루어진 냉연강판의 경우 포스코 3.78%, 현대제철 11.55%, 기타 21.64%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호주는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총18개국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상품이 주된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7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열연코일, 철근, 아연도금강판, 후판, 풍력타워, 철강재파이프, 열연철강구조물류이다. 그리고 2015년에는 철강재파이프와 아연도금강판의 우회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중이다.

호주 정부는 반덤핑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2013.7.1일 반덤핑 담당 조직을 관세청에서 분리하여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보다는 교역환경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반덤핑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부담 증가 및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를 타결하면서 상당부분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로 인해 호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의 경우 주요 제품들에 대해 호주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한·호주 FTA가 2014.12.12일 발효되면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고 제외된 일부 품목도 5년 내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 철강 시장을 두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호주 자국 제조사의 수익률이 악화됨에 따라 호주 정부가 철강 산업에 대한 시장관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앞으로 호주 정부의 반덤핑 조치 및 호주 기업들의 반덤핑 신청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www.mbie.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대뉴 수출품목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연료 등으로 자국 산업과 이해 대립이 적기 때문에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13.6월 뉴질랜드 Croy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는 2013년부터 2016.10월까지 총 15건의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시행했으며, 모두 철강 및 금속 제품이 대상이었다. 상기 15건의 조사 중에서 11건은 보조금에 대한 것으로 최근 캐나다 정부가 반덤핑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11월 기준 캐나다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시행 중인 반덤핑 수입규제는 총8건이고, 산업용 철 가공부품(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에 대한 1건의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 및 조사가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중 95%인 343건이 반덤핑, 3%인 10건이 상계관세, 2%인 6건이 셰이프가드와 관련된 조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97건, 미국 35건, 인도 18건, 한국·멕시코·독일 각각 12건, 대만 11건, 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각각 10건 등이다. 수입규제 조치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 플라스틱 및 고무(26.6%), 2) 화학(21.4%), 3) 철(18.2%) 4) 시멘트·유리·세라믹(9.7%) 순이다.

브라질의 최근 5년간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보면, 2010년 12건, 2011년 15건, 2012년 16건, 2013년 43건, 2014년 42건, 2015년 36건 등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0년 셰이프가드 1건을 제외한 163건이 반덤핑과 관련된 조치로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브라질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38개국, 156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5개국, 33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 중으로 총 189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 또는 조사 중으로 대표적인 수입규제 국가이다.

브라질의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 피해 조사 실무는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한다. 브

라질 대외통상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 및 6개 부처 장관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덤핑 등 대외통상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반덤핑여부 최종결정은 통상적으로 대외통상위원회 내의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익 검토를 거쳐,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GECEX(위원장:외교부장관)에서 결정된다.

브라질의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2016.11월 말을 기준으로 총10건으로 PVC-S(염화비닐수지), 철강 3개 품목(실리콘강판, 후판, 냉연강판), 나일론사, 승용차용타이어, 폴리프로필렌 수지, 버스트럭용 타이어 등이며, 현재 조사 중인 품목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16년 현재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정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 결과는 재정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산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동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 검토를 거쳐 통상산업부(DTI) 승인을 통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취한다.

2015.12월 말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76건의 반덤핑 조치가 발동중이며, 2015.8월 도금 알루미늄 아연과 컬러코팅 강철에 수입관세를 10% 인상했으며, 이어 수입관세 적용을 스테인리스강과 전기 실리콘 강 품목까지 확대했다. 2015.9월 WTO에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품목 현황의 경우, 중국(철강 및 금속, 유리제품, 코팅지, 담요 및 전선 등 11개 품목), 인도(PE, 유리제품 등 4개 품목), 인도네시아(유리제품 등 3개 품목), 대만(PVC, PET 2개 품목), 독일 및 영국(화이어 로프, 냉동 닭 등 2개 품목), 미국(닭, 소사회 등 2개 품목)의 순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섬유산업과 같이 고용규모가 큰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1건에 대해 반덤핑관세(19.7%)를 부과하고 있다.

보조금

개관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 지급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을 규율하려는 노력은 1947년 GATT 체제에서도 있었다. GATT 1947 제16조(보조금)는 “수출증대 또는 수입감소를 목표로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1995.1.1일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 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또한 보조금 협정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을 서로 구별하고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은 무역왜곡 정도가 가장 큰 금지보조금에 해당한다. 조치가능 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부정적 효과를 충족하여야 하는 반면, 금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

나 국산품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위법한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서 WTO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다자적 수단으로서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보조금의 철폐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일방적 수단은 개별 국가가 WTO 회원국에 대해 직접 보조금의 존재 및 금액 피해에 대한 판정을 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현황분석

보조금은 덤핑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 거론된다.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행위를 문제 삼는 반덤핑과 달리 다른 국가의 금융 정책 또는 산업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다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조금에 대한 규율 방안은 WTO 설립을 위한 협상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 WTO 협정에 부속된 협정들 중에서 협정의 취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서문(preamble)이 없는 단 2개의 협정 중 하나가 보조금협정이라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의 회원국 사이의 합의 과정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특히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비록 WTO 협정이 보조금을 규율하고 있지만 각국은 여전히 수출지원, 수입대체, 구조조정, 유치산업 보호, 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이 WTO 협정 위반인지를 다투는 국가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WTO 보조금협정이 상품무역으로,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보조금협정의 정의에서도 서비스의 구매가 재정적 기여의 유형에서 빠져 있는 점을 착안하여 서비스 구매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벗어나려 시도한 것

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넘게 WTO 보조금 협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보조금을 정면으로 규율하지 못하자,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FTA에서 비록 한정된 분야에서나마 서비스 보조금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내시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베스티저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16.10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주최 경쟁 컨퍼런스(competition conference)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EU의 규정이 WTO 보조금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EU 경쟁당국의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금추납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위한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이 반덤핑 등의 국제적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의 하나인 국가 보조금(state-aid)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Council)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기업총국과 경쟁총국 등 집행위 각 총국(Directorate General)간 이견이 존재하고, 집행위원들 간에도 출신국가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등 집행위 내부의 갈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국가보조금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최근의 사례 이외에는 실제 보조금 지급 사례에 있어서도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EU는 중소기업·R&D·직업훈련·고용지원·낙후지역개발·일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non-crisis aid)은 1,012억 유로(EU GDP의 0.72%)로 전년(EU GDP의 0.5%)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국가보조금의 대부분은 특정 분야 지원이 아닌 지역 개발, 연구, 환경보호 등 수평적 목적(horizontal objective)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분야별 보조금은 환경보호·에너지분야(enviromental protection and energy saving)에 436억 유로, 농업분야에 76억 유로 등이 지원되었다.

캐나다는 지난 2015.11월 집권한 자유당(Liberal)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 기금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동 기종의 양산과 판매가 지연되면서 2016년에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부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3월, 캐나다 정부는 G사와 C사에 각각 108억과 29억 캐나다달러의 구제 금융을 주식과 채권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후 C사는 2011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주식을 점진적으로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2009.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자동차(부품), 항공 등 핵심 제조업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에 대한 총 14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감세조치 연장, 온타리오 주 산업단지에 정부예산 9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혁신기술기금(ITF: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을 통해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2016.8월말 현재 이 기금은 총 115.2억HKD를 편당하여 총 7,028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2012.7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ITF의 상한액이 2,100만HKD에서 3,000만HKD으로 증가하였고 대상 분야 또한 확대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14.7월말까지 4.7만HKD 가량의 지원금이 391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2012.4월 다양한 측면에서 ITF SERAP가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400만HKD에서 600만HKD으로 증액되었고, 벤처기업에게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인, 테스트,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관련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총 지원액은 2억HKD 규모이다. 2012.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2016.2월 현재 총 연구개발비용의 30%에서 40%로 증가되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은 R&D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 내의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 있다.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 (APAS),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APAS는 연구능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2012.11월 부터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하였다.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의 경제/상업부서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급 회의 체이다. 2015년 11월 현재 모두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홍콩에서 승인받은 16개 국가중점협력연구소(PSKL) 중 12개는 2010년 이전에, 4개는 2013년에 중국 과학기술부(MOST)의 인가를 받았으며,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인도 정부는 수출목적 자본재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수출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리 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EPCG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세를 5%만 납부하면 되나 일정기준의 수출의무를 지게 되며, DFIA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 Output Norms)에 따른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또한, 수출간주제도는 수출전용기업(Export Orient Units)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관세상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DEPB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에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써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최혜국대

우(MFN) 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나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GATT 1994조 제1조 1항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 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기준¹⁵과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¹⁶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¹⁷, 부가가치기준¹⁸, 주요공정기준¹⁹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 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는 못하고 있다.²⁰ 이에 2013.9.26일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 반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2007년 이후 진전이 없는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미국, 캐나다,

15_ 한 국가 내에 당해 물품의 모든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6_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 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7_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Input)의 세번과 완제품(Output)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 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

18_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9_ 각 제품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행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가공 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0_ WTO 원산지규정 협정은 원산지규정 통일화 작업을 WTO 협정 발효 후 조속히 개시하고 3년 내에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 등은 제정 작업 초기와 다른 상황변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이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사항 이외는 총회의 방침이 결정될 때 까지 작업 중단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EU, 인도, 중국, 스위스 등은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로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각국의 자의적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아직까지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하나 대체로 미주지역의 NAFTA 모델과 EU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PANEURO 모델로 양분될 수 있으며, 그 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NAFTA모델과 PANEURO 모델을 병용하여 사용하거나 대체로 이들 모델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용이하게 적용하고 있다.²²

» 지역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

	NAFTA 지역	PanEuro System	동아시아 지역
일반적인 특징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역내수출입자들에게 상당한 애로	역내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부터 PanEuro 모델을 시행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역내 보호수단이 미약
원산지 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AFTA)
부가가치 생산방식	RVC 순원가 및 거래가격(FOB)	MC 공장도 가격 (ex works price)	RVC 또는 MC
부가가치 인정기준	순원가 50% 거래가격 60%	MC 50~30%	RVC 40%

21_ 김영환. 2013.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22_ 최홍석, 이영달. 2011. FTA 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NAFTA 지역	PanEuro System	동아시아 지역
중간재 흡수원칙	사용(자동차 제외)	사용	사용
누적계산	양자누적	완전누적(EU)	양자누적 및 완전누적(ASEAN)
최소허용 기준	7%	10%	사용안함
원산지 증명	자율증명	반자율증명	기관증명

자료: 최홍석, 이영달(2011)²³, p.64

한편, 지난 2013년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각료결정에 따라 최빈국의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국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 관련 지침이 제시되었으며,²⁴ 2015년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최종합의문이 도출되었다.²⁵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발리 각료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이후 제네바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빈개도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상당한 또는 실질적 변형요건을 완화 또는 단순화 해주었다. 또한 동 합의문은 최빈개도국간 원산지 누적확대 노력을 독려하고 자가증명서 허용 등 관련 서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황분석

원산지규정이 통상장벽으로서 기능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쿼터품목이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적용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물리적 구성변화, 소요시

23_ 최홍석, 이영달(2011)¹, FTA 시대의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64,

24_ WTO, 2013,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3)/42/WT/L/917)

25_ WTO, 2015,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Ministerial Decision (WT/MIN(15)/47-WT/L/917/Add.1)

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쿼터품목의 가공 및 조립과정이 제조과정인지를 엄격히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항, 그리고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 2조 다항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정할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정부조달 품목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체 부품 및 제조비용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의 원산지 판정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입가공품의 정부조달 입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라항의 각주에 의해²⁶ WTO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특정한 표시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하고 있는데, 예컨대 상품의 부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정위치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등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f항²⁷에 어긋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사용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은 통상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해석·운용

26_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7_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기술하는 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되어 무역제한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야는 섬유류이다. 그 이유는 섬유류의 경우 국제 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각국에서 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 등 특혜무역의 증가와 국제 분업의 확산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품목에 걸쳐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품목별 대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및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명칭의 변화보다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은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의 경우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구성(형태)변화, 소요시간, 과정의 복잡도, 기술수준,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역시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문제의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 군에 속하면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 중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

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7.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8월에 미국과 EU는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날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 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 협정에 따라 2005.1.1일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되자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2005.10월에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 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 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 미국의 신·구 섬유 원산지규정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재개정후(2000.5.18)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상의 사후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은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생산 기준, 실질변형기준 등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하였다. 실질적변형 기준에 대해서 양국은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 변경기준, 부가차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는 HS 6 단위 기준으로 약 5,000여개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캐나다의 원산지규정에서는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를 해야 한다. 캐나다의 「상품 원산지 표시법」은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법에서는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상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육류(닭고기 제외)의 경우 한미 FTA와 동일하게 도축기준을 인정하고,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섬유·의류는 한·미 FTA의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보다 완화된 기준인 세번변경 및 염색·날염 공정 인정 등을 채택하였다. 더불어 한미 FTA 및 한EU FTA와 유사하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증

족기준을 논의하였으며, 한-캐나다 FTA는 한국 혹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과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 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o III)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의 원산지가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1.1일부터 적용하였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3.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서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이어야 한다. 역외로부터 반입된 원자재로 생산한 경우에는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5%이상일 경우에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에는 원산지 표기가 요건화 되어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에서 관장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원산지규정 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나, 다만 CARICOM과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 그리고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 (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 (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 (CARICOM 14개국+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 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對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단 원산지규정 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데안(Andina) 국가 간 교역 시 관세면세를 위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볼리비아는 과거에는 모든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동·식물 및 중고 의류 등 일부 수입 규제 품목과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 de Naciones), 남미공동시장(Mercosur)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적용 시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섬유제품·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 원산지국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루과이는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그리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 간 특별 원산지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규정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의 규정은 회원국의 원재료 또는 다른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제3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세번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F.O.B)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MERCOSUR의 일반규정에 따르면, MERCOSUR에서 완전 획득되고 제조된 물건, 제3국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세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제3국의 원재료가 완성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특별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은 식물성 기름, 화학물, 섬유, 신발, 철강, 통신, 컴퓨터 등이다.

에콰도르는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부과하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등의 회원국 수출 품목은 0-20%까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대만,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 과테말라는 일반원산지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관세동맹이나 FTA 등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원산지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특혜원산지규정 적용대상 국가로는 중미공동시장, 미국,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대만, EU 등이 있다.

칠레와 파라과이의 경우 우리 기업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 칠레에서는 통관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건별로 원본 제출하여야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

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들이 역내제품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반덤핑조치, 수량 제한 등 통상정책조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제품의 최종적·실질적·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EU 시장에서는 지난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고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SAARC(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 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 기준이 인정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euro-mediterranean)에 대해서도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정되는 국가와 시기는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또한, EU는 개도국 및 최빈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SP 원산지규정을 개정하고 2011.1.1일부터 보다 간소화되고 완화된 새로운 규정이 발효시켰다. 개정된 GSP 원산지규정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

이 주요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단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복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사용할 경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하나의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역외산 원산지 재료 비중이 개도국은 최대 50%, 최빈국은 70%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누적조항 적용 대상 국가가 확장되었으며 원산지 증명 역시 정부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던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GSP Form A 대신에 2017.1월부터 등록수출자제도(registered exporter system)가 실시될 예정이다.²⁸

2011.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서 양측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원산지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의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규정에 합의하였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기계 등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그 동안 EU가 체결한 FTA에서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대신 수출자 및 생산자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기준을 도입하였다. 한편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관세환급제도는 우리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성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스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규정은 일반 원산지규정과 EU/EFTA, GSP, FTA 등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6.9월 이후 한·EFTA FTA 발

28_ Ernst & Young. 2011. Spotlight on: the European Union's new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radeWatch March 2011, Volume 10. Issue 1 pp.2~5.

효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동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가격 결정 기준은 공장도가격으로 규정한다. 또한 역외가공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European Economic Area)협정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인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원산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인 EU 회원국과 FTA 체결 국가는 “EUR 1”로, 러시아·미국·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스위스·노르웨이·우크라이나 등은 “Form A”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EU의 섬유 및 섬유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터키는 상품의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터키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산지 판단을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적용

하고 있는데, HS 4단위 변형 유발 여부,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의 현저한 증가 여부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중국은 섬유·직물 분야에서 경직적인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개별 소품목마다 생산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표시는 가공적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도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표시를 하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통상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칙은 완전획득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의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은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특혜(협정)관세를 부여하기 위해 CEPT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CEPT 제도는 당해 물품이 ASEAN 국가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부가가치 산출 시에는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베트남의 경우 2014.12.10일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ASEAN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기계, 전기·전자의 경우 우리의 핵심 관세품목을 중심으로 한ASEAN FTA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로 합의하였으며, 완성차는 한ASEAN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특혜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10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TPP 및 EU와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2015.12.20일 한·베트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ASEAN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수준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기계, 전기·전자의 경우 우리의 핵심 관세품목을 중심으로 한ASEAN FTA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로 합의하였으며, 완성차는 한ASEAN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특혜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브루나이의 원산지 증명은 산업자원부 국제관계국 및 무역개발국(IRT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Development Division)에서 주관하며, 수출업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IRTD에 신청하면 IRTD 관계관은 늦어도 제품이 완성 또는 포장되기 60~70% 전에 제품을 검사,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최소한 수출일자 이틀 전까지 발급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등의 불편이 따른다.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파키스탄은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스리랑카와의 교역 시에는 해당 무역협정의 규정을 일일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판정은 대체로 HS코드 4단위 또는 6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역내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국에 따라 30~60%를 차지한다. 원산지규정상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단 제3국을 경유한 수출로서 해당품목이 쿼터품목일 경우에는 VISA를 발급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현행 WTO 원산지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업체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차별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로부터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 생산 공정이 해당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자재나 부품 등을 타국에서 수입, 생산한 경우에는 수혜 대상국의 원자재비용과 제조 및 노동비용 등이 당해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원래 해당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뉴질랜드에서는 신고만으로 GSP 수혜가 가능하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농산물 수입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이나 유효기간,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킴으로써 되어 있다. 라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통관 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키징 리스트 등은 여타국과 동일하다.

오만은 영사인증 제도를 실시,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오만대사관의 영사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취득시 통관이 불가능하다. 오만은 원산지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완전 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이 일어난 경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기준(40% of Local Value-Added)이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시리아 역시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과 관계되는 영사인증, 아랍 보이콧, 시리아 제재법 등에 따른 조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충족할 필요가 있다.

바레인은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아랍대사관에서 인증된 아랍어 혹은 영어로 된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된다. UAE 역시 원산지증명서(C/O)에 해외 주재 UAE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업 송장, 선하 증권이나 항공화물 수령증의 복사본 3장,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부착을 요구하며 한국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지만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제3국의 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당 송장 및 원산지증명서를 수출당사국에 소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나 대사관에서 공인을 받아 송부하여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당사국에 관련 기관이 없을 경우는 GCC 국가 대사관 내지 Arab 대사관에서 인증을 요구). 송장과 기타 서류들은 상품이 쿠웨이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쿠웨이트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보내져야 하며, 서류가 미리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다.

예멘에서는 개인물품, 기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 상품은 수출국 상공회의소가 확인한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 적시 상업송장)가 첨부되

어야 한다. 사우디 및 이라크와 맺은 특혜무역협정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실질변형기준을 적용하며 생산품 가격의 40% 이상이 투입된 지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지방 국가들의 영사인증제도는 관세 포탈이나 외화도피 등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동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수출업자에게 시간소요 및 인증비용 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최근 선적서류 영사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수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원산지국 주재 이란대사관으로부터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에게 영사인증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면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수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발급했던 영사공증 제도를 2006.5월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포장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문제가 된 사례로, 수출 시 원산지 확인 및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세관은 2011.4월부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카타르 세관 측은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측에서 인터넷교부 원산지 증명서를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2013.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가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을 이용하여 표기할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거절된다.

이집트는 2009.6월경부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및 원산지국 주재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을 따르면 제품표면, 서류선적,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중계무역이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한이집트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튀니지는 양자협정을 맺은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쿠웨이트와 對아랍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가공 제품 최종생산가치의 40% 이상을 동 체결국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경우, 동 국가들을 원산지로 인정하여 수출입 시 감세 및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알제리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 「추가재정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과 더불어 수입품에 아랍어로 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였다. 원산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복제품 퇴치 목적의 일환으로,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수입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제3국에서 제조되어 알제리로 수입되어야 한다.

가나는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 협약에 따라 동 기구 회원 국가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상품(30% 이상)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세네갈은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에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WAEMU)의 공동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WAEMU의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30% 이상 부가가치기준을 병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에 따른 차별대우는 없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인해 붕괴상태에 있는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섬유제품에 한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새로운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섬유제품의 라벨에는 수입된 직물 원재료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Made in South Africa from imported material’이라고 라벨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섬유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예: Made in South Africa)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DR콩고는 귀금속(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황옥 등) 및 반귀금속(금, 은, 이리듐, 팔라듐, 라듐, 백금, 바나듐 등)의 특정 광산물 수출의 경우 광물성분 분석기관인 귀금속·반귀금속 감정평가센터(CEEC)의 원산지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콩고 동부의 반군 점령지역, 미성년자 착취 지역에서 채굴된 광산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콩고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지역협정에 따라 특혜적 원산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WTO에 통보하였으나 아직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가봉은 수입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원산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CEMAC 원산지는 주로 산업제품에 부여하며, CEMAC내 원재료가 총가치의 40% 이상일 경우에 CEMAC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정부조달

개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로 정의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정부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10%에 달하며 공기업 및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약 15%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에서 정부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조달 시장은 정치·국방·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조달 시장을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됨은 물론 조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자체제 속에서도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정부조달의 조달 대상은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이고 조달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한 국가의 경제에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 외국과 더불어 기본 경제주체 중 하나이며 정부조달을 포함한 정부의 지출은 소비, 투자, 수입과 함께 총수요의 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여타 경제주체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 첫째, 여타 경제주체는 여러 작은 주체의 결합인 반면, 정부는 하나 또는 극히 소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개별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 비교하

면 절대적으로 큰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독점(monopsony)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영향력은 여타 경제주체들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타 경제주체는 법이나 규제 등 주어진 환경과 상황 하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법이나 규제 등 활동 환경을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일반 기업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제한이나 규율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셋째, 기업이나 소비자는 본인의 수익이나 신용에 따라 지출 수준이 결정되는데 반해, 정부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지출의 증가는 소비자와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상승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정부조달과 이에 따른 이득은 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출 담당자와 수혜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달분야에서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지출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무가 요구되며 투명성이나 책임의무가 미비한 경우 정부조달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부조달은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는바 지역개발, 중소기업의 발전 등 국내소득격차의 해소 및 일부 산업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 또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경제 및 환경에 부합하는 조달형태를 갖게 되며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국제기구들과 국제경제협력체들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제정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하여 각 회원국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연구 작업도 진행함으로써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정부조달 체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구속적 정부조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대한 합의가 협정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조달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외국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완전히 금지되는 경우로 특히 국방관련 조달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내 기업에게 특혜마진을 제공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외국기업에 일정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경제개발이나 고용향상을 유도하는 측면이 크나 때로는 사회정책으로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정부조달 관련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외국기업이 자국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불공정한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하거나 공동입찰을 해야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국산품이나 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또는 의무적 기술이전 요건 등이다. 넷째, 비록 구체적인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비공식적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화적인 이유, 또는 국내기업과 정부관리간 맺어온 인맥관계 등으로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조달체제 및 관행을 유지하여 여러 절차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복잡한 조달체제가 외국기업에는 시장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WTO에서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GPA가 있다. 그러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 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GATT 제3조 8a항에서는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내국과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GATS 제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최혜국대우(제2조), 내국민대우(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 조약에 따르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²⁹⁾ 이에 따라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국내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왔다.

29_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MFN과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는 복수국간협정의 형태로 GPA가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이의제기 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라는 차이가 있다.³⁰ 따라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의 부록에 자국이 양허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동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국에 의무의 준수를 요구할 수도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WTO GPA는 정부조달에 다자무역의 원칙을 적용시켜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부 GATT/WTO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GPA는 다자협정이 아닌 복수국간협정으로 남게 되었다³¹.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인 민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등은 국내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조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칠레 등 일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GPA에 가입한 국가들마저

30_ 현재 정부조달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루바,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아이슬란드, 홍콩, 대만과 EU 27개 회원국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터키, 파나마, 호주, 중국, 인도 등 총 28개 국가와 4개의 국제기구(IMF, OECD, UNCTAD, ITC)가 옵저버로서 WTO GPA에 관련되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옵저버 국가들은 협정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31_ GPA는 비록 복수국간협정이지만 일부 양자협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GPA의 부록에서 각 서명국가는 특정 서명국가에 대해 차별대우를 양허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상호 공평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하며 미국의 경우, 한국 지방정부의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에 대해 미국의 지방정부도 한국에만 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높은 건설서비스 양허최소액을 적용하고 있다.

도 자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양허안에서 일부 조달기관이나 조달 대상품목을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정 GPA가 2013년 타결, 2014년 4월 발효되면서 가입국의 조달시장이 확대 개방되었다. 규범적 측면에서도 개도국 우대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 등을 일정기간 허용)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도국의 GPA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국과 호주를 비롯한 10개 국가가 G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 조달 시장 개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5년 타결된 TPP를 통해 아시아 국가 등 조달시장의 확대 개방을 기대하였으나, 미대선 결과 트럼프 당선으로 TPP를 통한 조달시장 개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황분석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5천 179백억 달러로 연방정부 총 지출액의 1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별 법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 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우선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중추를 이루고 있고,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우선구매정책은 미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우선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

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조달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州 중 37개州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州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³² Buy American 조항에 따르면 미 연방조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6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계약에는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하도급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³³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예산에 속하는 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처 산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标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기구(招标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기구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

32_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의 주는 13개(앨라배마, 알래스카, 조지아, 인디애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키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이다.

33_ 중국의 정부조달은 집중조달과 분산조달을 결합하여 실행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집중조달 범위(정부조달 항목)를 규정하는 목록이다. 중국 국무원에서는 매년 정부구매 목록을 집중조달목록과 부문조달목록, 분산조달목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집중조달목록은 반드시 집중구매기구에서 위탁하여 조달하며 부문집중 및 분산조달 목록인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집행하거나 집중구매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 을(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 이하의 입찰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³⁴, 경쟁성 담판³⁵, 단일구매³⁶, 가격 조회³⁷,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고,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2000년 초 중국이 「정부조달법」을 시행한 이래 중국 정부 조달시장은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조달시장규모는 조달통계를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2조 위안을 초과한 21,070.5억 위안으로 2014년 대비 21.8%(금액대비 3,765.2억 위안)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재정지출의 12.0% 수준이며, GDP의 3.1%수준이다. 중국 조달시장의 최근 경향은 협의 공급제도의 확산, 용역 조달시장

34_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자를 선택하고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하는 방식이다.

35_ 특정 공급자 몇몇과 협상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고 후 공급자 응찰이 없거나 합리적인 응찰서가 없는 경우, 기술이나 성질이 특수하여 상세한 규격 또는 구체적 요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공고 소요시간이 고객의 긴급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본 방식을 이용한다.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36_ 유일한 공급자만 있을 경우, 긴급 상황 발생으로 기타 공급자로부터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에 대해 기존 조달항목과 일치성 또는 서비스 요구를 보장하고 원 공급자로부터 보충 조달 시 원 계약 조달 금액의 10% 이하일 경우, 조달자와 공급자 양측이 합의한 합리적 가격의 기초에 의거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37_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회 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회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 조회 후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의 비약적 발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증대,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만은 1999.5.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하여 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공사, 재무, 노동 서비스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대만은 2008.12월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7.15일부터 발효 중이다. 그러나 대만의 GPA에 양허된 조달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타 지방정부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2014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2,442건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417건이며 낙찰 금액은 총 332억 1200만 대만달러(비중 17.73%)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실적을 평가대상에 추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관행 시정요구를 받아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전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용이 2013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3.0%, 건수대비 2.9%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 조달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조 435억 엔으

로 전년대비 0.6% 감소(조달 건수도 15,613건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의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48조 4,600억 엔으로 그 중 정부부문의 공공사업분야가 약 20조 1,600억 엔이고 민간분야가 약 28조 3,000억 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공공조달기관은 25만여 개이며, 연간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구매한다. EU는 단일시장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보다 효율적인 공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EU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적용중인 데, EU는 2014년 4월,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인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 contracts)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EU지침의 실제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이행입법이 필요한 바, 당시 이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의 간편화와 유연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으로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단순화는 자국상품구매(buy national) 정책을 막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조달당국이 비용대비 최적의 가치를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self-declaration 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해 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달(e-procurement) 역시 201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8년까지 일반화되고 의무화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후 조달기관에 대한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특히, 전자조달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이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

템인데, 동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 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신규 지침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 기준이 아니라, 가격 외에도 비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과정/사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달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 계약의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계약(division into lots)으로 분할해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apply or explain” 원칙 적용). 또한, 조달 참여에 대한 재무상태(financial standing) 증명을 계약 금액의 2배 이내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공정한 조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기업의 EU 정부조달 시장진출 기회는 확대되고 있는데, 한-EU FTA가 발효되어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양허 이외에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 사업이 개방되었고, 과거 낙찰실적 요구 금지 등을 명문화한 점은 우리기업에게 기회요인이다.

또한, EU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국(예: 2014.7.1일 가입한 크로아티아)에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의거, 신규 가입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동 협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신규 가입국에 대한 조달시장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EU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촉진을 통해 EU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EU 자체의 정부조달시장의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금번 정부조달정책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달지침의 개정은 우리 기업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기준에

가격 외에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응찰자들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EU 역내 업체, 특히 발주국가의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제3국 기업들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5.1.1일 미국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 정책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 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내기업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 마진 때문에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입찰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한-호주FTA를 통해 우리나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 조달시장까지 개방한 바, 향후 우리 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주는 2015년 GPA 가입 의향을 공식 발표하고 현재 GPA 가입을 위한 양허 개방 수준 등을 우리나라 등 기존

가입국들과 협상중인데, 기존 가입국들의 요구에 따라 향후 호주의 GPA 양허개방 수준은 한-호주 FTA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정부조달은 2006.1월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N94-F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시 등이 10만 루블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 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의 30%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에 조건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바,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산·파산과정에 있거나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관세 미납·채납액이 일정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할 수 없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및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외국산 자동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7.16일 발효)와 외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9.1일 발효)를 시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해외 의료용 제품(2015.2.5일 발효)과 외국산 소프트웨어(2015.9월 발효)를 조달 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2016년 8월 GPA 가입 의사를 WTO에 공식 통보하였으며, 2017년부터 양허개방 협상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 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2014.7.1.일부터 새로운 「개정입찰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 절차 간소화 및 법률정보 공시의무 이행 을 위한 전자조달 시행, 완화된 입찰기준 적용, 외국인 계약자의 개입을 위한 두 가지 신규 조건(①베트남 회사와 제휴하거나 지역업체에 하도급 을 주어야 함, ②사업진행을 위한 책임자가 없을 시에만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해야 함) 등이다. 입찰자 선정에 관해 투자프로젝트 입찰에 대해 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새로운 적용 범 위를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을 분권화하여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데 있다. 특히 관련 공무 원에게 재량권으로 주어졌던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새로이 시행되는 전자입찰제도는 컨설팅 서비스, 비컨설팅 서비스, 조달, 건설과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 제안, 직접 조달과 같은 혼합 입찰에 대해 전자로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전자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자와 계약자가 모두 국가 입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 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입찰 ‘평가 방법론’에서는 입찰 심사방법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론적으로 고품질 저가격의 다중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 나, 실질적으로는 현행 저가 입찰과 동일하거나 더욱 불공정한 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TPP를 통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였다.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 TPP발효 이후 최 장 26년 이후까지 단계별로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관련 법령으로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 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산자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 별 조달소위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발주

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규모가 150,000브루나이달러 이상인 조달 사업을, 부처별 조달소위원회는 150,000브루나이달러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브루나이는 현재까지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최근 타결된 TPP에서 단계별 양허방식으로 자국의 조달시장을 개방하였다.

싱가포르의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포털(www.gebiz.gov.sg)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털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상기 포털에 등록해야만 포털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털에 등록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2월 회원국간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 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나, 동 협정은 정부조달에 대한 별도의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 공여 단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 공여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부패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공개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2.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조달절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과테말라의 「정부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dad)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금액이 100만 께찰(1달러=7.58께찰, 2014.10.2 현재)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에 Legal Representative를 두어야 한다. 국가 베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정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 정도까지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정부조달계약에서 자국 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 국제조약(FTA 등)에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 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 응찰자가 없을 때, ④ 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때 ⑤ 입찰참가자가 금융과 함께 들어오는 때 등이다.

에콰도르의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 관세청에 단일회사등록(RUP: Registro Unico de Proveedores)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UP 신청서, 출신국가 발행 사업자 등록증 및 번역문(아포스티유 받을 것), 재정증명서, 지정한 법적대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여권, 에콰도르인의 경우 Cedula 혹은 투표증명서 사본 동봉) 등이 필요하다.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다. 정부조달은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2000.4월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 위원회(UNAC)가 조달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조달 자체는 각 정부기관에서 담당한다. 현 정부의 공개입찰 하한선(threshold)은 60,408달러(통상 및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240배)로 동 규모 이하 입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우루과이는 WTO GPA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한 조달이 이루어지지만 계약규모에 따라 간이절차나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조달을 국내산업의 보호와 장려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법령에 의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8%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중소기업 할당분(계획된 조달 물량의 10%)을 두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고 입찰정보 입수가 어

려워 조달시장 진출시 장벽으로 작용한다. 우루과이 헌법에는 조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방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정부조달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를 설립한 바 있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MEF) 산하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달청(국가계약 최고감독청 / 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을 두어, 이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를 대체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정부, 국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페루 정부조달 참여희망 외국기업은 모두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위해서는 페루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 에이전트나 지사,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루 내 지사나 법인이 있어 납세번호(RUC No.)를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이들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기업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2011년 발표된 한-페루 FTA를 통해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바, GPA 미 가입국인 페루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부들이  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5. 1.1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2016년 1월 14일 개정 정부조달협정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어 캐나다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의 CAFTA 협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매우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소 40일 이상 공고) 설정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격 설정도 할 수 없다. 이처럼 CAFTA의 국제입찰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입찰 건의 최소금액은 상품서비스의 경우 58,000달러(공기업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 건설의 경우에는 672만 달러이다. 2014.5월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조달시스템을 Compra Red(칠레기업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재무부가 주축이 되어 사용)로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Solis 대통령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경쟁·해운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

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차 사업’에서 우리 현대로템 및 한화 컨소시엄은 그리스와 지역연고가 강한 스페인 CAF사, 이태리 ANSALDO사를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52백만 유로)을 수주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에 이어 연속수주에 성공하였다. 한편, LG CNS는 2014년 그리스 테르나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3억 유로 규모의 아테네 e-티켓팅 사업을 수주하였다. 그리스 교통부 산하의 아테네도시교통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12년인 장기사업이며, LG CNS는 2016년 말을 목표로 아테네의 버스, 지하철, 국철 등 모든 대중교통시설에 교통카드 단말기, 게이트 및 자동승차권발매기를 설치하는 한편, 교통운임 정산을 위한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 기업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6.11월 「정부조달규정(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을 국내법으로 완전히 수용하였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만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 건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계약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 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며 독일 내 관보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또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루마니아는 EU 가입에 따라 2007.1.1일부터 WTO/GPA 회원국이 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공공입찰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EU 가입절차의 일환으로 2005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공입찰규제감독기관(NARMPP, National Authority for Regulating and Monitoring Public Procurement)을 설치하였다. 공공입찰을 규제하는 기본법제로 2006.6월 발효하고 2010.6월 일부 개정된 「정부령 제 34/2006호」가 EU의 공공입찰을 규제하는 제반 법규를 반영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정부조달 규모는 연간 GDP의 10% 이상에 이르며, EU 가입 이후 루마니아에 할당된 대규모의 EU 구조개선기금(2008-2013)을 활용, 루마니아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EU 자금의 흡수율(10% 이내)이 낮아 당초 기대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공공입찰 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11.9월 공공입찰 관련 법령 일부 개정을 통해 민관합작(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도 공공입찰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1만 5천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상품, 서비스 및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계약 규모가 상품, 서비스의 경우 12만 5천 유로, 공사 계약의 경우 484만 5천 유로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개경쟁,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고 상당 내용은 EU의 정부조달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특혜를 부여하였으나 2013.4.1일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또한 2013년 개정법은 10억 디나르 이상의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 기능 도입, 소액 정부조달의 투명성 강화, 최초 국방 및 안보분야 정부조달 규율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8월 발효된 개정법은 입찰 공고 및 결과의 온라인 공지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입찰 참여자의 권리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칸톤 州정부의 조달은 WTO GPA 양허 하한선에 한하여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하한선은 23만 스위스 프랑, 빌딩은 870만 스위스 프랑, 물·에너지 및 교통회사가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는 70만 스위스 프랑이다. 한편, 주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AIMP)에 의하여 건설은 870만 스위스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스위스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스위스 공공조달 포털사이트(www.simap.ch)에 게재된다.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인 조달청(UVO)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EU 집행위가 추계한 슬로바키아의 2013년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의 공공조달 지출 규모는 8.48억 유로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슬로바키아내의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 충분한 전문성이 없으며 효과적인 공공의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복잡한 구매를 위한 비차별적 입찰공고를 보장할 템플릿(Template)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2016년 보고서에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Electronic Contracting System) 도입과 계약 등기의 의무 사용이 공공조달 부분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영국의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규모는 1,870억 파운드이며, 영국 GDP의 13% 수준이다. 이중, 전체 정부조달의 절반(약 900억 파운드)은 민간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contracting out) 계약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영국하원 공공회계특위 2013/14 제47차 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공조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 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체코의 공공구매 및 입찰절차, 입찰조건 등은 공공구매 관련법인 「법령 No.229/1996」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법(『40/2004 COL』)이 2004.5.1일 발표됨에 따라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은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의 경우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자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조건을 차등화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체코철도공사(2012.3월)와 재무부(2013.3월)의 조달 입찰에서 ‘최소길이’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프라하공항공사(2012.10월) 조달입찰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스코다 자동차와 스코다 이외의 차량 납품으로 구분하고, 스코다 이외의 차량은 서비스 비용도 입찰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입찰조건을 실질적으로 차등화 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조건 요구는 WTO GPA 제3조 2항(내국민대우) 및 6조 1항, 2항(기술규격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어 주체코한국대사관 등 우리나라 유관 부서에서 체코에 개선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체코의 외국산 자동차 입찰 참여 제한이 개선되어 2015년 9월부터 한국 자동차의 체코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³⁸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Public Procurement Act(Narodne novine, 크로아티아 관보 90/2011)」를 제정, 2012.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규정, 7만 쿠나(kuna) 이상 조달시 전자 입찰 공고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EU의 정부조달법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가되기도 한다. 7만 쿠나(약 9,210유로) 이상의 모든 공공계약에는 「Public Procurement Act」가 적용되며,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된다. 2013.7.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주요 정부 조달 입찰 공고는 EU의 관보(Official Journal)에 자동으로 게재된다. 크로아티아의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용 입찰에서 90만 쿠나 이상인 경우 「Public Procurement Act」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04/17/EC, 2004/18/EC」)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규정하고, 전력청(EDF), 철도공사(SNCF) 등의 조달 관련사항은 특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05-649」)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

38_ 현대차는 2015년 9월 체코 경찰에 경찰특장차(x 35) 150대를 납품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체코 국방부에 8대(i40)와 체코 도로공단에 195대(x20 42대, 투싼 119대, i40 34대)를 납품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프라하 시경에 40대(i30)를 납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터키 정부는 2002.1월 「공공부문 입찰에 관한 법률 제4734호」를 제정하고 보완·수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입찰에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입찰제도인 e-procuremen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정부조달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은 없으나 입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입찰기업들에게 우대금융인 soft loan으로 사업재원을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공공기관은 GHC 25,000 이상의 상품 구매, GHC 5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5,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 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GHC 10,000,000 이상의 상품 구매, GHC 15,00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5,00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 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각 부처 정부조달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종합 정보는 www.ppaghana.org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IMF, 아프리카개발은행, 프랑스 개발청 등 해외 원조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과 달리 가나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4.1월 흑인경제 육성정책 전략과 방향을 담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을 공포하였다. 또한 동 법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2007년 발효된 실천규약을 강화시킨 BBBEE 모범실천규약이 2013.10월 발표되어 2015.5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에 따르면 기업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면제되는 영세기업(Exempted Micro Enterprises, EME), 자격 있는 소기업(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 연매출 1,000만 랜드-5,000만 랜드) 및 대기업이다. QSE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조건(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1개)을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기업(연매출 5,000만 랜드 이상)은 BBBEE 등급이 두 단계 하향 조정되고, QSE의 경우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 등 정부조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BBBEE 및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정부조달, 정부 허가 등에서 흑인 기업의 지분소유 수준별로 가산점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조달시장 참여에 있어 BBBEE 정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적도기니의 정부 사업은 관보에 게재하고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도기니의 기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기업이 인프라 부나 GE Proyectos(국책사업 발주/관리 담당기관)에 제안하고 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자의 요청이나 개입으로 발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와 상관없이 발주가 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발주 사업은 적도기니에 법인 설립이후에 참여가능하며, 동 법인(기업)은 5~10%의 적도기니 몫의 이익 배당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도기니 재정(財政)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개년(2014-16) 경제·재정 보완 대책/ Decreto Num. 72/2014 : 2014.5.21일 대통령령」은 정부 발주, 공사/용역의 수주와 이에 대한 적도기니 정부의 대금 지불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WTO GPA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국가조달 계약법(LCE: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은 2001년 10월 발효되었는데, 동 법에 따르면 100만 렘빠라(2016년 11월 현재 약 U\$43,478)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50만 렘빠라에서 100만 렘빠라 사이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50만 렘빠라 미만의 경우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한해서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ñ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로컬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12월 GPA위원회 옵저버가 되었으나 동위원회 가입을 위한 협의는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왕령에 따라 정부조달을 실시하나 대부분의 국방 분야 계약은 이 법령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방위산업, 통신, 항공 및 전력 등 주요 조달 계약(약 1.3억 달러 이상)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보상투자(Off-set) 프로그램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투자 규모는 계약금액 중 Technical value의 25~35%(방산물자 및 관련 서비스는 통상 35%)이며 이때 건설비, 인건비 및 사우디산 구매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따라 정부조달 물품의 경우 자국산 구입 가격을 동일 외국산에 비해 10% 비싸게 구매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가 승인하는 플랜트 설비 등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원청자가 공사의 30%를 의무적으로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장비의 직수입을 금지하고 수송, 보험, 금융, 토지 및 건물임대와 Catering에 대해서 현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항목별 세부예산내역 등 정부조달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외국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2010.2월 사우디 국방부는 자국 군수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국기업에게 무기를 제외한 기초 군수물자 입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외국기업만 참여하던 것을 자국기업에게도 입찰참여를 개방하는 조치로서 입찰참여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약 15,000개에 이른다.

UAE의 정부조달은 대부분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입찰 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제한 입찰, 경쟁견적, 수의계약의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입찰 모두 UAE 국적 파트너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 외국인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결정 등 외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입찰의 경우에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의 명의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동 파트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UAE의 정부조달 관련 불공정한 관행으로는 입찰 참가 시 반드시 UAE 국적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UAE의 「연방 조달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연방정부기관에 납품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의 제조업체로 현지에 UAE국적의 상업에이전트(Commercial Agent)가 있을 때 2) 외국기업이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UAE국적의 서비스에이전트(National Service Agent)를 선임했을 때 3)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UAE국적 파트너와 합작회사(LLC 등 가능한 형태)를 설립했을 때(단, UAE국적 파트너의 지분율이 51% 이상이어야 함)이다. 이는 외국기업의 UAE 정부조달 시장 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란은 100만 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 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 이전에 적

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의 일종)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부처별로 조달 기능이 있어 개별, 독립적인 조달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WTO GPA 서명국이나 국방부의 조달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절충교역(offset) 계약체결의 반대급부로서 현지조달, 기술이전, 투자, 구상무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WTO 가입 교섭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이 인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경우, 계약금액의 35%(GPA 서명국일 경우 20%)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로서 거래금액이 5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방산 물자는 계약금액의 50%, 비방산물자는 35%(GPA 서명국일 경우 28%)에 상당하는 절충교역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경제부 산하 산업협력청(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국제협력계약을 통하여 이행되며, 동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이스라엘의 정부조달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이스라엘 산업에 대한 투자,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개발·공동생산,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하청 또는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구매 방식으로 상쇄(offset)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조달 입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타르 정부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최종 수요자이며 정부 조달 계약은 「Law No. 26(2005)」에 따른 입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방부, 경찰 및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자체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다. 정부

의 표준조달 입찰절차는 2개 방식으로 구분되며, 1백만리얄(274,725달러) 이상의 조달은 재정부 산하의 중앙입찰위원회(CTC)에서 관장하며, 그 이하의 소규모 조달은 현지 업체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며 각 부서의 부내 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장관은 CTC의 Recommendation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만일 입찰규모가 50백만 리얄(13.7백만 달러)을 초과하는 계약은 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CTC의 관장하에 있지 않은 국방부는 방산물품 구매를 관장하고, 카타르 석유공사(QP)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2015.11.24. 일 공고(공고 후 6개월 후 발효)된 입찰에 관한 규정 Law No.24(2015)는 총리가 각 정부부처 소속의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재조달과 관련, 현지 법령 「1987 Law No.6」(정부 조달 시 National Products와 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우선권을 주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National Products)에 대하여 가격측면에서 유사 외국제품 대비 10%의 우선권을 주며, GCC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GCC Products of National Origin)에 대하여는 5%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자국 및 GCC 국가 생산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중앙입찰위원회(CTC; Central Tenders Committee)라는 특별한 기관을 통해 정부부처 및 국영기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용역을 조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KD 5,000(약 16,500달러 상당, 1KD=3.3달러 기준))을 상회하는 모든 입찰 건은 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CTC에서 관장하고 있다(국방부, 보안대를 포함한 내무부 등은 CTC관할에서 제외됨). 낙찰방법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회사는 입찰 참여를 위해 반드시 쿠웨이트인 국적의 에이전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 쿠웨이트는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150억 달러 규모의 기존 정유공장 개선사업(Clean Fuel Project) 및 150억 달러 규모의 노스 알주르 4차 정유공장(New Refinery Project) 신설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등 Oil & Gas 플랜트 프로젝트, 민자담수 발전사업, GCC연결철도, 메트로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계약금액

중 역외부문(offshore portion)의 최대 35%까지 쿠웨이트에 재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4.6월 부터 운영이 중지되었으며, 2015년 8월 24일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1212 of 2015에 따라 오프셋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이집트에는 정부조달을 위한 별도 입찰전담기관이 없고 각 정부부서 및 기관별로 필요시 입찰을 공개 공시하여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은 117개사(제조업 총생산의 70~80%)로서 동 국영기업에서 대부분의 산업용 기계류와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입찰을 통한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게차, 의료기기 입찰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산 제품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사례가 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의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평상시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입찰정보는 Al Ahram 및 Al Gomhuria 등 주로 일간신문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 구축한 현지 회사의 주요 인사(구매담당자)를 통해 입수하기도 한다. 한편 국방부 입찰시 주의할 점은 품질 요구 수준이나 가격협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입찰 추진 절차는 병기국으로부터 의향서를 접수→주 이집트 한국대사관 무관부 경유 제안서 제출→1차 기술 평가(3~4개월 소요)→입찰 초청서 접수 후 개별 협상(통상 10회 이상 개별 가격 협상, 조건 합의)→입찰 참가→낙찰 후 가격 재협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역관 및 무관부와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개관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TBT 개관

무역상 기술장벽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관련 제도는 과거 각국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때 주로 자국 상품 및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제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후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표준 및 관련제도의 차이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상 기술장벽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

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TBT 협정은 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과 관련하여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 원칙, 국제표준을 (예외적인 상황 외에) 기초로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술장벽은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해서는 GATT 1947체제에서 이미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이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GATT 제Ⅲ.4조 및 제XI.2항 그리고 제XX조(d)호 등에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도쿄라운드(Tokyo Round, 1973~1979년)에서 32개국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인 이른바 ‘표준규약(Standards Code, 정식명칭은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채택된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3년)에서는 도쿄라운드에서의 표준규약의 규정들이 구체화되고 강화된³⁹⁾ 새로운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39_ 표준규약과 TBT협정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첫째,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둘째 도쿄라운드 표준규약에서 기술규제의 주요요소인 기술규정이나 표준은 품질, 성능, 안전 또는 규격 등 제품의 특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WTO TBT협정에서는 제품의 특성은 물론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이나 제조방법 또한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고, 셋째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 가능하고 강력한 이행의 확보가 어려웠던 표준규약과는 달리 TBT협정은 WTO분쟁해결절차로 일원화되고 강력한 이행확보가 담보된다는 점이다(국제경제법학회(2013), 『新국제경제법』, 박영사, pp. 249-250 참조).

TBT협정의 적용대상인 TBT 조치들은 식품포장에서 자동차안전에 이르기까지 실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품목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건강과 관련한 의약품규제 또는 담배의 상품표시 부착 의무 및 식료품의 표시부착 요건과 영양성분 관련사항, 품질 및 포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생산과정, 유통, 소비자 사용 및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TBT의 일반적인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각각 구분되는데, 기술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장벽은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투명성이 결여된 규제와 절차, 기술규정의 부재 등이 있다. 표준의 경우에는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택에 의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국간 기술규정, 표준 또는 시험, 인증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지연, 관련비용 과다, 불투명한 절차 등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품표시부착(labeling)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상이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표시요건 등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TBT조치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주장되나 실제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TBT조치와 관련한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PS 개관

기술장벽과 함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알려진 SPS조치의 경우 과거에는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국내 정책들은 온전히 국가의 주권 사항이었으나 무역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 판단이 국제

무역규범의 규율 하에 놓이게 되면서 ‘무역자유화’와 ‘생명 및 건강의 보호’라는 가치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GATT 체제에서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각국의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수입규제조치는 GATT 제 XX조 (b)에 의해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해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마련되어 검역주권을 이유로 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PS) measures)에 대해 주로 SPS협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SPS협정의 적용대상인 SPS조치는 ‘식품에서 기인하는(food-borne)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과 ‘질병(disease) 또는 병충해(pests)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⁴⁰ SPS협정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여 SPS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5.7조의 요건과 합치하는 잠정조치 제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 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과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PS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SPS조치의 예로 식품의 미생물학적 오염, 살충제 허용수준, 수의약품 잔류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또는 허용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또한, 식품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

40_ SPS 부속서 A 1항

*아래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 가.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다.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 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 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관되어 있는 포장 및 표시요건들도 SPS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TBT조치이면서 동시에 SPS조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는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SPS협정이 적용된다.⁴¹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오염과 각종 질병 및 병충해의 진화로 인해 각국의 SPS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높아지는 한편 수출국입장에서는 이러한 SPS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인식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도 SPS조치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분석

기술장벽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데 있어 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②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995~2015년까지 WTO에 통보된 통보문은 총 25,391건으로 이중 미국이 2,4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브라질이 1,331건, EU가 1,253건, 중국이 1,242건, 이스라엘이 99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765건의 통보문을 제출하였다.⁴² 특히 에콰도르는 2014년도 기준 420건의 가장 높은 TBT 통보문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술규제 관련 WTO에 제출된 통보문은 잠재적인 무역상 기술장벽으로서 관련 동향의 파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이 파악되었다.⁴³ 첫째, TBT가

41_ TBT 협정 제1.5조

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부속서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2_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TBT/36,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43_ 이하의 특징은 장용준 외(20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을 경험하였던 1997년, 2003년, 2009년, 2012년의 경우 모두 전년대비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각국의 기술규제 도입 배경에 세계 경기침체가 어떠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5년 WTO 출범 직후에는 네덜란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통보건수 비중이 컸으나 최근 들어 중국, 브라질, 우간다, 케냐,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통보문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3.4%에서 2014년 80%로 크게 증가하였다.⁴⁴ 셋째,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높다. 즉, 전기기계, 고무/화학, 일반기계에서의 통보건수가 다른 산업에서보다 많다. 이는 이들 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격화 및 표준화 작업이 보다 활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연도별 TBT 통보 및 특정무역현안 건수 추이

연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통보문수	632	902	1233	1540	1900	1874	1774	2197	2142	2239	1989	18,422
STC수	17	24	46	58	74	61	75	94	73	85	86	693

자료: WTO, 2015,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TBT/36,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증 및 적합성평가 과정에 있어서 관련인력의 부족

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인용하였으며 2011년 통계를 업데이트 하였다.

44_ WTO 회원국들의 WTO TBT 협정상 의무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통보문의 제출은 기본적으로 기술규제 및 그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TBT 관련 통보문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투명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통보문들이 그 내용면에서 기술규제의 신규도입 또는 기존규제의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무역상 기술장벽의 강화로 볼 수 있다.

으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의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이다. 또한,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겪는 기술장벽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편, 상품표시부착과 관련하여 자국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증제도의 이원화 및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중복검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요건,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와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 과도한 기술요건,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표준의 적용과 같은 문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시 흔히 직면하는 기술장벽이다. 또한,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장벽은 특정한 품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어,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 기술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기술 규정	차별적 기준 적용	- 조달비율의 계산에 국내외 업체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간 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 동일 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해 일부 지방에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조치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제품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도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기간
임 의 표 준		- 민간표준화기구 및 단체에 의해 설정된 자발적인 임의표준과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적합성 평가	중복검사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의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과다비용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성에 따른 판정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상품표시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조달비율의 표시를 요구하여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 자국어로 표기 의무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특히 2013년 5월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⁴⁵⁾에 대하여 미국, EU, 스위스, 일본 및 중국 등은 지난 2011년부터 WTO TBT 위원회에 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총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지난 2008년 이후 자국 내 기존 화학물질 등록 제도를 제·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제·개정하여 산업계에 위해성평가 정보생산 및 제출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위해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매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및 화학물질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화평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화평법」의 적용범위는 EU REACH 규정⁴⁶⁾, 일본 「화심법」⁴⁷⁾과 중국 SEPA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유사하며,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화평법」으로 인해 연구개발(R&D)과 제품개발이 늦어지고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2011년 이후로 3차례에 걸쳐 특정무역현안(STC)⁴⁸⁾을 제기하였다. 특히 고무/화학이 대한국 수출비중의 15%

45_ 국제 화학물질관리제도 강화에 대응하여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심사와 평가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법률 제11789호, 2013.5.22. 제정).

46_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정이다.

47_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2011년도 개정되었다.

이상인 미국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TBT 제 2차 정례회의에서 「화평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2006년 이후 20% 이상을 점하며 제 1의 대한국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 화학공업일보⁴⁹ 등을 통해 「화평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일본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 제 3차 WTO TBT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화평법」에 관한 안전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⁵⁰ 이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들이 한국의 「화평법」 규제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여 경제산업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산업계의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발효 1년을 맞이한 한중 FTA TBT 협정문에는 TBT 애로완화 방안, 제품안전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진출 협력 등이 반영된 15개 조항(article)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기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경우 TBT는 11개 조항, SPS는 12개 조항으로 상호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반해 한중 FTA에서는 업계의 TBT 애로해결 방안이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협정문에 반영되었으며,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장 포괄적인 협정문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시험·인증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저위험 전기용품 분야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수용을 촉진하고자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2016.2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포함된 TBT 협정문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 총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범위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와 달리 중앙정부기관 및 산하 직속 기관들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준비, 채택 및 적용으로 되어 있다. TPP TBT 협정은 대부분 WTO TBT 협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48_ TBT 통보문, G/TBT/N/KOR/305

49_ 일본의 화학공업일보('13.10.7일자)는 최근 사설에서 "화평법은 유럽의 비슷한 제도인 'REACH'와 달리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을 요구하며, 이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http://www.kagakukogyonippo.com/headline/2013/10/07-13100.html>, '13.11.29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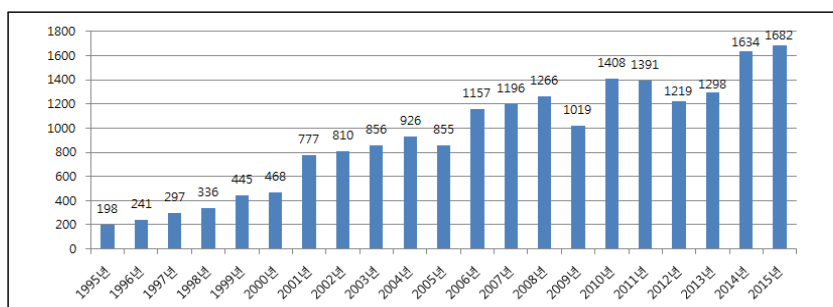
50_ 일본의 화학공업일보('13.10.1일자), <http://www.kagakukogyonippo.com/headline/2013/10/01-13042.html>, '13.11.29 접속)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고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원활한 시장접근을 위한 WTO플러스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주도아래 타결된 협정인 만큼 TPP 협정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TPP 협정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TPP 발효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질서의 기초가 될 TPP 협정상 무역규범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롭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자간 FTA에서의 규범 분야도 기존 TPP 협정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TPP 협정을 토대로 향후 Mega FTA 협상전략을 구축하고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생검역의 보편적 유형 및 주요 관련품목

WTO회원국은 SPS협정에 따라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95~2015년까지 통보문은 총 19,481건으로 2006년 이후에는 매년 1,000건 이상의 통보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1,682건의 통보문이 접수되어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연도별 SPS 통보 건수 추이



자료: WTO SPS 홈페이지.

<http://spsims.wto.org/web/pages/search/notification/Search.aspx>

(검색일: 2016.01.19.).

SPS 통보문은 목적별로 식품안전(food safety), 동물건강(animal health), 식물보호(plant protection), 국민보호(human protection), 국토보호(protect territory from other damage from pests) 등 다섯 가지로 구별되는데, 2013.9~2014.9년 동안의 SPS 조치 통보문을 규제목적별로 살펴보면 일반통보문은 ‘국민보호’와 ‘식품안전’이 각각 40%와 39%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긴급통보문의 경우에는 ‘동물건강’이 37%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⁵¹ 이는 소해면상뇌증,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긴급 수입금지조치가 발동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⁵²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관련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도 광범위하다. 기술장벽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기술장벽이 과다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준의 적용, 상품표시부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기술장벽 형태는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 불투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생검역의 경우 수입국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의 도입, 차별적인 보호조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지나친 위생검역 조치의 도입이나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 소요 등이 문제된다.

품목별로는 기술장벽의 경우 음료 및 가공식품,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수송장비, 소비재공산품 등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품목에 분산되어 있으며 위생검역의 경우 주로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의 식품 비중이 높다. 기술장벽의 경우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수송장비, 전자 및 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소비재공산품, 전기 및 가전제품 등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별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절차 등의 제도와 함께 우리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주요 무역상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51_ G/SPS/GEN/804/Rev.8.

52_ 신성균(2009) p. 256.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표준에 있어서도 WTO TBT 협정의 요건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흔히 있어서 우리 제품의 미국시장접근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표준 및 인증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기술장벽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⁵³ 획득 의무 및 현지 업체에 의한 시공 등을 제약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정부는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ling Act)」(1992년 10월)에 근거하여 ①미국·캐나다 부품 사용비율, ②미국·캐나다 이외에 15% 이상 부품을 조달한 국가와 조달비율(최대 2개국), ③ 최종 조립국가, 주, 도시, ④엔진 원산지, ⑤변속기 원산지 등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연비관련 라벨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환경청(EPA)은 2013년 모델 차량부터는 평균연비(도시 및 고속도로 연비 병행 표기), 연간유류비용, 동일차종의 평균 유류소비량 대비 절감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스모그 영향 정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능력, 충전시간 연비, 전력소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⁵⁴ 안전관련 라벨의 경우 2007년 9월 이후 생산되는 승용차부터 충돌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

53_ UL마크는 미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중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부여 받는(참고로 소형 냉장고의 경우 6,000~10,000 달러의 비용 소요).

54_ 상세 내용: www.epa.gov/fueleconomy

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운전석 및 조수석) 및 측면(앞좌석 및 뒷좌석)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전반적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된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셋째,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이 있다. 2008년 도입된 CPSIA는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각 주들도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TBT 협정문의 범위에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국은 2011년 1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이 비준된 이후, FSMA 이행을 위하여 제안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 관리,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관리,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의 승인, 농산물 안전 기준,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및 고의적 불순물 첨가 완화전략 최종 규칙 등 7가지 하위규칙을 2016년 5월 최종 마무리하였다. 특히 해외공급자검증제도(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는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업체와 연계하여 수입식품이 FDA의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임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질병대응을 위한 FDA 기존체계와는 달리 수입업체가 해외공급자의 식품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제도로 식품의 오염예방조치 및 감독, 개선 방안수립 등을 요구한다.

미 FDA는 FSMA에 따라 미국의 식품안전체계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까지 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FSMA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對)미 식품수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은 미국 수출시 FDA 규정에 따른 생산 및 수출 규정 준수를 위하여 FSMA 이행을 위한 7가지 최종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는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 중 캐나다 표준협회는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으로서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2015.1.1 발효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국은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등 분야에서 자격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캐나다 내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하여야 한다. 이중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 주는 프

랑스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 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은 상자(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을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2008.7월 식품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했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

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식품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라면, 과자류, 포장 김치 등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icial Mexicana)는 대부분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 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 총 23개이며, 금번 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NOM규정은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그러나 2009.10월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와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정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KTL의 시험성적서만으로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한편, 1998.10월 신발류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은 고정·부착식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2011.9월 부터는 186개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단위시간당 소비전력과 필요한 경

우 대기전력을 표시하는 라벨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불이행 또는 라벨링 표시의무 위반 시 매장에서 관련 제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과테말라에서는 일부 수입업체들에게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나 미국, 유럽 등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수입유통 허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며 다만 자사 고객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시험 및 등록되어야 하며 ①제품명, ②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③등록번호 ④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④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⁵⁵이며 표준규격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에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⁵⁷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니카라과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에서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또한,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만료 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55_ Comision Guatemalca de Normas

56_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ón Comercial

57_ Certificado de Libre Venta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 되면 산업통상부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건부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페인어로 상표 표시되고, 의약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한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스페인어로 상품표시한 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998.5월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2월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리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éc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 12)」에 의해 300여 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

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할 경우 통관시점에서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세관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외국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볼리비아의 표준, 검사 기관으로는 볼리비아 계량원(IBMETRO)과 품질 표준원(IBNORCA)이 있다. 석유·가스 저장을 위한 금속용기 및 장비, 에어컨, 냉장고, 소화기 등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품질인증기관의 검사서 등을 IMBETRO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류는 IBNORCA에 원산지증명서, 품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된 수입식품류, 주류 등에는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 원산지, 제조사 주소를 스페인어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수입자 및 배포사와 동사의 주소, 납세자등록번호, 수입식품 등록(SENASAG)번호가 기재된 별도 라벨도 붙여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표준화 담당기관은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표준 및 규격을 비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규격과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규격과 안전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은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로서, 표준/규격의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검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라벨링에는 원산지, 수량, 질, 혼합물(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1993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ey 24240)」에 근거하여 섬유, 가전제품에 대해 라벨링, 품질 및 안전보증서 등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자국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MERCOSUR 회원국들의 표준 담당 기관

들로 구성된 MERCOSUR 표준협회 AMN에서는 회원국간 표준 및 관련 규제의 조화 및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기술표준원(INE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4.1월부터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에콰도르 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 그리고 위생감시통제규제국(ARCSA: Agencia Nacional de Regulacion, Control y Vigilancia Sanitaria)이 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 이외에도 식품, 화장품 또한 관리하며 감시나 위생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품질보장 업무를 수행한다. 의약품의 경우 에콰도르 수입이 더욱 까다로우나, 2014.3월 에콰도르 보건부는 한국의약품에 대해 자동승인제도(Homologacion)를 부여하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의약품의 대에콰도르 수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교통안전국(ANT)은 수입되는 자동차 및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해 최소안전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2014.10월 발표하였고, 2015.9월 수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수입 및 생산되는 자동차는 이전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입가 상승, 생산설비 증대 등 원가상승 압력으로 자동차 업체는 당분간 고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살바도르의 관련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되고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명,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유통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스페인어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 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 세동맹(CACU)회원 국가 간에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 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우루과이의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해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칠레의 경우 전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전기연료감독원(SEC)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외하고는 이외 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준은 없다. 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대부분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해 최소 취득 후에도 매년 갱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라벨링의 경우 일반 소비자용 수입품에는 원산지를 명기해야 하며 포장물품에는 품질, 순도, 성분, 정량 및 규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캔 또는 포장음식물은 스페인어 라벨로 첨

가물 등 주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명 등을 명기하고 크기, 중량 등은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인증의 경우 전기제품, 난방제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은 전기연료감독원(SEC), 식약청(ISP) 등 관련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외의 제품은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기준이 없다. 그러나 SEC의 전기안전인증 및 판매처분 검사 인증은 우리나라 인증취득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업자들은 유럽 CE 등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호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휴대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을 수입시 전력통신공사,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2013.5월 기준 코스타리카에는 중미 기술규정(RTCA)을 포함하여 184개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이며, 해당 기술규정은 내외국인 차별 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의 FDA, FCC 및 유럽 공동체 CE 인증이 있는 경우 사전 허가 및 등록이 수월하며 판매 시 광고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SPS협정을 준수하는 국가로 위생 및 식물위생 관리는 「식물위생관리법(법령 7664)」, 「동물보건일반법(법령 8495)」, 「보건법(법령 5395)」에 의해 관리된다. 식품수입의 경우 선적 시마다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 보건부 식품위생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일부수출품(커피,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은 공공위생 목적으로 인해 수출 전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령」 제 7472조에 따라 통조림류, 식품, 일부 공산품에 대해 수입자가 제품의 성분, 중량 등에 대해 스페인어로 라벨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상공부에서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 표준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여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Conformity)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의 수입만을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상품규격과의 마찰은 없다. 동식물검역, 건강문제,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 등과 관련해서는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한편, 콜롬비아는 유희토지 활용, 고용창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정 및 기술을 개발하였다. 2011.12월에 발효된 시행령 4892(decreto 4892)에 의해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에탄올 연료를 8~10%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013.1월부터는 광물에너지부에서 고시하는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는 2015년 1/4분기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사탕수수재배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바이오에탄올 공급량 급감에 따라 2015.4월 발표한 시행규칙 40521(resolucion 40521)을 통해 한시적으로 혼합 준수 의무를 면제하였다.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링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시하면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식품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①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②화화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③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등은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Normalización y Metrología)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및 기술표준, 도량형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루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할기관은 INDECOPI 및 정부 각 부처 등이다. INDECOPI에서는 석유 및 관련 제품, 폭발물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품질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유통을 위한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타 안전·위험 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의 문양, 색상, 규격, 위치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여타 품목의 경우는 모든 규격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자유로운 편이며 대체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규격(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규격)이 자연스럽게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4.2월 INDECOPI 산하 ICONTEC 연구소는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2000년 ISO 9001 인증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allao 항구와 Jorge Chavez 국제공항 또한 상기 인증서에 준하는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DECOPI는 이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 및 승인하고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 1030)」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페루의 생산부 산하 시험 및 인증 관리기관은 4개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따라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ógico de la Producción)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석유화학제품, 화장품, 의약품 포함),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섬유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을 수입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EU의 규제관행,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으며, 때로는 교역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어 관련 E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EU에 타이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기준상의 내구성 및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E마크)와 인증번호를 타이어에 몰딩 방식으로 각인해야 하는데, 관련 요건이 강화·변경될 때마다 인증번호 몰딩을 새로 제작해야 해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인증번호의 서면 제출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양측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EU의 완전 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각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이때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 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며,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규범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의 조화가 필요한 경우 최소 18-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Export Helpdesk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 한 지표나 목표만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차는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실제 자동차의 경우 CARS 21⁵⁸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하여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중 32개에 대해서는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실시되어 2013년도에는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며,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냉장장치, 의료기기 등이 공급자적합성 선언의 대상이 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독립 인증기관의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199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확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 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 사고에 따라 EU는 2000년에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서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58_ 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로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Food Safety)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는 각종 식품위생법류를 보다 투명화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하고,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table)”라는 구호아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백서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는 EU 차원의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EU Regulation 178/2002」)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식품위생 법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전문기관인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설립과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인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정보시스템(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하였다.

이밖에도 EU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표기(labeling)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 성분과 내용의 종합적인 표시 기준에 관한 기본법령인 EU 지침「Directive 2000/13」과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라벨링 지침「Directive 90/496」을 통합하여 간소화는 동시에 기존의 내용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Regulation 1169/2011」)하였다. 상기 새롭게 시행될 규정에 의하면 가공식품 포장에 지방, 포화지방 등 6개 성분의 함유량과 열량을 포장 위에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까지 확대되고, 최소 글자크기를 의무화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돼지, 양, 염소, 조류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규정은 2014~16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산물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EU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

당국(competent authority)이 EU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 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2013.9월 기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한편,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그리고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2010.1.1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로 수입되는 수산물에는 위생증명서와 함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도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2013.1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차 : 2013.7.30.개정, 2차: 2015.1.6.개정, 2015.7.7. 시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3.20)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2014.3.28.),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3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 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개선조치 결과, EU는 2015.4월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EU와 IUU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등 양자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네덜란드도 역시 EU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EU 통일 인증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KEMA- KEUR’라는 인증으로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며,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9월말 기준 다목적 세제,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 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2010.7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동 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를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1,600개의 유기농 농장과 1,700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했다.

노르웨이는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 준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물질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독일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인 VDE 및 GS 표시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독일로 식품 또는 건강 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와 접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 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적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적인 인증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GOST-R 적합성 선언이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그 제품이 러시아 안전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이다. GOST-R 인증서뿐만 아니라, 적합성선언서 역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러시아 세관 통관시 요구된다.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장난

감 등의 생활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비 등은 강제적으로 GOST-R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제품 인증이 없는 경우 러시아내로의 통관이 불가하고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3국 관세동맹 간의 공통 인증제도인 CU(Custom Union)인증이 도입되고 있다. CU 인증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공통인증제도로써 CU인증을 발급받으면 3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이다. 이는 2013.2월부터 도입되었으며 2015.3월부터 기존 인증(GOST-R, 기술규제)을 일률적으로 대체키로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대한 종전의 기술규정(총 35개)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 내용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GOST-R의 효력이 인정되며, 동 법령의 만료일 이후에는 CU인증만이 인정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기술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GOST-R이 계속 유효하다. 2016.6월 말 기준 러시아 포함 유라시아 연합지역에서는 34개 기술규제가 시행중이다. 대상 제품군은 철도 차량, 고속 철도 차량, 철도 수송 인프라, 저전압 장비류, 포장 제품류, 불꽃 제품류, 아동용품,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류, 기계 및 장비류, 엘리베이터, 폭발위험사태 사용 장비류, 가솔린과 연료(자동차, 항공, 디젤 엔진, 선박용 등), 도로, 곡물, 가스 연료용 장치류, 경공업 제품류, 차량차량, 전자기 적합성, 식품류, 과즙과 채소주스, 유지가공식품류, 가구류, 소형 보트, 치료식품 포함 특수 식품류, 폭발물, 식품 첨가물, 조미료, 식품 가공 보조제, 윤활제, 농업 및 임업 트랙터 및 트레일러, 고압 장비류, 우유 및 유제품류, 육류 및 육류 제품류, 담배 제품류 등이다.

벨라루스는 ‘기술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0,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 받아도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유되는 반면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

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3국간 공유에 일부 예외가 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21개의 관세동맹 기술규칙을 채택하였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는 2015년 기준으로 13개의 기술규칙이 추가로 발효되었다.

스위스는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시험과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가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 인증마크 관련지침 가운데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2002.6월에 발효된 스위스-EU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스위스 전자전기 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SEV 인증이 있다. 이 규격은 CE마크의 규격과 매우 유사하다.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은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의 승인을 받은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200일이며, 널리 알려진 성분으로 제조된 의약품의 경우 간소화된 허가절차가 적용되기도 한다.

위생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 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 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

품질검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또한,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물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해서는 GMO 성분이 1%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EU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또한 스페인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자율적인 라벨인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되어온 에코라벨은 현재 29개 품목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슬로바키아는 특정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전 품목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n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인 KITE 마크 제도가 있다. KITE 마크 제도는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 되었으며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상 품목으로는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로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1993년 이후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이 있으며 이는 자율적 라벨로 2016.6월 기준 30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하며,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에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공산품 수입시에 규격인증, 안전증명 등이 필요하며 식품 수입시에도 안전 검사 등이 필요하다. 공산품 규격 인증 및 식품 안전 확인 등은 Th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of Uzbekistan(UZ Standard Agency)에서 시행하며 특별히 인위적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준인증과 관련

하여 2011.5월부터 Uzstandard Agency에 납부하던 표준인증마크 사용료 납부방법을 판매수량 기준에서 인증시 한 번의 수수료 납부방식으로 바꾸었으며, 기술력 제고를 위한 장비나 부품 수입시에는 한국을 비롯한 50개국의 외국의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03.1월부터 소비재 상품의 경우 우즈베크어 라벨링이 의무화되었다.

체코의 상표 및 제품 설명서 부착요건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체코어로 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업체명, 원산지국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식품 첨가물 및 직물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비율에 대해서도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바이오테크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 라벨링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체코내 부가가치가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Czech Made' 마크 부착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을 준비해 오고 있다. 그리고 CIS 지역 국가와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동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내에서 인증을 대체 받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인증 선언에 의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품목을 확인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연구소에서는 인증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몇몇 품목에 있어서는 (의약품 등)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이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라벨링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 표기하도록 하고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모든 성분 검사서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OG 20/10))」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 적격 인정서(conformity certificate), 검토 보고서(review reports), 품질 적격 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있다. 크로아티아는 기술표준 및 품질 적격 평가에 있어 EU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28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 16개 품목에는 예전 방식(ol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라벨에는 생산자명,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 순수량/무게/부피, 성분, 보관 방법,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인증의 경우 2007년 이후부터 CE인증으로 크로아티아 인증인 C 마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CE인증은 자동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인정되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 Magnetical Compatibility) 및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인증은 ZAVOD ZA ISPITIVANJE KYALITETE ROBE d.d.에서 받을 수 있다.

터키의 경우 수출입품의 품질검사는 「외국무역을 위한 기술규정과 표준화 체제에 대한 공표(Ministerial Decree on the Regime of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foreign Trade)」와 그 부속 법령에 따르는데,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

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터키의 경우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 EU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CE) 위주로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 뿐만 아니라 터키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터키표준인증을 수출 전에 미리 획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현지 벤더가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의 경우 갑작스럽게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Red Line⁵⁹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위생 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 식품들, 음식물과 접촉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보건부와 농림부 산하 안전 검사청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표준인증은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에서 총괄 담당하나, 산업별 구체적 인증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

59_ 터키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Red Line이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벨 부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의 상표 표기의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의 전기 안전과 관련된 규제 전략 및 정책 등에 관한 전체적인 조율은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정 유형으로 지정된 전기용품은 판매 전에 승인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지정 품목 목록에 없는 전기용품은 승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호주의 각 주 정부가 명시한 최소한 안전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한 주정부에서 승인한 제품은 다른 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호주 표준규격은 ISO(국제 표준화 기구)나 IEC(국제 전기 표준 회의) 등에서 정한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술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중개상, 장비 운영자들에게 명시된 강제 표준에의 부합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각 라벨링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 「Motor Vehicle Standards Act 1989」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법에서는 차량 안전 및 배기 요건과 관련한 국가 표준인 ADR(Australia Design Rules)을 따라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 소비자 제품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인 「Trade Practices Act 1974(TPA)」가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 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인증취득 필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표준협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전기전자 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 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는 전기통신, 무선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2월 말부터 폐지되었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S/NZS 4417 전기 안전성(Electricity Safety)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반해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입상품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1.4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 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 CCC 인증마

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 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자동차, 전기제품,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 질 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21 종류 152개 품목에 달한다.

중국의 주요 품목별 기술장벽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가전제품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7월부터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총 62종(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전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둘째, 합판에 대해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한 제품에 최대 두 가지 효능 신청 가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 보건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보건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국내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 규정인 「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중국어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상표, 수입식품의 제조자 및 주소, 해외판매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은 제외한다.

한편, 중국은 2005.4월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 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於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籤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 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籤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2005.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籤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食品標籤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12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於對進口食品標籤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 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 및 화장품 라벨심사판공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해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여섯째,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제조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중국 수입약품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C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CFDA는 국내 유사한 종류 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국가의 공정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일곱째,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공인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CFDA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획득하여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5월부터 식품 중 농약 등 잔류기준 적용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PLS)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16.10월 현재 784품목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잔류농약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

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잔류허용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PLS). 그리고 일본의 식품검역당국은 수입검사 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조치 등 검역처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72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nazole 등 48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일본은 2016.10월 현재까지 총 43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10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다.

싱가포르의 SPRING Singapore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45개 품목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육류 및 조류는 수출국에서 나고 자라야 하며 수출국의 검사를 필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HKCTC: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석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품, 음식, 건축자재, 귀금속, IT기술, 환경보호)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 중이다. 2012.5월에는 환경보호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널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이제는 홍콩에서 생산 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한 홍콩-중국테스트 기관 공동검사를 허가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 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3년에 8,339건의 임의추출조사를 진행하였고 1,147건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부 연구소는 관세/물품세국이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하는 데에 조언을 제공한다. 2013년에 정부연구소는 총 33,855차례의 물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해 국제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지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은 1963년 이후 현재까지 약 6,000여 개 이상의 표준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약 38%에 해당하는 베트남 국내 규격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따라서 ISO, IEC, ASTM, JIS, BSI 등 대표적인 국제표준은 별도의 베트남 국내 표준 규격 인증 절차 없이 베트남에서 국내 규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TCVN(베트남 표준규격)의 근거 법령은 「Law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effected since 1/1/2007)」이며, 규격을 임의대상 및 강제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준 규격의 경우는 임의 대상이지만,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베트남 기술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베트남은 현재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제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훨씬 까다롭거나 혹은 표준 규격과 기술 규정 대상으로 중복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의료장비, 화학제품, 야생 동물, 살충제, 비료, 화장품 등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경우 품질 검사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 및 기술 규정을 무역 거래 전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준에 맞게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 및 기술 규정 정보는 베트남 수입업자 또는 거래선을 통해 제공 받거나, 베트남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임의대상과 인증 절차 등 자세한 관련 정보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 <http://www.tcvn.vn>)에서 확인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이라는 정부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 바,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나 ①오토바이 안전 헬멧, ②안전벨트, ③전기제품, ④가스기구, ⑤화재안전물품, ⑥시멘트, 세라믹 타일 등, ⑦통신장비, ⑧차세대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 관련 인증 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모든 육류, 가공육류제품,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 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로부터 Halal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에서 관장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 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14.4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이 SNI 리스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4.3월 이미 한차례 94개 품목을 강제 인증 리스트에 추가한바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수출·입 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Regulation of Minister of Agriculture No. 04/2015 Regarding Food Safety Control 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Fresh Food of Plant Origin)」을 개정하여 자국민의 식품안전성제고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을 등록하지 못한 국가는 2016.2월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9월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과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 등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등 한국 농산물의 대인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니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니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2014.9월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이 개정되어 현재 축산물에 한해 적용되던 할랄 인증 의무화가 2019

년부터는 전체 식품류로 확대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비할랄 식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인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태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5개 분야 100개 품목(2015.10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고관해제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을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능 요건, 마킹/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으며,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다. 식품 및 의약품의 수입 시 식품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며,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2013.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 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고, 2013.9월에는「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9월부터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인도는 지정한 90개 수입품목에 대해 인도품질표준(Indian Quality Standard)을 의무적(Mandatory Certification)으로 따르도록 하고 있

으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청(Bureau of Indian Stand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제조업자와 수출업체가 제조설비를 사전에 인도표준청의 검사/승인을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련 규정이 국내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95」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규제는 안전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국가표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캄보디아는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캄보디아 수출입검사부(CAMCONTROL)에서 품질 및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검사부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검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무역업체는 불투명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 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2010.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표준이 명확치 않으며 농산물에 대한 검사시설이 낙후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가 어렵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05.4월에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규제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뜻하는 'Halal Food'라는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내 기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시 확인이 필요하다.

키르기스스탄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은 러시아어 또는 키르기스어로 라벨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개어(러시아어 및 키르기스어)로 함께 라벨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란의 이란표준산업규격연구소(ISRI: 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결정하는 이란 내 유일한 기관으로 품목별 표준규격을 결정한다. 필수 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송장(Invoice)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 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통관 시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보건부 내의 표준규격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 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중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 거래 방지를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국내 및 외국 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동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2013.12월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유통되는 약 14,820개 상품에 대한 표준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임의표준율은 83.1%, 강제표준율은 16.9%에 달한다. 사우디 상공부는 반입 전에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국제인증제도(ICCP: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동 제도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 절차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동 인증제도는 사우디의 WTO 가입이후 2006년에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COCP: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협의를 거쳐,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인기관인 KOLAS(한국 인정기구)을 통해 사우디 수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 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9월 SASO에 의해 에어컨을 대상으로 하는 'Energy Labelling a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ir Conditioners'라는 신규 에너지 소비효율(EER) 라벨링 규정안

(SASO 2663/2012)이 발효되었다. 2014.1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운송부문에 최근 외국 자동차제조사와 MOU를 체결하여 매년 연비를 4%씩 개선하여 2025년까지 리터당 19km까지 향상시킬 계획을 추진하였다.

쿠웨이트는 미국, 유럽의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제조일자 및 폐기일자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이 있다. 최초 수입되는 식료품의 경우 보건당국 실험실의 사전검사를 요구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쿠웨이트는 표준제도와 관련 모든 수입 제품은 KUCAS(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 및 ICCP(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쿠웨이트는 ①전기장난감(1개), ②가전기기 및 가스기기(43개), ③자동차(3개), ④화학제품(2개), ⑤기타 제품(2개) 등 5개 품목 그룹에 대해 수입통관시 국제적합성인증프로그램(ICCP: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및 전력 기자재는 TER(Technical Evaluation Report), TIR(Technic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하기도 한다.

카타르의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라벨에는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명기하고, 상품명, 상호명, 원산지, 성분표, 첨가물, 동물성지방성분,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제조자,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UAE(UAE)의 인증제도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러 토후국 기관들이 각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연방차원의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2014년부터 UAE 연방 표준측량청인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는 규제 제정 및 제품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포장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화장품 등 신규 규제를 발표하였으며, UAE로 제품을 수출하고자하는 우리기업은 ESMA의 규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아울러 UAE를 포함하여 이슬람국가에서는 식품류에 적용되는 ‘할랄(Halal)’ 인증제도가 있다. 할랄 인증은 전 세계 공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UAE로 육류, 가금류 포함 가공식품을 두바이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입승인을 위한 할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때 증명서는 UAE Ministry of Environmental & Water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할랄인증 관련 공인 이슬람협회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orea Muslim Federation)가 발급하는 인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레인은 다른 GCC 국가들과 함께 걸프국가 표준화 기구(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Organization for GCC countries)에 참여하고 있으며 ISO의 회원국이다. 바레인내 대부분의 표준은 걸프 표준화 및 국제적 표준을 동시에 따르고 있으며, 걸프 표준이 존재하는 한 바레인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바레인 당국이 제정하는 표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만들어지고 있다.

바레인은 GCC 라벨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품목, 브랜드 이름, 제조일자, 유효기간, 생산지, 제조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원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벨링은 아랍어로만 표기하거나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에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 소량의 돼지고기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이를 표기하지 않을 시에는 압수되며 일정기간 수입이 금지된다.

수단은 특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유럽의 CE마크, 또는 미국의 UL마크, FDA마크를 원용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상이하다. 프로젝트 수주 또는 정부 입찰 시에는 ISO획득 여부와 해당 품목별 주요 인증 여부에 대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시리아는 ISO에 가입하고 동 국제 규정을 국내 제도화 하는 등 표준화와 관련한 제도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 17개(정

부 7개, 유관기관 10개)에 이르고 있고 또한 서로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국내산 제품 표준을 따라야 하고 수입 제품은 정부에서 정한 시험 혹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①생산/수출자의 이름, ②내용성분, ③크기와 용량, ④제조일자 및 소멸시효, ⑤원산지 등을 아랍어로 라벨링 해야 하며 의약품에는 1회 복용량도 함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 국민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제품은 사전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과 화장품(피부용)은 보건부 제약국에 사전 등록 및 인증이 요구되며 식품류의 경우 수입 시 전문 연구소에서 샘플검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유무선 전화기와 수신기, 안테나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수입 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0.9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국제인증업체(SGS 또는 Bureau Veritas)로부터 발급받은 적합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적전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 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인증 획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집트는 많은 수입품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4.12월 기준 검사대상은 101개 품목으로 식료품, 부품, 건설용품, 전자기기 및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와의 무역에 있어서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①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한 수입검사제도는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Sample 통관 시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③수입품 검사 시 샘플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세관 당국에서 전량 검사를 실시하여 이로 인한 통관경비 과다 발생, 물품의 도난 및 파손 등

의 장애요인이 있다. 라벨링과 관련하여 식료품, 의약품, 섬유류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의 요구에 따른다. 2006년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상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일자, 수출업자 등을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집트 관세청은 등록된 수입상의 원료, 중간재, 비내구성 소비재, 엔지니어링의 샘플 통관 시 별도 수입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가액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된 샘플이 1년 이내에 재수출 되거나 수입당시 재수출할 것을 서약할 경우 관세가 환급된다. 간단한 휴대 샘플은 통관이 용이하나 별도로 발송하는 것은 4~5일의 통관절차가 소요되고 잘못 배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요르단은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8월에 발효된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검사는 요르단 자체, 국제 표준규정,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요르단 자체 검사기준이 없을 시 라벨링 기준을 적용하며, 요르단 자체 또는 국제 기준이 있을 경우 라벨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없을 경우 수입이 허가된다.

예멘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술적합성 여부는, IFIA 인증 BIVAC 및 Cotecna 사가 예멘 정부와의 계약 하에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을 대행한다. 수입업자들은 대체로 ISO, IEC, ISO/IE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IE 및 예멘 정부의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관련 기준 및 표준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YSMO는 2014.1월 기준 2,474개 수입품(자동차, 섬유, 식품, 음료, 전자기기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가지고 자체품질인증(Yemen Accredita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검역 조치 관련 예멘 내 주요부서는 농업관계부, 보건인구부, YSMO로 농업관계부는 식물 및 동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며, YSMO는 동물 및 식품 관련 기술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다.

오만은 국제 표준화 기구 회원국으로,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걸프지역 표준화 기구(GSO: Gulf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마련

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자국 생산 제품과 수입 상품에 차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식료품이 아닌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인정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의 신고만으로 자동반입이 가능하며,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만은 소수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반드시 아랍어 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육류나 가금류의 라벨에는 아랍어를 포함한 2개국어 표기, 원산지, 유통기한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레바논은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으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 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공중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용 전자제품, 배터리, 완구, 세라믹 대리석, 화장품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다.

르완다 표준청(RSB: Rwanda Standards Board)은 표준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의 적절한 적용을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표준청은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표준청은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70%에 해당하는 286개의 지역 공동체 기준과 조화를 이루었고,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청의 기술위원회(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5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표준 작업에 동참한다. 르완다는 르완다표준청을 통해 10개 이상의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르완다는 표준국의 Instruction No.02/ 2005에 따라 식료품, 물, 주류, 곡물, 커피, 차, 우유 등을 포함하는 67개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청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 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르완다의 위생 및 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6.8월 농축산검역 및 인증 서비스(RALIS)⁶⁰를 개시하여, 농업분야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온라인 검역 및 인증 등 규제 관련 서비스 절차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하였다. RALIS 온라인 포털은 이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상호 연계된 두 개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물 수출입 업자 등 RALIS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포털을 통해 SPS 요건 및 무역 규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검역/인증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요청된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국제청(RRA)과도 동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이스라엘은 매우 엄격한 표시제도(라벨링, 마킹, 포장 등)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수입업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Law)」은 모든 소비재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명, 원산국, 생산자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ID number, 주소, 제품의 중량, 상표(있을 경우) 그리고 원료 등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라벨은 히브리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영어로 추가 표기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히브리어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물품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표시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품이나 원료가 유전적으로 변형될 경우 적극적인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수입품을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표준원(SII: 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의 검사가 필수적인데,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는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최근에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 가입하였다.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Law of 1953)」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모두 임의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60_ <http://ralis.minagri.gov.rw>

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260여개의 표준을 공포하였는데 이중 550여개는 공식표준이며 200개가 강제표준이다. 2007년부터 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였으며, 전체 표준의 60%, 공식표준의 90%가 국제표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에서의 마킹은 제품에 직접 또는 제품의 포장 위에 인쇄(printing), 각인(engraving), 날인(stamping)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벨을 제품에 직접 또는 제품의 포장 위에 봉합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마킹은 배경색과 다른 색깔로 하고 읽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해야 하며, 인쇄 염료 또는 기타 마킹 물질이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또한 다중 포장 제품의 경우, 가장 바깥 쪽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하며, 가장 바깥 쪽 포장이 투명하여 그 안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포장에 마킹을 해야 한다. 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하위 포장물(sub-packages)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하위 포장물 개수, 하위 포장물 내용, 전체 포장의 순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통상적인 마케팅 조건에서 무게가 감소하는 제품의 경우, 예상 최대감실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 중 포장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재, 종이제품, 핸드백, 음악 기록, 비료, 살충제, 화학약품, 제약, 일부 음식, 씨앗, 주류에는 특별한 라벨링 규제가 적용된다. 독극물, 살충제, 마약, 화기성 물질, 탄약, 폭발물, 파충류, 곤충,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과 같이 위험한 품목을 담은 용기는 명백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가나에서는 가나기술표준원(Ghana Standards Authority)이 표준의 제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A는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를 GSA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 등

은 식약청(Food and Drugs Authority)이 규제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GHC 1,800, 가나 내 생산품인 경우 GHC 45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또한 1992년 제정된 GSA Labelling 규정에 따라 모든 식약품은 영문으로 제품의 종류, 원산지, 원료, 무게, 용도,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에어컨, 배터리, 램프, 페인트, 사료, 화장품 등도 영문으로 라벨링 되어야 한다. 라벨링이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28일 전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SON: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은 2005년부터 필수 검사 제도의 하나로 품질 표준검사(SONCAP 증명서)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 공산품 및 기계류 제품들은 출발지에서 나이지리아 표준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나이지리아 표준국 해외사무소)으로부터 SONCAP 증명서를 발부 받아 도착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표준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공식 명칭은 Standard Organization of Nigeria(SON)이다. 표준 품질 검사의 대상 품목, 절차 등 주요 정보는 동 기관 홈페이지(<https://son.gov.ng>)에서 얻을 수 있다.

위생검역과 관련 나이지리아는 기준/시험/라벨링 관련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수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물, 약품, 화장품 및 살충제 수입품은 제조업체와 적절한 국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분석확인증(certification of analysis)이 구비되어야 하며 둘째, 특정 동물제품이나 식물, 씨앗, 토양 등은 반드시 적절한 검사 확인증을 수반해야 하고 셋째, 나이지리아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미터법으로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관세와 일관성 없는 수입 및 라벨링 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시한성 제품(perishable products) 수입에 막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처 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빈번한 분쟁 및 통관 가이드라인의 변경은 나이지리아에 입항하는 물류의

지연원인이 되고 있다. 2006.1월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개인사물, 중고자동차, 병아리, 백신, 이스트 등 상하기 쉬운 품목과 잡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도착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농축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주류 등은 위생·검역 규제의 대상으로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의 중량표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한다. GM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한편,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2014.11월 에어컨, TV, 셋톱박스 등 시청각 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및 냉장고, 전기오븐,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필수규격 및 라벨링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동 발표일 이후 품목별로 6개월(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9개월(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18개월(에어컨 등) 순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모로코의 기술표준은 ISO, 유럽안전인증(CE), 프랑스 표준협회(AFNOR) 등 유럽표준, 식품의 경우 Codex 등의 국제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로코 국가 기구로는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IMANOR)와 국립검사청(LPEE)이 자체적인 표준 및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중 모로코 표준화 연구소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준과 규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검사청은 ISP/IEC에 의거하여 제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각각 모로코 통신감독위원회(ANRT) 및 수입관리청(EACCE)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외 종교적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라벨링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원산지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는 라벨

이 반드시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생산 일자와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품목명, 내용물,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국명, 내용물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일, 유효기간, 약품명, 성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외 모로코는 할랄(Halal)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검사 또는 인증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모로코 할랄 인증을 공식발표 하였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Halal 처리되지 않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류 제품의 수입도 허용되고 있다.

세네갈의 포장 및 의무표시 제도는 Codex 기준에 따른 식품포장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신선 과일, 야채 및 식품의 포장에는 품명, 생산일, 유통기한, 성분, 중량, 생산자 정보 등이 프랑스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냥, 담배, 20도 이상의 주류, 설탕, 배터리, 가정용 양초, T셔츠 등 특정 수입품의 경우, 밀수 또는 신고된 용도이외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Vente au Senegal'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알제리의 경우 표준,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하여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가 있다.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검사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제품 인증 제도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제리로 수입되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기술규격 사전인증과 세관 통과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각종 의약품은 수입전에 안전성에 관한 사전 인증제도인 비자(le visa technique)를 획득해야 하여 그 외의 가축용 의약품도 농업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식품류 수입에도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이외에 위험물, 일부 화학제품이나 산업용 가스제품들도 산업부의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중 자동차, 가축, 동식물, 곡식, 씨앗, 식료품, 의료품, 화학제품, 주류, 유제품 등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Bromangol 이라는 사기업이 앙골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안전 검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앙골라 소재 검사 기관(SGS, COTECNA, BIVAC)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역부 발행 수입허가번호를 지정한 검사기관에 접수하고,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번호(일명 PIP)를 수출업자에게 통보해 준다. 수출업자는 이 번호를 가지고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후 검사기관은 검사 상태를 앙골라 소재 검사소에 통보 하게 되며, 앙골라검사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CRF라는 검사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앙골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라벨링 부착이 필수이다.

에티오피아는 1970년 품질표준 관리청(QSAE: The Quality and Standard Authority of Ethiopia)을 설립하여 수입품 안정성 테스트(Testing)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다. 이 QSAE는 모든 국제표준기구인 ISO, OIML, CAC, ARSO, IEC, SAQI의 회원으로서 국제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몇몇 제품(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품질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의약품, 건축자재, 화학약품, 식물 등은 품질인증서가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상품에는 분명하고 서류와 대조 가능하도록 라벨 및 마킹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및 마킹과 관련한 규정은 에티오피아 품질표준 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적도기니의 라벨링과 패키징 필요조건은 적도기니 무역 규정으로부터 삭제되었으나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로 라벨링 할 것을 권장한다. 적도기니는 CEMAC의 회원국으로서 CEMAC의 세관 법에 의거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은 무관세이지만 “Vente en la CEMAC”이라는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카메룬의 품질 표준 및 규제에 대한 사항은 2009년에 설립된 ANOR (Cameroon Standards and Quality Agency)가 관할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에 대한 것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관할하고 있다. 특히 카메룬에 수입되는 통조림 제품의 상표 붙이기와 표시 요건은 제조일자와 만료 일자를 깡통 위쪽에 새겨 넣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미리 라벨을 붙여야 한다. 수입인지와 같은 형태의 이 라벨비용은 담배 선적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수입업자가 미리 지불해야 한다. 카메룬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이라도 전부 그런 사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케냐는 2005.7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시하도록 수출입법을 개정, 적용해 오고 있다. 또한 2016.9월부터 Route A 검사 유형을 거치는 만재화물에 대해 선적 전 수출적합자격검사(PVoC)를 수행한 후 곧바로 수입표준마크(ISM)를 발급받아 봉인해야 한다. 그러나 선적 전 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케냐 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국제표준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케냐 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의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여 통관 시 문제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적용 등 직접적인 수입 규제사례는 없으나, 최근 들어 케냐 표준청(KEBS)에서 일부 저가, 저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제한 조치로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사례로는 ①라면에 대한 별도의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 ②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의 수입통관 시 표준청에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 ③2003년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들의 반발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 등이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표준 제도는 대체적으로 프랑스식 또는 유럽식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통과를 위한 적절한 요건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관련 또는 통신망에 접속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코트디부아르통신규제국(ARTCI: 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TIC de Cote d'Ivoire)에서, 그리고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코트디부아르표준원(CODINORM: Cote d'Ivoire Normalisation에서 형식 승인 또는 안전 기준 등에 관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자체적인 기술 시험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대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시험 결과들을 인정하는 편이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그 동안 2개의 유럽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회사들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모든 검사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었으나 동 계약을 만료하고 새롭게 Webb Fontaine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단일창구(Guichet unique pour le commerce extérieur)를 만들어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공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DR콩고는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 관련 법령이 없으며, 콩고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WTO, ISO) 및 지역기구(COMESA, SADC, ARSO)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 규제 및 상품 평가에 관한 주무부처는 산업부(Ministere de l'Industrie)이며 표준 규정의 집행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수출입통제국(OCC: Office congolais de controle)에서 관할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매매되는 모든 상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상품의 표준 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상품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CC는 콩고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규제집(Manuel Qualite: System de Management de la qualite de l'OCC)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동 규제집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법령에 따르

면 OCC는 제3자 적합성 평가, 즉 검사, 증명, 시험 또는 분석, 도량형 및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관한 기술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표준화 위원회 기술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DR콩고에는 산업 부장관령으로 식료품, 철, 측량, 산림, 시멘트 등 품목에 대한 217개의 표준 기준(식품 134, 강철 44, 측량단위 14, 목재 13, 시멘트 11, 적합성 평가 1)이 공표되어 있으며, OCC내 인력 및 검증 시설의 제약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수입품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할 부처인 광업부가 마련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모든 광물자원 수출시 귀금속 반귀금속 감정증명센터인 CEEC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식물 위생검사에 대해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 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검역인증서(certification de phytosanitaire) 발급수수료는 건당 50CF(콩고프랑)이며, 수입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5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CF, 수출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1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수입 식료품 검역비는 100톤 이하 1킬로당 0.003CF, 100톤 이상 1킬로당 0.002 CF이다.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2004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수입품의 기술검증 효과 증진 및 통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하였다. 표준 담당 기관은 2009.7월에 설립된 바 있는 산업·에너지·광산부의 산하기관인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가 있으며, 동 기관은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을 등록 및 공포한다.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예를 들어 공업제품의 경우 산업·에너지·광산부)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관련 협약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2015.6월 기준 INNORPI에 등록된 튀니지표준은 17,053개이다.

지식재산권

개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생성물을 권리화한 것으로 산업적 발명이나 문학 또는 예술에서의 창작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무형적인 재산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체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분류되며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된다.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미생물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나 디자인은 장소를 달리하여 이용 가능하며 그 모방이나 보급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⁶¹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국가간 공통된 법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883년 발효)’, ‘문예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1886년 발효)’ 등이 있다. 세계경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⁶²가

61_ 송영식·이상정·김병일, 지적재산법(13정판), 세창출판사, p.419

설립되면서 여러 지식재산권 협약을 발전시켜왔다. 현재 WIPO가 관장하는 지재권 협약은 WIPO 설립협약을 포함하여 총 26개로 다음과 같다.

▶▶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

조 약 명		조약 목적	총가입국수 (체약당사자수)	채택일(발효일)
WIPO 설립협약		WIPO 설립	189개국	'67.07.14('70.04.26)
파리협약		산업재산권 보호	176개국	1883.3.20(1884.7.7)
특허협력조약(PCT)		특허의 국제출원	151개국	'70.06.19('78.01.24)
스트라스버그 협정		IPC 특허분류	62개국	'71.03.24('75.10.07)
부다페스트 조약		미생물기탁	80개국	'77.04.28('80.08.19)
특허법조약(PLT)		특허출원절차 통일	39개국	'00.06.01('05.04.28)
마드리드 협정	본 협정	상표의 국제등록	55개국	1891.4.14(1892.7.15)
	의정서	상표의 국제등록	98개국	'89.06.29('95.12.01)
상표법 조약(TLT)		상표출원절차 통일	54개국	'94.10.27('96.08.0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상표출원절차 통일	45개국	'06.03.28('09.03.16)
니스협정		상품의 국제분류	84개국	'57.06.15('61.04.08)
마드리드 협정(출처)		허위출처 방지	98개국	1891.4.14(1892.6.15)
나이로비조약		올림픽 심벌 보호	52개국	'81.09.26('82.09.25)
비엔나 협정		도형상표 분류	32개국	'73.06.12('85.08.09)
리스본 협정		원산지 명칭 보호 및 등록	28개국	'58.10.31('66.09.25)
헤이그 협정		디자인의 국제등록	66개국	'25.11.06('28.06.01)
로카르노 협정		디자인의 국제분류	54개국	'68.10.08('71.04.27)
워싱턴 조약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	3개국	'89.05.26(미발효)
베른협약		저작권 보호	172개국	1886.9.9(1887.12.5)
브뤼셀협약		위성통신 신호배분	37개국	'74.05.21('79.08.25)
음반불법복제방지협약		음반 불법복제 방지	79개국	'71.10.29('73.04.18)
로마협약		저작권보호	92개국	'61.10.26('70.02.26)
WIPO 저작권조약		저작권보호	94개국	'96.12.20('02.03.06)
WIPO 실연음반조약		저작인접권 보호	94개국	'96.12.20('02.05.20)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저작인접권 보호	15개국	'12.06.24(미발효)
마라케시 VIP조약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25개국	'13.06.28('16.9.30.)

자료: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treaties/en/>)(2016.12.19일 검색)

62_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 188개 회원국의 특허청장들은 매년 9월~10월 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의를 가져 특허제도 조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러나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협약들이 집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각국은 경제·사회의 여건 및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각기 다른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따라서 국제적인 조화가 어려웠으며, 위조상품의 교역 등이 증가하였다. 이에 통상협정에서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1983년 제39차 GATT 총회에서부터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6년 각료선언에서는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와 왜곡을 축소하고,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조치 및 절차 자체가 무역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ATT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제정하고 위조상품의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 기본원칙을 설정하기로 선언하였다.⁶³ 이러한 목표를 두고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 부속서1C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이 나오게 되어 1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TRIPs협정은 다자체제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인 지재권 법을 도입한 협정으로,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국제무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재권 보호 및 이차적으로 지재권 남용으로부터 정당한 무역의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TRIPs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기존의 지재권 협약의 원칙과 규정 등을 그 성립 및 운영의 기초로 하여 ‘국제협약 Plus 방식’으로 마련되었고, 집행에 관해 지재권 보호와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Single Undertaking 방식에 따라 WTO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강제력이 담보되어 국내법 이행에 있어 효과적 촉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들은 TRIPs 협정을 통한 지재권 보호수준이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자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데 FTA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⁶⁴ FTA에서의 지재권 조항은

63_ 박덕영·이일호,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2009, p.256.

64_ 조미진·박현정,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KIEP,

WTO TRIPs를 기반으로 해서, 보호 기간 연장 등을 보다 더욱 강화하는 형태인 이른바 TRIPs Plus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분쟁, 의약품 관련 조항 등 TRIPs 이후 쟁점이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2월까지 WTO에 통보된 발효된 245개의 RTA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174개의 RTA가 지재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⁶⁵ RTA에는 新유형 지식재산 보호, 특허의 대상 확대,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GI) 보호 강화, Grace Period 연장,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강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 등의 규정 포함하여 지재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FTA 등을 통해 국내외 무형자산 보호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의 지재권 보호체제를 보다 선진화하려는 노력은 기업의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에 유인을 제공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로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에게 강력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의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진화된 지재권 제도 도입을 요구하여 우리의 지재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호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황분석

2011년 11월 15일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 협정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TRIPs 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안하였다. 제안서는 TRIPs 위원회가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최빈국 회원들의 국내 법 체계가 TRIPs협정을 준수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재정적·행정적 제한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빈국은 TRIPs협정에 따른 의무를 2005년까지 준수해야 했으나, 2013년 상반기 TRIPs협정 이사회를 거쳐 2021년 7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TRIPs협정과 공중보전에 대한 2001 도하 선언에 의

2007, p.2

65_ Raymundo Valdes-Maegan McCann,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Revision and update,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2014, p.6

해 의약품의 경우는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TRIPs협정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무역협상, 논의, 기술 원조 및 전문가, 선진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침서와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고 있다. 최빈국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식재산권자들은 최빈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2년 WIPO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향후 특허분쟁과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WIPO의 주요 의제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특허분쟁은 전 세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며, 특히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WIPO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제 특허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를 위해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세계 지식재산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도국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한 WIPO와 선진국의 노력도 촉구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WIPO 및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혜택을 개도국들도 누릴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동의하였다. 더불어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expressions of folklore)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상과 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자인법조약도 논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2013년 WIPO 총회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지재권 관련 조약의 눈부신 성장과 활용을 들었다.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조약 참가국 모두에게 출원한 것과 같도록 출원절차를 통일화한 특허협력조약(PCT)이 대표적인 조약으로 WIPO가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공표된 어문저작물 등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다자간 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 관련 이슈가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

러 디자인 보호를 위한 조약과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약 마련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WIPO 총회에서는 특허법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 설치된 특허법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 대한 중간보고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WIPO는 아시아에 최초로 싱가포르 지부를 개설하여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시스템 등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싱가포르 지식재산권기구를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구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2015년 WIPO 총회에서는 유전자원 등 보호 문제, WIPO 지역사무소 신설 문제, 디자인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등의 현안이 논의되었고 2016년 WIPO 총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발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재권 제도 발전 안과 함께 특허제도의 조화, 심사협력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국가별 현황

미국은 2011년 특허법을 개정(「미국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Implementation)」)하여 선출원주의(first-to file system)로 전환(2013년 3월부터 적용)하였으며, 제3자가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후 심판제도(Post Grant/Inter Parties Review)를 도입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는 부실특허의 등록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특허권 행사의 남용을 저지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특허품질향상대책(Patent Quality Enhance Initiative)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2015년 2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협정의 발효일인 2015년 5월 13일 이후 출원된 디자인은 보호기간이 14년에서 15년으로 1년 연장된다.

미국은 지재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337 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활용하여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 IT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지재권 분쟁에 따르는 소요기일이 1년 내외로 신속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하고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6~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재권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언급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자료: USTR, 2016 Special Report, p.3

더불어 미국은 특허권전문행사기업(NPE: Non Practicing Entity 또는 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 이들은 일명 “Patent Troll-특허괴물”로 불린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특허상표청(USPTO)을 비롯한 정부기관들도 실행방안을 만들어 추진 중에 있다. 2014년부터 2016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허괴물의 폐해를 바로잡아 건전한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허개혁 법안이 경쟁적으로 나타나 시장과 업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인 특허괴물이 소송에서 패한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동소송 요건의 강화 및 IPR의 활성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경영전략을 무력화 시키는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 공화 양 당간 합의를 통해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PATENT Act」 법안 등 특허괴물 규제법안들이 2016년 10월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동 법안이 발효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특허괴물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특허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은 2014년에 들어서면서 감소(4,400건('13)→2,856건('14)하다가 2015년에는 4,093건으로 다시 증가한 상태이다.

2015년 9월부터는 한·미간 특허협력심사 프로그램이 진행 중으로 CSP(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라고 불리는 동 제도는 양국에 공통 특허출원된 건에 대하여 심사 착수 전에 양국의 특허청이 선행기술 조사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미국 출원시 우선심사로 4천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6.9월 현재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보기까지는 평균 16.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 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정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를 통해 특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공지에의 적용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들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한편, 상표 분야에서는 증명표장제도 도입과 소리·냄새 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품질보증 기능의 강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자산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표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침해 관련 물품의 압류명령,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보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의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2002년 이전에는 특허청, 문화청 등 지재정책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은 지재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 바꾸었다. 특히 지재전략본부 설립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5년 지재고등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지재고등재판소 설립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과 행정소송인 심결 취소 소송의 관할이 집중되었다. 특허 심사 분야에서는 임기부 심사관 채용과 선행기술조사의 외부 의뢰 등의 확대로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었다. 2004년 평균 심사기간은 26.2개월이었으나 2013년에는 11개월로 단축되었다. 대학의 기술이전과 지재전략을 위한 대학 지재전략본부, 기술이전 사무소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을 위한 「관세정률법」이 개정되었고, 일본 국내의 상표권침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일본의 강점인 만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강화하는 정책도 지재전략본부 설립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농산물 등에 관한 정책은 이후 일본 브랜드 전략, 콘텐츠 전략으로 추진되다가 2010년 동 일본 지진을 전후하여 Cool Japan 전략으로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아베 정권 하의 주요 지재권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반영되어 있다. 성장전략에 포함된 지재정책 중 첫 번

째는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재 제도 개혁이다. 4차 산업혁명은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생산성 혁명을 의미하는데, 빅 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 등은 현재의 지재산 체계 하에서는 보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지재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지재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재 제도 개혁이다. 일본은 그동안 벤처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져 왔다. 또한 노벨상의 연속적 수상, 우수한 논문 등 세계적인 과학기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이나 연구소의 성과가 사업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의 성장전략에서는 대학 개혁, 벤처 활성화 등과 아울러 지재소송제도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은 일본의 강점인 애니메이션, 만화 등 콘텐츠와 관광, 산업, 농수산물 등과 연계한 신 수출 전략이면서도 문화외교 전략인 Cool Japan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지재전략담당 특명담당 대신이 Cool Japan 전략담당 대신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일본의 콘텐츠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정책에 한층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지재정책 추진과 아울러 산업계에도 지재전략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내국특허출원건수는 2006년 약 40만 건에서 2015년 약 31만 건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우수 특허의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PCT 출원은 2006년 약 2만 6천 건에서 2015년 약 4만 3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인에 의한 해외 출원 건수는 2005년 약 16만 건에서 2015년 20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일본의 특허출원이 양 중심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변해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 출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건수는 2015년 경우 36,017건이다. 이러한 건수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수치이다. 일본 전체적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특허출원 증가는 지재정책의 무게 중심이 중소기업 지원에 있음을 의미한다.

EU는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와 EU 지식재산권의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

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통해 실효적 집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EU는 단일특허패키지, 즉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의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 특허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으나 2016년 11월 말 영국이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입장을 밝혔다. 이미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이 비준하였고 독일도 2016년말 비준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단일특허제도는 이르면 2017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되기 위해서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3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비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EU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 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2015년 6월 EU 집행위는 2014년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안의 승인에 따라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자신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및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되었다. EU는 정보보호에 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적 확장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위조품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명품 브랜드 등 많은 유명상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U차원 및 EU 개별국가에서 위조품 단속과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위조품 현황을 파악하고 지재권 침해범위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류 등 분야에서 위조품으로 인해 260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유럽의 위조품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OHIM, EU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 EU 형사경찰기구(Europol) 등이 협력하여 지식

재산권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내에 IP-Desk가 설치되어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은 전세계 지재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정부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 2008년에는 ‘국가지식재산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15년)」을 수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업무 진흥, 지재권 보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연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법치를 통한 지식재산권 인식 강화’를 꾀하였고,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은 매년 20%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1년에는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412건)이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였으며, 2015년에도 발명특허 출원이 1,101,864건으로 백만 건을 돌파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상표 출원은 2,876,048건으로 2011년 대비 약 2배가 신장하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 출원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 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사건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지재권 관련 민사1심 사건은 109,386건, 형사1심 사건은 10,975건으로 2011년 대비 약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모조품 유통과 지재권 분쟁 최소화를 위해 매년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국내에서 지재권 보호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마다 스페셜 301조상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지재권보호 강화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3년 8월 중국 「상표법」을 4차 개정(2014.5.1일 시행)하였고 2014년도에 설립한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2015년말 현재 원활한 운영을 보이면서 중국의 지재권 분야의 사법적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있

다. 또한 2015년 2월 중국정부는 미국 쉐컴에 과도한 기술사용료 요구는 반독점행위라고 판단하며 약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 또는 반독점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중 양국 간 교역증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문제와 기술유출은 우리기업의 중요한 투자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한중 특허청장회담, 상표청장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특허청과 중국 지방정부인 강소성과 지재권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채널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간 저작권 보호 관련 MOU를 체결하여 매년 정부간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중 FTA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상호투자자와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 간 지재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나는 WIPO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회원국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등록업무는 등록청(Registrar General)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상표의 등록 신청은 200달러, 등록은 200달러, 갱신은 연 390달러이며, 특허신청비는 100세디, 갱신비는 25세디 등이다.

과테말라는 2000년 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재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5년까지 보호된다. 등록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중남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여도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CAFTA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

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재권 보호가 아직까지 미흡하여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감시대상국으로 포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조약에 가입하고 있어 법적 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고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TRIPs 규정의무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재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상표 및 「상호법(법률 1450)」, 「발명특허법(법률 4994)」, 「외국인 투자법(법률 16)」 등으로 산업재산권이, 「법률4994호」에 의해 발명특허권이,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1450호」에 의해 상표 등이, 「저작권보호에 관한 법률 32-86호」에 의해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되었고 무단 전송 및 불법 복제 행위를 규제키로 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와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DR-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레바논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고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더욱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법의 적용이 엄격하지 않아 앞으로도 침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3년 미국의 국제지식재산연맹(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은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 스페셜 301조 상 감시대상국에 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온라인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의 제4부, 제7편, 지적재산권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법, 품종개량에 관한 법, 집적회로 배치도에 관한 법, 영업비밀(노하우), 상표법,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법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상표권 등을 제때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영화, 음악, 서적, 게임 등의 불법 복제물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법률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당분간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는 러시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말레이시아는 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베른협약, TRIPS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허권, 등록상표, 의장, 저작권, 집적회로 설계, 지리적표시 등의 보호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루는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을 21개 설립하였으며, 2012년 3월 발효된 저작권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면책요건 규정, 영화 상영 중 도촬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저작권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도(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말레이시아 편을 제작하여 법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을 통해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물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1991년 「산업재산권법(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이 발효된 후 2016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멕시코는 세계저작권협회 회원국으로 불법복제, 해적판 제작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멕시코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 산업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원산지표시, 산업기밀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의 경우 1996년 발효된 「연방저작권법(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멕시코는 불법 복제품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부문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80%가 불법복제품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멕시코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모로코는 WIPO 회원국으로 자국 법규를 국제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재권 위반 단속 및 법집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음악 CD, 영화 DVD 불법복제품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의류, 가방 등 제품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 위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몽골은 「지식재산권법」을 통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얀마는 TRIPs협정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

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는바, 미얀마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에서 지식재산권은 거의 보호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복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단속활동 또한 거의 없다. 미얀마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관련 전담 정부조직이 없어 미얀마 농업관계부 산하의 정착 및 토지기록부서의 특허 및 상표권 등록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제도가 열악하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지재권 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7년에는 일일 4~5만 장의 CD/DVD가 불법복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제반법령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나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2016년에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베트남은 WIPO회원국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TRIPS 협정 및 베트남이 맺은 기타 국제 지식재산 협약을 따르고 있다.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낮은 재산권지수(IPRI)와 높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비율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특허청(NOIP) 통계에 따르면, 매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청건수는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이는 베트남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지재권 위반 처벌조치 방법에는 행정조치, 민사재판 그리고 형사고발 3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 위반시 행정조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데, 이는 동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조치는 벌금이 경미하고 지식재산권 등록자에게 위반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지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반면 민사재판을 통한 제재방법은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 기준 및 법정의

지재권 전문가가 부재하며 부담스러운 재판 비용,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베트남 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민사소송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지재권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한 이행할 수 있다. KOTRA 호치민 IP-Desk, 특허청(KIPO) 베트남대표사무소, 한국 및 외국 로펌 외에도, 베트남 특허청(NOIP), 세관, 시장관리국과 같은 유관 베트남 정부 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2016년에도 베트남에 대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벨라루스의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통관절차 진행 중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장 가능). 또한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브라질은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산업재산권보호법」이 1997년에 발효되었고 1998년에 「법률 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이 공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WIPO저작권조약 및 WIPO실연·음반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보호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년 5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특허청인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는 등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주별로 3년-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

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일 내에 해결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바, 특허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의 대외적 평가는 낮아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미국은 브라질을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브루나이의 경우 저작권, 상표, 특허권 등이 법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단속의 소홀로 인해 저작권의 보호는 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TPP 등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이래 2012년까지 브루나이에 대해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온 것을 2013년에 해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인정되어 2010년부터 미국의 스페셜 301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국제지적재산연맹(IIPA)은 2012년 2월 높은 저작권 침해율, 정부의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낮은 제재율 등을 이유로 사우디를 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하도록 USTR에 권고한 바 있다.

세네갈은 프랑스를 모델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WIPO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 회원국이자 베른협약 당사국이다. 다만 2008년 TRIPs와의 조화를 위해 국내입법을 마련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르비아는 지식재산청이 지식재산권 이슈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원산지 표시, 집적회로 배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의 지식재산권은 규제 및 보호된다. 또한 「관세법」에 의해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세르비아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EU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고 있으나, 법집행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위스는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재권 보호수준이 높은 편이나 미국은 2016년 스위스에 대해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스위스의 노력을 촉구하며 감시대상국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권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부가 설치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특허권 및 제조공정권에 대한 보호관련 법적 보호가 미약하다. 저작권의 경우 1999년에 WIPO조약과 WIPO실연·음반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미약한 실정이다.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2016년에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 및 실행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라시안 특허청(EAPO:Eurasian Patent Office) 등 국제회의에 가입하였다. 2005년까지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Watch-list)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동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은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으나 불법복제 DVD, CD 등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알제리에서는 산업발명(industrial inventions), 산업설계, 디자인과 상호(trademarks and service marks or appellations of origin) 및 문

학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음반 등의 문학·예술적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지재권보호가 미흡하여 2016년에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앙골라는 최빈국으로서 2021년까지 TRIPS협정의 완전 이행에 대한 시한 연장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약품 특허 적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에서 옵저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산업지식재산권보호협정과 특허협력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산업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3/92)」에 의해, 저작권은 「저작자 권리에 관한 법(Law No. 4/90 of March 10, 1990 on Author's Right)」에 의해 보호된다. 이와 같이 앙골라의 법은 지재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입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행은 정부당국의 능력 부재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예멘은 WIPO회원국으로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규정을 WIPO 지침에 따라 보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지재권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만은 2008년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상표권법」, 「특허법」, 「산업디자인법」 등을 「산업재산권법(Royal Decree 67/2008: Industrial Property Right Law)」으로 통합하였으며, 「저작권법(Royal Decree 65/2008)」을 개정하는 등 비교적 정부차원의 노력이 잘 이행되고 있다.

우간다는 영어권아프리카IP협력기구(ARIPO) 회원국으로 특허에 대해서는 20년 간 보호되며, 상표에 대해서는 7년 간 보호(매 10년 단위로 권리갱신 가능)된다.

우루과이는 베른협약 및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회원국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개인 저작권은 사후 5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은 창작일로부터 5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에너지광물부 산하 국립특허국(Direcció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

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에 가입해 있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한한 소규모 혁신 및 상품에 적용할 경우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4월 베른협약 회원국이 되어 지재권 침해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저작권법」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저작권법안 제정을 추진하여 2006.6월 입법화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잘 정비된 지재권 보호에 관한 법규와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특허협력협약 등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광범위한 온라인상 침해에 대해 다룰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2016년에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집트는 WTO 가입국으로 TRIPs 협정을 적용받으나 국내 법규 및 규정이 미비하고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제적인 보호 정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불법 도용한 상표나 불법 저작물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우리기업의 경우 역시 상표권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해결이 쉽지 않아, 설득과 협상에 의한 해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4년부터 이집트 제약회사가 복제 의약품 생산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국인 미국 측에서 강력히 침해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집트 정부는 국내 영세민에 대한 저가 의약품 공급을 이유로 복제 의약품을 허용

하고 있다. 미국은 이집트를 스페셜 301조상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적절한 피해구제장치가 없어 아직까지 보호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인도는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재권 침해율이 높고 보호 메커니즘이 허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약품, 화공제품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16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지적재산권(IPR) 정책'을 승인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향상을 도모하고 이와 동시에 법 개정으로 지식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와 상표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관리 인재를 육성하며, 위조품의 제조나 판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특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의 5~7년에서 1년 반으로,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 평균 1년에서 1개월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으로 2016년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2013년 발간한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인도 편을 참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산업디자인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재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인지도 있는 쇼핑몰 구석구석에 불법복제 CD나 DVD를 파는 잡상인들이 넘쳐나고 있고, PS3나 Wii등 오락기용 게임CD의 불법복제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스페셜 301조상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다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년 2월 5일), WIPO(1967년),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67년),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1967년), 특허협약 등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권을 비롯해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들이 존재하나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카타르에서 특허는 「특허법 법령 NO.3/2006」에 의거 2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은 카타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형태로 최초 10년 등록에 추가 10년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으며 권리자 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캄보디아는 WIPO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가입국이나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 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는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활동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처벌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유통 중인 지재권 관련제품 대부분이 불법 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표법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2015년 3월 국제 협약인 마드리드 협정에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상표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케냐는 WIPO 회원국으로 기술연구훈련성(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케냐산업재산권 사무소(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의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케냐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 최대 800,000케냐실링(약 8000달러)의 벌금 및 10년 기간의 징역, 제품 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케냐인들

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당국의 법률 집행은 매우 미약한 편으로 현지 시장에는 불법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타리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파리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등록된 저작권은 일반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 대상에는 문학, 과학, 법률, 음악, 건축 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불법 복사 사용률이 2010년 50%로 집계되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CAFTA 협상에 있어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강화기준을 코스타리카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코스타리카는 지식재산권 위반 시 최대 형량을 5년, 과태료를 기본임금의 500배로 인상했다(「법령 제 8039호」). 코스타리카 의회는 2012년 6월 「법령 제 8039호」의 개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권한법(Expendiente 제 17.342번)」을 통과시켰지만 친치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습권 침해를 둘러싸고 현재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특허와 관련하여 1998년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였다. 상표는 10년간 등록될 수 있고 무한정 10년씩 연장될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3년 이내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특별히 비디오 및 오디오, 책 및 기타 지적 또는 예술적인 재산 및 제품,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국립등록원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재권 보호에 대한 대외적 평가는 낮아 미국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코스타리카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콜롬비아는 국내법 및 WTO 규범, 양자협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체계를 갖추었고, 저작권자는 생존기간 및 사후 8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과 같은 경우 시행 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로 법집행을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

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콜롬비아를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쿠웨이트는 WIPO 회원국으로서 전세계적인 지재권 보호 흐름에 맞추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일반 소비자의 관심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2016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도 쿠웨이트에 대해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태국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직접회로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WTO TRIPS의 의무충족을 위해 1999년 「특허법」을 개정하였고 여타의 노력을 통해 2008년 8월에는 파리협약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1997년 12월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법원’이 개설되었고, 2000년에는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며, 2005년부터 매년 단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소매업자간 MOU를 체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다. 실제 불법복제 사용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중의 범죄의식이 희박하여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흡하며 처벌도 가볍다. 태국은 미국 스페셜 301 조 보고서상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파나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네바음반협약, 브뤼셀위성협약, 국제만국저작권협약, 베른저작권협약,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식물다양성국제협약의 회원국이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 및 강화되었다. 저작권 등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 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 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시장에 만연한 불법복제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의 주요 규정의 이행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여 미국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변경하였다.

페루는 지적재산분야 법이 있으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도 매우 부족하다. 불법 외국서적복사가 대학가에 만연하며, 불법 소프트웨어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표 소유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2016년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는 페루의 불법복제 의약품 범람 및 캄코더로 찍은 불법 복제물 등을 지적하며 페루에 대해 감시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1994년 이래 필리핀을 지적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시켜 왔으나, 최근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감안하여 2014년 보고서부터 필리핀을 동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그밖에 남아공, 니카라과, 라오스, 르완다, 루마니아,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수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적도기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터키, 튀니지, 파라과이, 파키스탄 등 개도국에서는 아직도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개도국에서의 지재권 분야 통상장벽은 주로 지재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거나 법적 집행능력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불법복제 시에도 이를 처벌할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집행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에서도 지재권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등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서비스

개관

WTO 서비스협상 동향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UR 협상 당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⁶⁶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WTO 출범 이후 UR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⁶⁷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02.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

66_ 기설정의제란 UR 협상을 통해 체결된 WTO 협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과제를 의미한다.

67_ 9개 주요 협상 의제로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해,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이며 이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의제이다.

고, 2003.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DDA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다자무역협상은 중간점검회의의 성격을 가진 칸쿤 각료회의(2003.9월)가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서비스협상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이 다자무역협상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2004년 DDA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2004.8.1일 'July Package(WT/GC/W/535)'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종협상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를 2005.12월에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을 명시함에 따라 DDA 협상의 모멘텀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initial offer)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시한(2005.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2005.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회의가 결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협상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선언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각료선언문 본문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목표, 개도국 유연성 원칙 등이 합의되었으며 부속서 C에서는 모드(Mode)별 협상목표, 이해당사자간 복수적 협상 개시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고려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2006.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06.7월까지 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하며 2006.10월까지 최종양허안 등을 제출하는데 합의하였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간·양자간 협상

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NAMA를 중심으로 주요국간의 대립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 2011.4.29일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 회의에서 구속력을 가진 의장 텍스트 채택이 무산되고 분야별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만 채택됨으로써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되었다.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소규모 패키지의 조기 타결을 계획하고 협의를 했으나, 이 또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2011.7월에 무산되었다. 2011.4.29일 발표된 분야별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협상은 그동안 일부 부분적인 진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8년의 Signaling Conference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협상의 부진은 여타 분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DA 서비스 협상이 2005.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⁶⁸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⁶⁹ 2016.12월 기준 21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고 협상 완료기한을 설정해놓지 않고 현재 참여국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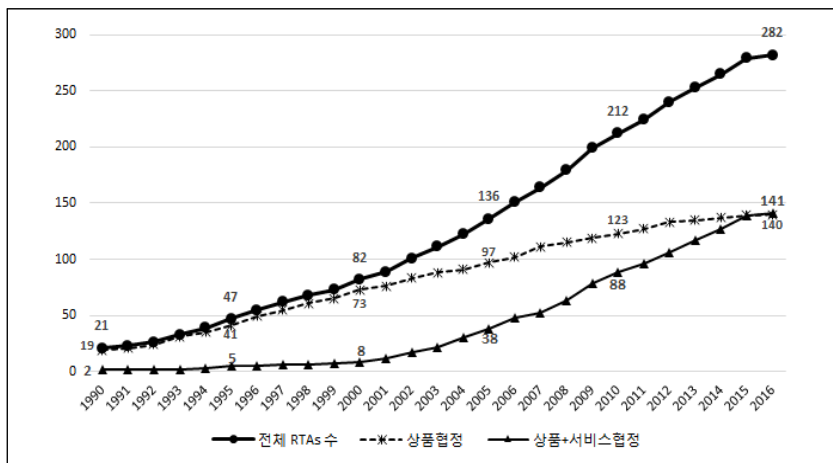
68_ RGF 국가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69_ 2013.6월 당시 TiSA 협상 참여국은 22개국이었으나 이후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면서 2016.11월 기준 총 23개국(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만, 홍콩, 파키스탄,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라과이, 터키, 이스라엘, 리히텐슈타인)이 TiS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RTAs 서비스협정 체결 동향

다자간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의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체결된 대부분의 RTAs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하고 서비스협정은 다루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RTAs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10월 현재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s가 141건(발효기준, 누적건수)으로 전체 RTAs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

》 세계 RTAs 체결 현황(발효기준, 누적, 건)



주: * '상품협정'은 상품협정만 포함된 RTAs를, '상품+서비스협정'은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RTAs를 의미함. ** 서비스 협정만 체결된 1건(Melanesian Spearhead Group, 1994년 발효)은 개별 그래프로 표시하지 않고 전체 RTAs수에만 포함함.

자료: WTO, RTAs DB

용어의 정의

GATS 제1조에서 서비스 무역의 형태(mode)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 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 관광)
-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 영업)
- ▶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최혜국(most-favoured-nation: MFN) 대우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GATS 제2조). 다만, GATS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MFN 대우 면제 목록에 명시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MFN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GATS 제17조). 즉, 일단 외국회사로 하여금 국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면 외국회사와 국내회사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교역장벽의 일반적 유형

서비스 교역장벽은 일반적으로 전술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및 NT, 그리고 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서비스협정의 주요 내용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이다. UR 협상결과 타결된 GATS는 상품분야의 협정(GATT)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 ▶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 ▶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 ▶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 ▶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목록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GATS 본문에서는 NT, MFN 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상호인정, 국제지불 및 송금 등에 관련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GATS의 NT 원칙은 상품분야와는 달리 회원국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양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양허를 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NT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고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의 면제, 자연인의 이동, 항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목록(서비스 양허표)은 회원국들이 자유화할 것을 양허하는 서비스 분야와 분야별 활동에 관해 MA 및 NT상 제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양허표는 W/120⁷⁰ 기준 총 155개 서비스 업종이 포함되며 각각의 업종별로 MA 및 NT와 관련된 네 가지 공급형태⁷¹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MA 및 NT상의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양허를 하지 않는 경우 'unbound'로,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를 하는 경우 'none'으로 명시하며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MA 및 NT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TAs 서비스협정에서도 GATS 형태(positive list 방식, 열거주의)의 서비스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WTO 서비스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양허표를 도입하여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을 기재한다. 반면, NAFTA 형태(negative list 방식, 포괄주의)의 RTAs 서비스협정은 부속서 I(현재

70_ WTO(1991), MTN.GNS/W/120 참고.

71_ 앞서 언급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을 의미한다.

유보)과 부속서 II(미래유보)에 NT, MA, MFN 대우,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Non-Conforming Measures: NCMs)를 둘 수 있고, 부속서 I과 부속서 II에 기재되어있는 제한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⁷²

현황분석

UR 당시 WTO 회원국들은 전분야에 해당되는 수평적 조치(Horizontal Commitments)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네 가지 공급형태상의 양허 여부 또는 제한 내용⁷³을 명시하여 양허표를 제출한 바 있다.⁷⁴ DDA 출범 이후 각국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1차 양허안(initial offer)과 수정 양허안(revised offer)을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D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허의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분야의 자발적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 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72_ NAFTA 형태의 RTAs는 서비스 무역 형태 중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자연인의 이동은 국경간 서비스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에서 다루고 상업적 주재는 투자(Investment) chapter에서 다룬다. NAFTA 형태의 RTAs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상업적 주재에 대해 투자 chapter의 NT, MFN 대우,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조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두는 경우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기재해야 한다.

73_ 이를 Sector-Specific Commitments라고 한다.

74_ 국별 서비스시장 양허내용은 WTO(1999), Services Database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을 제한 완화·철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서비스시장 세부 개방 약속(양허) 내용은 UR 양허표를 참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은 현지 공관을 통해 파악된 서비스분야의 주요 교역장벽이다.

미국은 서비스분야의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해운서비스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국적선 요건을 규정하여 해운서비스 시장에서 미국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20년 미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도 ‘모든 미국내(속령(屬領), 자치령 포함)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승선한 미국 국적선박에 의해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적선 요건을 명시한 그 밖의 법률로는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1954년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 「1995년 알래스카 산 석유 금수해제법」 등이 있다.

2012.3.15일 발효된 한·미 FTA에서 미국은 미·호주 FTA(2005년 발효)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서 이에 더해 미국 내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 관련 미래유보를 포함하지 않고 UR 이후 시장 접근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다만, 미국은 한·미 FTA에서 여타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기업인의 일시입국 또는 자연인의 이동 챕터를 불포함하고 있다.

EU는 문화의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공공, 의료, 교육 등의 분야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서비스분야에서는 EU회원국별로 외국인투자제한 조치, 국적요건, 자격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형태에 있어서는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 형태에 대해 다소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상업적 주재의 경우, 각 EU회원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서비스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독점 또는 인가받은 민간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자문업, 인문과학 R&D, 기술조사분석, 환경, 건강, 운송, 운송보조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어느 한 EU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제3국 자회사에 대한 조치는 그 국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EU역내에 사무소만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자연인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업체가 파견하는 자연인의 주재와 서비스 판매협상·계약체결을 위한 입국은 허용된다.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증(MRA) 문제는 개별국가의 소관사항으로 각 EU회원국과 제3국간의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2004.1월 EU 집행위는 역내 서비스시장의 획기적인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시장 서비스지침(Directive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⁷⁵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서비스시장 개방 폭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입법절차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보건, 사회보장 등의 공익서비스와 라디오·TV 방송 등의 시청각서비스를 적용 대상에서 배

75_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서비스 제공업자의 영업개시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②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③회원국 정부간 협력 의무 대폭 확대, ④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각종 자격조건(requirements)의 폐지, ⑤국적국의 영업허가 전회원 국내 적용 등이다.

제⁷⁶하고 원산지국 개념을 삭제하는 등 부분 수정을 거쳐 2006.12월에 발효되었다(각 회원국들은 2009.12.28일까지 이행).

2011.7월부터 발효한 한·EU FTA에서 EU는 총 155개 서비스 분야 중 139개 분야를 양허하였으며 이중 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자문·조사·회의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내수운송 등 운송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등 9개 분야의 경우 DDA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양허를 하였다.

EU의 서비스 분야별 교역 장벽은 다음과 같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5.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5.6일 EU 집행위는 EU 28개국의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제반 통신 규정 개혁, 회원국간 주파수(Spectrum) 분배방식 조율을 위한 EU의 공통기준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우편서비스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쟁 도입, 규제당국과 사업자 분리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서비스 지침을 세 차례 도입·개정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2006.1월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정부 독점인 50g 미만의 우편물도 2009년

76_ 단, 공익서비스 중 우편, 전기, 가스 등 상업적 성격의 공익서비스는 동 지침이 적용된다.

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2kg 이하 우편물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의 우편서비스 시장 자유화 방안은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그 일정이 연기되다가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EU는 문화의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제한을 하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고 영화상영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EU 방송지침(Broadcast Directive, 1989)」에서는 TV 송출시간의 절반이상을 EU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영화산업을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콘텐츠를 배급·유통하기 전에 관련 심의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거쳐 연령등급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비디오게임·온라인게임은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에서, 영화·비디오·DVD와 같은 시청각물은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에서 심의를 한다. 영국에서 외국인이 TV방송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가리아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서 많은 부분(predominant portion)을 유럽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체코는 외국인이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며,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등록절차도 필요하다. 폴란드에서도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탈리아는 정부가 지급하는 영화산업 보조금에 대해 내국민대우 예외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원칙적으로 유럽경제구역(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회사의 대표자와 이사의 1/2 이상이 국적요건(노르웨이 영주권자)과 거주요건(최근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비EEA 기반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서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노르웨이는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가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하기 위해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어야 한다는 요건과 대표자와 이사진에 대한 국적요건(1/2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된 비EEA 외국해운회사는 노르웨이 항구 간 여객·화물 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할 수 없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은행업에 투자할 때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과 국내 항공사 운행 등의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8.1.1.일부터 이사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해야 하고 대표자 중 한 명은 거주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 높은 진입 장벽을 두고 있었으나, 2012년 WTO에 가입하면서 총 155개 서비스 업종 중 116개 업종을 양허⁷⁷하는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단,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운송, 내

육수로운송, 의료,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업종은 미양허 상태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15개 업종 중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시밀리 등 3개 업종은 제한없이 양허하고 그 외의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12개 업종은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내국민대우상 일부 분야(국가정체성,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정부지원이 존재하나,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도소매업에서는 일부 취급품목 제한(의약품, 의료기기(도소매), 알콜류(도매) 불허, 설립형태 제한(법인만 허용), 허가요건(소매업)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소매업에서는 식품 및 비식품 취급, 자동차(부품, 액세서리 포함), 모터사이클, 주유소 등에 대해 양허하였다.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면서 보험서비스와 은행서비스 전분야(기타금융서비스 제외)를 양허하였으나, 국경간 공급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거래형태 등을 제한하고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는 설립형태를 현지법인(자회사)으로 한정하고 허가요건을 두는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등록기간 3년, 무기한 갱신 가능)을 해야 하며 업무범위가 연구·국제협력증진으로 제한된다.

터키에서는 국제입찰의 경우 터키 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며 낙찰 후에도 선수금 환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된다. 보증서 발급시 은행이 정부에 납부하는 Stamp duty가 보증서 금액의 0.5%이며 동일 보증서의 간단한 기간 연장 및 내용 변경에도 동일 비율의 Stamp duty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자는 금융 등 일부 분야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개방이 되어 있다.

일본은 금융 분야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일본 내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에게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본점의 예금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금융중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된 감사(금융청 검사, 일본은행 고사(考査), 재무

77_ 러시아의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155개 업종 중에서 26개 업종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90개 업종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양허를 하였고, 39개 업종은 미양허하였다.

성의 외환업무관련 감사, 세무서의 수시감사 등)를 받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은 일본의 금융결제망에 가입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으나 높은 가입비 및 운영비 부담 등으로 가입하기 어려워 마케팅채널의 구축과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것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을 차별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제180조 제1항에 의거, 일본 국내은행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처에게 교부하면 되지만 외국계은행은 매 5년마다 원천징수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든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대출금이자, 콜론이자 등의 거래에도 적용되고 있어 외국계은행의 업무상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외국계은행은 본국의 본점 결산일에 맞추어 매년 12월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모든 은행의 영업 연도를 일본 회계연도인 3월에 맞추고 있어 현실적으로 외국계은행이 결산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많은 부문에 있어 서비스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의 개방 일정을 이행하면서 교역 장벽이 점차 완화 또는 철폐되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2001.9월 중국항만 조출료(dispatch money)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약 15% 인상하였다.⁷⁸ 한편 2002.1월에는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해운조례」를 시행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례에도 지분제한 등 부분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2004.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방법(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6.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2005.12.11일부터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고 기 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

78_ 「대외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조정에 관한 통지」

립도 허용하였다. 동 업종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높은 교역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외국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할 때 광전총국의 심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합작)은 49%이내에서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드라마의 경우 당일 방영 프로그램의 총 방영시간의 25%를 넘을 수 없으며, 기타 방송프로그램은 15%를 넘을 수 없다. 또한 해외 드라마의 주시청시간대(19:00~22:00) 방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드라마를 5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고화질(HD) 해외 영화·드라마만 수입할 수 있다. 위성TV의 해외 프로그램 포맷 수입은 연 1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19:30~22:00 시간대에는 편성하지 못한다. 2014년 1월부터 해외 프로그램 포맷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⁷⁹. 공동제작은 광전총국 허가를 통해 제작할 수 있다. 영화 분야에서는 외국영화의 수입편수가 제한되어있다. 흥행수입에 따라 일정비율 나누는 방식인 분장제는 34편(14편은 3D/ IMAX(2012)), 배급회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판권을 사는 방식인 단매제는 30편으로 제한된다. 영화 등 콘텐츠 제작 합자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설립할 때 외자투자 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제작은 영화제작 허가증을 보유한 중국제작사가 ‘중외합작영화허가증’을 확보한 후에야 영화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폭력 및 노출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심의기준으로 극장 상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서비스 기업은 외상 투자 금지에 해당된다.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판호(광전총국),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문화부), ICP(Internet Content Provider)허가증(신식공업부) 등이 필요하다.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은 중국기업에게만 발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ICP는 상업적 인터넷서비스제공 업무에 대한 허가증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지분비율을 51:49로 제한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수입은 광전총국, 문화부에서 지정 또는 허가한 국유기관만

79_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2013.10.12) 「TV 위성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수입 가능하며, 광전총국에서 TV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다. 외국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업 및 영화 제작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 애니메이션 제작경영기관 설립 시 광전총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입 애니메이션은 17:00~21:00에 방영 불가이며, 애니메이션·아동·청소년 채널과 기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자국산 애니메이션과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비율을 7:3으로 규정하고 있다. CD와 DVD는 수입시 출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반 영상제품 출판의 경우 외국자본이 독자형식으로 진입할 수 없다. 합자의 경우 중국 경영자 비율이 51%이상만 가능하다. 중외합자 및 중외합작 경영 또는 외자형태의 공연단체의 설립은 불허하고,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중외합자, 합작경영 공연매니지먼트사 및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을 허용하나 외국자본으로 경영하는 공연경영기구와 공연장소 경영단체는 설립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드라마, 마이크로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통지」 및 「보충통지」를 통해 ‘선심사 후방영’으로 콘텐츠 내용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외에도 중국은 ‘라디오 TV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 취득 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만 방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해외 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에 의거하여 동영상 사이트에서 해외 드라마 제공 편수가 중국 콘텐츠 총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방영 1년 전에 성급 신문출판광전국 및 광전총국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⁸⁰, 인터넷 상에서 해외 영상물 상영시 ‘영화상영허가증’ 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 취득⁸¹을 요구한다.

80_ 광전총국은 매년 2월 20일 전,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계획한 해외 영상물 심사 ‘인터넷 해외 영상물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 공고하였다.

81_ 허가증이 없는 경우 2015.4.1일 이후 방영할 수 없다.

》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현황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게임	2004	온라인 게임류의 프로그램 방송 금지에 대한 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류 TV 방송 금지
게임	2004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 작업에 관한 문화부통지	- 모든 온라인 게임은 문화부에 신고 후 심사
영상	2004	인터넷 등 정보망과 전파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방법	- 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영화와 드라마는 '영화개봉허가증'과 '드라마 배급허가증' 획득 - 정보망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가진 사이트만 정보망 전파 뉴스류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공통	2006	온라인 콘텐츠 전파권보호조례	- 중국내 모든 온라인 콘텐츠 전파에 대한 관리 규정
영상	2007	인터넷 영상물 관리 강화 통지	- 인터넷 유통 영상물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강화 - '애니메이션 배급 허가증' 취득 및 심의 사항 규정
공통	2007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 국유독자기업/국유지주기업만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신청가능 - 자체로 인터넷 드라마류 서비스를 제작 운영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추가요구
출판	2008	전자출판물출판 관리규정	- 전자출판물출판사는 외자 진입 불가능
영상	2009	인터넷동영상콘텐츠 관리강화에 대한 통지	- 영화와 드라마, 만화 및 다큐의 인터넷 방송 허가요구 - 문란한 내용 전파 금지
게임	2009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관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 온라인게임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 정책
게임	2009	수입온라인게임심사, 허가관리의 강화에 대한 통지	- 온라인게임 심사 및 관리 권한 신문출판 총서 규정

구분	연도	명칭	주요내용
공동	2009	TV를 수신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 단말기 종류에 따른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발급 명시
게임	2010	온라인게임관리 임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리 규정 - 온라인게임 이용시 실명확인,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 취득, 해외업체 게임 변경시 신고후 심사
출판 음반 영상	2010	인터넷 출판물 발행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출판물 발행 기업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음반/영상물 경영허가증' 취득
게임	2011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사용자에 대한 부모감호에 대한 공정실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 미집행 운영사에 벌금형진행
출판	2011	출판관리조례(수정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 활동 종사시 출판물경영허가증 획득 필요 등 일부 내용 추가 혹은 수정
공동	2012	이동스마트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규제 경향에 반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금지 ※ 해외콘텐츠의 다운로드 관련 전파 경로에 대한 콘텐츠 규제가 될수 있음
영상	2012	온라인드라마, 마이크로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동영상 방영업체는 사이트에 온라인 콘텐츠를 업로딩 하는 개인이나 기관 신분 확인 필요
영상	2014	온라인드라마, 단편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프로그램 관리개선에 대한 보충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심사 후방영, 콘텐츠 내용심의 강화 -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기구는 '라디오 TV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취득, 허가증 없는 기구가 제작한 콘텐츠 방영 금지 -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는 제작자 실명확인된 콘텐츠만 방영
영상	2014	온라인 해외동영상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량규제 : 30% 내, 1년 전 사전심사 - 인터넷상 해외 영상물을 게재할 시는 반드시 '영화상영 허가증'혹은 '드라마발행허가증'을 취득

중국의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가 기존 35%에서 49%로 높아졌다. 또한, 2002.8월에는 중국 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지분 한도 25%)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합영기간은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이 시행되었다.

유통업의 경우, 중국은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를 중외 합자 또는 합작의 형태만 허용하고 매출규모, 자산, 자본금 등에 대해 높은 자격요건과 지역 제한 요건을 두었으나, WTO 양허를 이행하면서 2004.12월부터 외국 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외국투자자의 자격요건 중 연간매출액과 자산규모 요건을 철폐하고 자본금 규모도 대폭 낮추었다(도매업 50만 위안, 소매업 30만 위안).⁸² 또한, 유통업의 지역 제한도 도매업은 2004.6.1일부터, 소매업은 2004.2.11일부터 철폐되었다. 그리고 2006.12.12일부터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 판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도소매업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지방정부로의 외자상업(도소매)기업 설립심사 위탁에 관한 통지(商資函 [2005] 94)」에 따라 외자상업(도소매)기업의 설립에 관한 인가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 상무부문(성급 및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으로 이관하였으나 여전히 유통업의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⁸³ 외자유통기업의 법인 설립시 2006년 개정 「회사법」에 따라 최저자본금요건(3만 위안 이상)이 적용되며, 외자유통기업의 존속기간은 30년(중서부지역은 40년)이고 동 기업의 출자비율은 기본적으로 49% 이하로 제한된다. TV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의 광전총국으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무부로부터는 외자기업 설립에 관한 인허가

82_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83_ 민감한 경영범위에 속하는 업종(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에 종사하는 경우와 국가관리가 필요한 중요 품목으로서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 제17, 18조에 규정된 제한 제품(강제,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화학비료, 제품유, 원료, 소금, 담배,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식량, 식물유, 사탕, 면화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중앙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은 외자기업(TV 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외자온라인기업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 기업에 대한 관리는 광전총국이 한다. 중국은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 외국 단독투자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는 2008년 개정·발표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대형 종합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CP(인터넷 영업허가증)와 문화사업 경영허가증 등을 취득해야 하는데, 외자기업이 이들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직접판매의 경우 중국 정부는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춘 기업에 직접판매를 허용하나 다단계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직접판매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은 「직접판매산업서비스망설립관리방법」(2006.10월부터 시행)에 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2004.12월에 공포된 「프랜차이즈관리방법」에 따라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동 방법에 의해 타 업종으로 등록된 외자기업도 프랜차이즈 경영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자 독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설립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 2007.1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법규로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동 조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사업자 등록제도 신설, 사업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의무화, 가맹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사업자 자격요건으로 ‘개업 1년 이상 된 직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한 자’로 규정하는 한편 공상부처에 등록된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진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형태로만 주재가 가능하며 업무범위는 중국법률사무(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륙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활동 등)를 포함하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해 있어야 하며 변호사 직업윤리나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처의 대표는 직업변호사로 제한되며 각종 요건(자격

취득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 형사처벌 경력과 변호사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을 두고 있다. 또한, 수석대표에 대해서는 중국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두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외국 업체는 합자와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기업을 설립하거나(1급 시공기업 등록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2급은 5,000만 달러 이상, 1급 실내장식은 자본금 200만 달러 이상) 사전에 외국인투자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12.1일 「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건설기업은 2005.7.1일부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건설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 범위를 ①전액 외자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 투자 건, ②국제기구에 의해 자금 조달이 된 건, ③중외합작 프로젝트로 외자가 50% 이상인 건이나, 외자가 50% 미만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 ④중국 투자 프로젝트이지만 기술적 난관으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주할 수 없는 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의 경우,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감면 및 융자지원, 과실송금 관련 우대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2007년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중국은 고급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등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편입시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6.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외상투자기업의 부동산 기업

설립, 외국인 투자자가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 등을 제한하고 있다. 2012.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 가능) 등 부동산업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2001년 WTO 가입 시 양허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인투자통신기업관리규정」을 2002.1.1일부터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기본통신서비스는 49%까지, 부가서비스는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 2012.1월 개정 시행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통신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 한도가 기본통신 49%, 부가통신 50%로 제한되어 있다. 2008.5.23일 중국은 유무선 사업자를 포괄하는 종합사업자 육성 및 제3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4대 사업자와 차이나티에통을 합하여 3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였다.⁸⁴ 중국은 2008.9.10일 「외국인투자정보통신기업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비율은 기존의 「외국인투자정보통신기업관리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 게임 또는 이동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지분을 50%까지 허용(단, 최저자본금요건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신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동 법은 2007년에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예비 입법항목으로 포함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정·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5.12.20일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측은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84_ 동 계획에 따라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티에통이 통합되어 신 차이나모바일(TD-SCDMA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으며 차이나텔레콤이 차이나유니콤의 CDMA부문을 인수하여 신 차이나텔레콤(CDMA2000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고 차이나유니콤(GSM부문)과 차이나넷콤이 통합되어 신 차이나유니콤(WCDMA 기반 서비스 제공)이 설립되었다.

합의하였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FTA 최초로 상해 자유무역지역(FTZ)내에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와 중국 로펌의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외국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중국내 실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인정을 약속하였으며,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은 면허 등급 판정 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을 인정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상해 FTZ내에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이 상해 지역에서 외국자본비율 요건⁸⁵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외국계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대형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DDA 양허에서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있어 합작 기업 설립만을 허용해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순 한국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분야에서는 그간 외국기업의 진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으나, FTA를 통해 공연 중계 및 공연장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합작 진출을 허용(49% 지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방송서비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싱가포르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49%까지, 개인 소유지분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Temasek)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률회사와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의 합작,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 고용은 허용되나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85_ 기존에는 중외 합작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①외국투자 50% 이상, 또는 ②외국투자 50% 미만이나 중국기업 단독수행이 불가능한 사업만 수주 가능하다.

합작의 형태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다르다.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엔지니어링 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으나 대표, 임원 등에 대해 국적요건과 각종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회계서비스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하며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의 형태는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세 가지이며 회계법인의 형태별로 파트너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정 요건이 요구된다. 은행 및 증권업의 경우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2006.3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서비스무역은 동 협정문에 따르게 되었다. 동 협정문의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의거,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은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을 제한 등 특별한 서비스 장벽을 두지 않고 있다. TV 방송의 경우 외국인이 TV 방송 면허를 가진 회사의 지분을 2% 이상 취득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49%까지로 제한된다. 라디오 방송 면허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된다. 한편 민간항공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을 제한은 없으나 외국 항공사에 대한 규제를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맡는다는 차이가 있다.

대만의 경우 WTO 가입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였다. WTO 가입 이후 수출입 해운컨테이너운수업이 개방되고 건설업에 있어서도 외국 건설업체의 외국 경영실적을 인정하며 건설업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그 외에 대만 내 외국변호사의 업무를 허용하고 항공·육상 종합배달 서비스업체는 항공화물운송 도급자 신분을 갖고 자체 차량으로 대만에서 화물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며 수입영화의 카피 수 및 외국영화 상영 극장 수 제한이 철폐되었다.

2013.6.17일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업, 우편·저축, 환어음, 민간 공중 서비스(법률), 공중파 라디오 방송, 공중파 TV 방송,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특수 오락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동 조례에서 송전·배전업(전력공급업), 가스배송관, 수도사업, 자동차 화물, 자동차 컨테이너, 선박 운송·대여, 항공운수업, 공항 서비스업자 및 항공 케이터링업자, 제1분류 전신사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서비스, 케이블 라디오·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TV 방송 사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통신, 유통(직접 판매), 사업서비스(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금융, 광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한 장벽이 있다. 기본통신분야 및 부가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WTO의 기본정보통신협정의 제한된 부분만을 수용하고 있다(단, 기본통신서비스는 기존 통신운영자의 지분 취득에 국한됨).

말레이시아는 2009.4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부문 규제완화’에 따라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중진 최소 30%) 제한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동 분야의 중국계 및 인도계 내국인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도 금융, 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장벽을 갖고 있다.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그룹 Ⅲ에 포함

되어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 없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50% 이상의 소유는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경영참여에 한하고 직업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국인에게 요구되는 각종 요건(자격증 취득 등)의 충족과 태국거주, 노동허가 취득 등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이 49% 이하인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이 100%를 투자하고도 51%의 지분을 태국인의 명의를 빌어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통신분야는 IMF와의 합의에서 민영화를 약속했지만, 기존 업체외 제3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방식에 있어서도 시설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전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경쟁)은 2006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2001.11월에 「통신서비스법」을 개정하여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허용 한도를 49%에서 25%로 축소시켰으나 기존 업체의 반발로 다시 49%로 환원되었다.

한편 건설분야에서 외국 건설회사는 등록을 해야 하고 태국 내에서 사업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태국 내에서 건축사나 엔지니어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태국은 외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때 等級分類(billing rate)에 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관광안내원 직종은 외국인에게 미개방되어 있으며, 컴퓨터관련서비스, 음반제작 등 시청각서비스, 외항화물수송, 화물운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라 방송매체, 엔지니어,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와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민간경호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는 라디오 통신의 경우 20%까지 허용되고,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이 25%까지 허용되며, 광고업은 30%,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은 40%까지 허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5월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대통령령 No.44 2016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창조경제 등의 경쟁력확보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역량 강화(직업훈련)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추가 개방을 하였다. 그러나 무역, 관광, 창조경제, 교통, 운송, 정보통신, 금융, 은행, 노동, 교육, 보건 분야의 143개 업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존재한다.

개정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녹음스튜디오, 배급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는 등 영화산업에 대한 개방 확대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다. 다만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등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한(국내투자만 허용, ASEAN 회원국 투자는 51%까지 허용)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레스토랑, 바, 카페 등 일반 식음료 업종과 수영, 축구 등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으며,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박시설 등도 외국인 지분을 상한이 67%까지로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소매업(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 포함)에 대해 100% 국내투자만 허용하고 있으나, 쇼핑몰 내에 위치하는 면적 400~2,000m²의 백화점은 무역부(Ministry of Trade)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분율은 67%까지 허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통신 서비스(전자상거래 포함) 하위 분야별로 다른 제한을 하고 있다. 먼저 공영 TV·라디오는 국내 방송사 독점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잡지·뉴스레터(보도) 발행은 국내투자만 허용하고 있고, 라디오·위성케도 주파수 스펙트럼 관측소 관리·운영도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며, 지역 방송국(라디오·TV), 인터넷 카페,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의 국내 중소기업과 조합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간 방송국과 가입제 방송국(KBLI 60202)은 사업 확장시에만 외국인투자를 20%까지 허용하며, 우편(POS)은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허용하고, 유·무선·위성통신, 통신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망 운영, 콘텐츠, 콜센터 및 기타 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공급, 데이터통신시스템,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NAP) 및 기타 인터넷서비스는 외국인 지분율을 67%까지 허용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야(플랫폼 기반 마켓플레이스, daily deals, 가격비교, 온라인광고)는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었으나 개정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투자금이 1천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 외국인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며, 투자금이 1천억 루피아 미만일 때에는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허용한다. 한편, 온라인 정보 및 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Law No. 11 of 2008)과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공급에 관한 정부규정 82호(Reg 82 of 2012, 2012.10. 시행)에 따라 '대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운영자'들은 데이터센터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두어야 하는 Data Localization 의무를 가진다.

베트남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투자법」에 따라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사립탐정, 조사 등),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등)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라디오·TV 방송, 문화 상품의 생산·출판·배급, 원거리 통신망 설치·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공공 우편망 건설·우편 및 속달 서비스 제공, 내륙부두·해안부두·공항터미널·비행장 건설·운영, 철도·항공·육로·해로·내륙수로 여객·화물 운송, 부동산 경영업, 수출·수입·유통 분야 영업, 교육·훈련, 병원·진료시설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조건부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공항의 건설·상업적 운영, 운송수단의 건설·상업적 운영, 국가 항구의 건설·상업적 운영, 석유 탐사·채취·공정, 광물 탐사·채취·공정, 라디오·TV 방송, 카지노의 상업적 운영, 대학 기관 설립, 해상교통의 상업적 운영, 우편·배달, 텔레커뮤니케이션·인터넷 서비스용 네트워크 구축·공급, 전파전송 네트워크 구축, 신문·인쇄매체의 인쇄·배급·출판, 독립적 과학 연구 기관의 설립, 철도·도로·내부수로 하부 구조의 건설(15,000억 VND이상)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총리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한편 한·베트남 FTA가 2015.12.20일 발효됨에 따라 향후 베트남의 서비스 장벽이 크게 완화되어 우리 서비스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협상에서 베트남측은 건설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금융 및 통신 분야의 교역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무엇보다 포지티브 방식의 양허표를 네거티브방식의 유보목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협상 성과이다.

라오스는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금지되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관광업에서는 호텔(3성급 이상)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반면,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고 있고, 관광안내업의 경우 합작투자만 허용한다.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인적자원 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 보건과 같은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국적 변호사가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고 라오스인이 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법인이 라오스 국영기업 또는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합작회사의 외국인지분율은 2017년까지 49%로 제한되며, 이후부터는 60%까지 허용된다.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인력 고용시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더라도 외국인 인력 채용에 제한(노무직은 전체 고용인력의 15%까지, 사무직인 경우 전체 고용인력의 25%까지 허용)이 있다(단, 전문성·업무경험 측면에서 라오스 국민 대신 해외 인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고용 가능). 2016년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해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에 동 법이 공포되면 라오스의 서비스·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는 우편·통신, 항공, 철도, 은행·보험, 방송·TV, 전력생산 등의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며, 동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운은 미얀마 국영기업(Myanmar Five Star Line)이 독점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있다. 복권, 도박, Business of Chit Fund(우리나라의 계(契)와 유사한 금융), Nidhi Company(신용조합의 일종), 그 외 민간투자 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며,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단, 신규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 및 자동승인), 공항(기존공항에 대한 투자로 외국인 지분율이 74% 이상인 경우), 택배서비스, 신용정보제공(외국인 지분을 제한 74%), 출판매체(뉴스·시사분야는 외국인 지분을 제한 26%, 과학, 전문잡지는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 유무선통신사업(외국인 지분을 100%인 경우), 소기업 생산품 거래, 위성설치 및 운영(외국인 지분을 제한 74%), 사설경비업(외국인 지분을 제한 74%)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보험(외국인 지분을 제한 49%), 국내 정기선항공(외국인 지분을 제한 49%), 전세기, 화물기, 비정기노선항공(외국인 지분을 제한 74%), 유무선통신사업(외국인 지분을 49% 이내인 경우)은 자동승인대상이나 외국인지분상의 제한이 있다.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은 단일브랜드의 경우 100%, 복수브랜드의 경우 51%까지 허용되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사의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불리하다.

뉴질랜드는 건설, 교육(초·중·고등), 환경, 금융, 의료, 관광, 해운 등의 분야에 있어 특별한 장벽이 없으나 항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경우 국제선 운항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로 제한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기존 외국인 지분을 제한, 정부 승인 요건 등이 2011년부터 폐지되고 일반적인 사업투자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 서비스의 경우, 의사, 변호사 및 회계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으나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다.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는데, 뉴질랜드는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뉴질랜드는 FTA 협상을 통해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을 허용하고 있다.⁸⁶ 한·뉴질랜드 FTA(2015.12.20. 발효)에서 뉴질랜드는 한국의 한의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일시고용입국을 허용(직종별 쿼터 최대 50명, 체류기간 최대 3년)하였다.⁸⁷

호주는 서비스 분야 중 부동산,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 등의 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이 있다. 해운의 경우, 선박을 호주에 등록하려면 호주인이 소유주거나, 호주 운영권자에 의해 임차된 선박이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전체 35%, 개인 5%)가 있다.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TV 및 라디오 방송의 지분 중 5% 이상을 투자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경우 정부의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도 지분제한요건(상업용 TV 20%(개인 15%) 이하, 유선 TV 35%(개인 20%) 이하, 라디오방송은 지분제한이 없음)과 기타 제한사항(상업용 TV 이사회 구성 제한(외국인 20%까지 허용))을 두고 있다. 신문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 건별로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규제가 매우 심하며, 외국인 투자 한도(주요 도시 30%(개인 25%), 그 외의 소규모 도시 50% 미만)도 있다. 항공운송서비스의 경우 국내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기존 및 신규 항공사 포함)하나, 국제

86_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은 협정 상대국의 전문직서비스 또는 숙련노동을 공급하는 국민(nationals)이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의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뉴질랜드는 일시고용입국에 대해 수직 제한과 자격요건을 두고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87_ 한·뉴질랜드 FTA 「일시고용입국 관련 양국 간 서한」 참고.

선은 49%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을 허용하고 있다(Qantas 항공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는 49%, 외국 항공사의 지분 소유 한도는 35%, 1인당 지분 소유 한도는 25%). 공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까지 허용하나 개별 항공사는 5%까지만 공항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영화산업의 경우, 호주내 영화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첫째, 호주기업이 영화제작자이거나 또는 외국 제작자가 호주에 영화제작사를 설립하여 호주와 관련된 영화를 촬영할 경우 Screen Australian Administers에서 판단하여 제작비의 40% 또는 총비용의 20%를 환급해주며, 둘째, 영화 제작 규모가 총 A\$1,500만 이상 이면서 영화제작비 중 지출비용의 70%가 호주에서 사용된 경우 제작비의 12.5%를 돌려주며, 셋째, 영화의 특수효과(Post, Digital, and Visual Effects, PDV)를 A\$50만 이상 호주에서 사용한 경우 비용의 30%를 환급해 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기관별로 특별허가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의 판매, 파이프라인·교량·터널 등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는 각료회의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등은 내무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는 보건부로부터 은행, 증권업, 보험업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외국인이 전문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가는 해주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통신법(2003.11.19일 제정)」에 의거, 인터넷 교신의 추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만 한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보험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보험회사만이 보험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외국 은행 및 외국 보험사의 지사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2006년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판, 방송 등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

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송투자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운송서비스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양국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우선시된다. 건설서비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현지 건설 시장에 참여가 가능한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 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금지하고 대표사무소만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 현지법인을 설립과 카자흐스탄 은행의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의 분야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그 외에도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가보안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언론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몽골은 건축업 분야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몽골 정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이 건축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하고 있고,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에 있어 외국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2012.5.17일 「전략분야외국인투자조정법」이 몽골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이 언론, 금융,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몽골기업의 지분을 49%를 매입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49%를 초과하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 투그릭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몽골 신정부는 「전략분야외국인투자조정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여 2013.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 안정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투자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정권교체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 있어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mode 3)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 통역 등의 분야에서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신서비스는 인터넷, 위성통신 등을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엔지니어 수에 대한 제한(외국인 엔지니어 수가 내국인 엔지니어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이 있으며, 은행, 병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내국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캐나다는 문화산업,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문화산업(서적 출판·배포, 정기간행물, TV 및 라디오 방송, 영상물 배급 등)의 경우 상업적 주재에 대해 지분제한, 이사진의 국적요건 부과 등 각종 제한요건을 두거나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라디오·TV통신위원회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캐나다방송공사와 민영 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쿼터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면 프로듀서나 핵심 제작인력이 캐나다인이거나, 제작비의 75% 이상이 캐나다 자본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규제에 따라 TV의 경우 민영 방송사업자는 1일 방송시간 중 평균 60% 이상, 공영방송사업자인 캐나다방송공사는 모든 시간대에서 평균 60% 이상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 쿼터제는 MAPL(Music, Artist, Production and Lyrics)시스템에 근거하는데, 이 시스템은 캐나다 음악 실연자, 작사가, 작곡가 등이 캐나다 국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캐나다 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주당 방송시간의 35% 이상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35%를 프랑스 국적 가

수의 음악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주 당 방송시간의 65%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방송되는 대중음악의 55%이상은 프랑스어로 된 음악으로 채워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캐나다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에 따라 중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과 대형은행(자본금 C\$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상의 제한(각각 65%, 20%까지만 허용)을 하며 소형은행(자본금 C\$10억~50억)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운송서비스에서는 캐나다 국적선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가 25%로 제한되고 외국 선박의 캐나다 연안 운송을 불허하고 있다. 통신의 경우 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직접투자 20% 이내)과 이사 수 제한(외국인 20%이내), 그리고 실질적 경영자에 대한 국적요건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일부 문화산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인 출자 제한 등 부분적 투자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서적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문화정책 하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직·간접 투자를 통한 경영권 취득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의 일정부분을 재투자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되고 있다. 영상물의 제작·배급·판매는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불허하지만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수입 및 배포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화 배급사 설립 시 국제규모의 인가받은 수입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간행물의 출판·배포·판매와 관련,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전통문화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회사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 간행물의 광고 공간을 최대 18%로 제한하고 있다. 통신업과 관련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통신사업 운영자 및 관리자(Type 1 carriers) 소유는 최대 20%까지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통제하고 있다. 2015.1.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 문화산업 예외 조항(제22.6조)이 포함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는 산업⁸⁸⁾은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88_ 한·캐나다 FTA 제22.8조에서 문화산업을 가. 서적·잡지·정기간행물·신문의 출판·배포·판매, 나. 영화·비디오의 제작·배포·판매·상영, 다. 오디오·비디오 음악의 제작·배포·판매·상영, 라. 음악의 발행·배포·판매, 마. 무선통신, 바. 라디오·텔레비전·케이블 방송사업, 사. 위

한편, 한·케나다 FTA에서 양국은 계약서비스공급자(CSS) 22개 직종과 독립전문가(IP) 4개 직종의 이동을 약속하여 향후 양국간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 활성화가 예상된다.

멕시코는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건설의 경우 멕시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라는 조건이 붙는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국영기업은 멕시코의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요건(2010.10월 기준, 모든 금융관련 기능 수행 상업은행은 90백만 UDIS(약 20백만 달러),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36백만 UDIS(약 8백만 달러))가 부여되며 상업은행의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100%, 비체결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은행증권위원회(CNBV)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법인 설립 조건에 더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와 재무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다.

2012.12월에 출범한 멕시코 신정부(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는 멕시코 개혁정책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통신 및 방송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각각 100% 및 49%까지 허용하는 개혁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13.8월에는 석유 탐사·개발 분야에 대해 이익분배계약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석유 판매 및 전력 송배전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다양한 무역·투자 장벽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 분야를 보면, 멕시코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쿼터 규정

성 프로그램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은 없고,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프로그램의 스페인어 프로그램 쿼터를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수입 허가와 관련해서 멕시코 방송시장에서 해외 프로그램 수입시 특별한 검열이나 정부의 규제사항은 없다. 다만 폭력성과 선전성이 심하거나 멕시코 사회문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내무성의 규제를 받게 되나, 해외 프로그램도 국내 프로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검열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해, 방송사 프로그램의 20% 이상이 외주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의 프로그램일 때 광고 시간을 5%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법규정(Reglamento)에서 정한 시간에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및 TV 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 아동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원하고, 창의성, 가족의 통합, 인류의 연대(human solidarity)를 북돋고, 국가적 가치의 이해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제공, 아동의 과학, 예술, 사회적 관심을 촉진시킬 의무사항이 있다. 그 외에도 라디오 및 TV 방송국은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최대 30분까지 교육적, 문화적 내용 및 사회지향성을 띠는 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무료 방송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방송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의 광고 방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케이블, 위성 텔레비전 채널은 1시간 당 6분, 텔레비전의 경우 하루 방송분량의 18%까지, 라디오의 경우는 하루 방송분량의 40%까지 광고방송이 가능하다. 또한 소수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는 방송 시작시 경고해야 한다. 영화분야에서 멕시코 정부는 투자제한, 상영허가, 자국영화 상영 권장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당초 멕시코는 모든 극장의 상영시간 30%(연간단위로 산정)는 멕시코 영내외의 멕시코인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스크린 쿼터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협정 이행을 위해 1992년 「연방영화법」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를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1997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의 폐지로 멕시코영화의 상영 편수가 1990년 80편에서 1998년 10편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997년 개정된 「신연방영화법」을 통해 스크린쿼터제(10%)를 부활시켰고, 1998년 10%(37일)에서 2001년 30%까지 연차적 증가를 권장사항으로 채택하였으나 강제

성이 없는 권장 규정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화제작사 설립에 대해 멕시코는 기업의 자본금 49%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배우조합은 멕시코인이 기존의 활동에 고용된 모든 외국인들 만큼 고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영화 상영(film screening)은 내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의 배급은 국가영화자료원(National Film Library)에 수입된 영화의 카피본을 기부해야만 하며, 멕시코에서 상영될 카피본의 카피 작업은 멕시코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테말라는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육상 운송회사는 40%, 항공운송회사는 49%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있었으나 2004.1.1일 동 제한이 철폐되었다. 그 외에도 과테말라는 보험,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카지노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있다.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가이드 및 카지노딜러는 국적요건이 부과된다. 그 외에 공공서비스,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특별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업과 보험업의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약에서 채택된 최종의정서 내용에 기초하여 1995.11.20. 개정된 「신투자법(법률16-95)」을 통해 과거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았던 공공서비스, 광업, 금융업, 운송업 등의 분야를 개방한 바 있다.

브라질은 WTO 통신서비스협정, 금융서비스협정 등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적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 적용, 특정분야에 있어서 외국자본 참여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참여지분제한은 존재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1996년 외국인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 절대다수 지분보유는 불허), 1997년에는 국영전화회사인 Telebras가 외국인 지분참여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이 있어 신규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를 브라질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국(ANATEL)의 품질 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청각서비스에 있어서 브라질은 모든 영화, TV제작물은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하고 영화, TV의 컬러인쇄물은 직접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영화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도(1개 상영관 최소 35일, 연간 2개 이상 국산영화 상영)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영화산업진흥을 위해 2002년에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 영화진흥위원회(Acine)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영화, 외국연예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물에 일정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 동 기금을 국내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 TV분야에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금지해 왔으나 2002년부터 외국인투자지분 제한(30%까지 허용)과 프로그램 편성 비율 제한(국내제작 프로그램 80% 이상)을 두고 허용을 하였다. 외국인이 브라질의 유선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분제한은 49%이며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가지고 있고 10년간의 영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된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1999년 브라질 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 제한을 철폐함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들, 특히 미국 보험회사들은 기존 브라질 내에 설립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재보험은 브라질 정부소유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 왔으나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 2007.1월)」에 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이 해제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 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1997년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을

하였지만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는 개개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은 육상화물운송, 연안해상운송, 국내항공운송 분야에서 의결권의 25%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부가 제한을 두고 있다. 보건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브라질 「헌법」에 따라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7.3.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서비스, 의약소매 및 개인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송수신서비스, 도시간열차승객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도로건설사업에 있어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인 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양허하였으나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투자법(Law 21382/1993)」 및 「대통령령(Decree 1853/1993)」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가 없으며 공공서비스, 우편, 전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등 특정 분야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콰도르는 외국기업이 원유 해상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라디오, TV 방송서비스의 외국인 투자 한도는 25% 이내로 제한된다.

파나마는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완전개방하고 있고 현재 전기, 통신, 항만 등의 국영기업 중 대부분을 외국기업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다만, 공공서비스(수도·전기·전화·방송), 금융서비스(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 분야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

(초·중·고등학교) 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대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파나마에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파나마도 「노동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종업원 수의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직·기술자 등 파나마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을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온두라스는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공중보건, 환경보호 관련 투자는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요구한다. 또한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 송전·판매, 항공운송, 보험·금융업, 사교육업 등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두라스도 현지인 고용 의무(총 고용인원의 90%)가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 측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서비스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외국 기업의 진출에 특별한 장벽이 없으나 일부 분야에 제한이 있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파라과이(내륙국가)간을 운항하는 바지선은 파라과이 국적선으로 제한되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공사(COPACO)가 독점하며 무선통신분야는 외국인 지분제한 50%로 개방되어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차별대우가 없다.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학교장에 대한 국적요건(파라과이 인으로 제한) 외에는 외국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그 외에 송전망 운영에 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을 하는 등 제한사항이 있다.

우루과이는 보험 및 은행업,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독점인 유선전화, 전기·수도·가스 등도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소유자는 우루과이 내에 거주하는 우루과이 국민으로 제한된다.

칠레는 서비스 무역에 있어 WTO GATS 상의 양허사항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고용창출, local inputs 사용도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이 대중매체에 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안운송업(900 톤 이상의 화물운송업만 허용), 항공업(대표 국적요건, 칠레 내 본사 설치 요건), 방송사업(대표 국적요건) 등에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가 있다.

콜롬비아는 금융, 정보통신, 회계·감사, 에너지 및 관광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진 국가이다. 반면,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할 것이 요구되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정보처리사업의 경우 상업적 주체가 요구되며, 보험업은 외국인 지분을 100%를 허용하고 있지만 콜롬비아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를 거쳐야 하며 회계, 부기(bookkeeping),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 업체는 외국인이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를 넘을 수 없다. 광고분야는 내·외국 광고방영 비율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며 광고 방송요금도 동일하다.

방송분야에서는 외국 방송물 방송제한 규정이 있다(외국 방송물은 프라임 타임에는 30%이내, 기타 시간대에는 50% 이내에서 허용). 영화 및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쿼터를 두고 있고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출연배우의 90%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일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로 인정한다.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이는 콜롬비아의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콜백(callback)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고 라이선스 비용이

높으며, 유·무선위성시스템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있어 ENT 절차가 있다. 기간통신서비스 중 캐리어(carrier), 국내·외전화,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상한이 70%이며 PCS 시장은 2003년 통신시장 개방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석유탐사 및 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의 독자적 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주재국 국영석유공사인 Ecopetrol과의 합작사업 형태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페루는 방송매체의 경우 페루인이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 및 경비,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업 등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해운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 그리고 해운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경우,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의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메스미디어(TV 방송, 라디오 방송, 현지어 신문)와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고용인원 10명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에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종업원 증원 계획을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하며,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케이블 TV의 경우 지분 제한이 없다. 여타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도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장법」에 따라 총인원수 기준 90%, 총임금 기준 85% 이상을 엘살바도르인으로 고용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 면에서 외국 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5년 이내에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는 2007.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13.1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컨테이너 보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영화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2013.5월 「민관파트너쉽법」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외국기업이 공공서비스(단, 보건, 치안, 교육 등 일부 분야는 제외), 국가인프라 건설 투자에 합작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과거 통신서비스와 보험서비스가 국가의 독점사업이었으나 CAFTA-DR 관련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터넷서비스와 무선통신서비스 등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고, 보험서비스업은 2011년 완전히 개방되었다. 현재 코스타리카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의 경우,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외국인이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제한(49%까지만 허용)이 있다. 국내선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 면허는 외국인투자기업보다 자국민 또는 자국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해운운송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한편, CAFTA-DR 협정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지를 둔 기업도 코스타리카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항공사와 은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코스타리카에 소재지를 두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 수준이 낮았으나 2005.12월 WTO 가입과 함께 다수의 부문에서 상당한 개방을 약속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이 50% 미만으로 제한되었던 보험,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분제한 완화가 이루어졌다. 2010.9월 기준 주요 업종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은 보험업이 60%, 금융업이 70%, 통신서비스업이 70%, 도소매업이 75%이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요건과 함께 최소자본금요건(보험회사 1억 리알, 재보험회사 2억 리알, 두 가지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3억 리알)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2007.3월에는 그동안 외국인투자를 불허하던 영화·비디오테이프 유통, 도소매 유통서비스(의약소매업 및 개인 약국 포함), 상업 대리점, 도시간 열차 여객운송, 항공운송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파키스탄은 2004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본금 적립 요건, 과실송금 제한 등을 철폐하였으며 최소투자금(비금융 서비스분야 15만 달러,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 30만 달러) 요건을 충족하면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의해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유무선 통신서비스 모두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따라 현재 81% 이상의 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다. 외국은행은 50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거나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지역기구(SAARC, ECO 등)의 가맹국에 본점을 둔 경우 파키스탄 내에 100% 지분을 보유한 지사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외국은행은 파키스탄 국내은행과 합작(지분 상한은 최대 49%)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최소 지불준비금 100억 루피(약 1억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소 투자자본 요건(200만 달러 이상)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51%이다.

이란은 화물운송에 있어 이란 국적 기업 우대제도가 있다. 해운의 경우, 500mt 이상의 화물을 수입할 때 외국 선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주가 화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무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국적선을 우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10년에 개정된 「외국인자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경제상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며 보건, 교육, 관광, 컨설팅·기술·IT·문

화·스포츠·여가·유통 분야에 단독투자(100% 지분보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 분야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으며, 「법 No.8(2002)」에 따라 외국인은 상업대리점업에 종사할 수 없다.

UAE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경제개발부(DED), 관광청, 산업단지관리청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면허(Business Licensing)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면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유통업, 은행·보험업, 호텔업, 운송업 등은 상업면허(Commercial License)를, 회계·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와 예능서비스 기업은 전문면허(Professional License)를 받아야 하며, 호텔업, 숙박업, 여행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광면허(Tourism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제조업 기업은 산업면허(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프리존 안에서는 사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사업면허(Service License, Trading License, Industr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UAE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소유권, 경영진·이사회,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 UAE에서 사업 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쿠웨이트의 경우 외국 건설회사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영업(P/Q, 입찰, 시공 등)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수입·송출 및 장비·자재 수출입도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쿠웨이트 제조업체의 독과점이 허용되어 쿠웨이트 현지나 GCC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보다 10~20% 더 비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인력취업문제가 대두되어 일정수의 현지 인력고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여제한, 벌금부과 및 외국인력 채용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2003.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은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을 49%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50% 이상 취득시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하였으나, 2004년 동 제한이 철폐되어 외국인이 쿠웨이트 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멘은 외국인이 이동통신서비스(국제위성개인이동통신서비스 포함) 및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규제는 없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국 변호사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서비스는 외국인이 제반 요건(예멘인 회계사 1인 이상과 공동설립, 예멘 당국에 모든 파트너 등록, 임원 중 예멘인 1명 이상 포함, 기타 직원의 2/3 이상 예멘인으로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감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예멘은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은 허용하나 소매업의 외국인투자는 허용하지 않으며,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5%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오만은 WTO 회원국에 대해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상공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 분야에 100% 단독 출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오만에서는 동일 국적의 은행은 2개 까지만 설립이 가능하며, 은행 설립시 최소자본금은 1,300만 달러 이상으로 제한된다.

요르단은 IT, 리스, 은행 및 보험, 병원, 호텔, 통신, 환경, 케이터링, 선박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하고 있으며, 건설, 도소매, 운송, 폐기물 처리, 수출입서비스, 환전, 식당, 광고 등은 외국인 투자를 5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 및 시설탐정,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 도로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바레인은 제1종 우편이 정부 독점이며, 도박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금지된다. 그리고 부기·회계 서비스(회계감사 제외), 경주용차량 연료 판매, 화물 통관은 바레인 국민과 바레인 기업에게만 허용을 하며 외국인 투자는 금지된다. 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건물의 임대·관리, 언론사와 출판사, TV·라디오·영화의 제작·관리·배급, 운수, 해양크루즈, 운전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터카, 콜택시, 석유제품판매(주유소 등), 공공기관 행정지원서비스, 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외국인 노동력 공급, 상업신흥소 등은 바레인을 포함한 GCC 국민·기업에게만 영업을 허가한다. 그동안 바레인은 숙박, 요식, 행정서비스, 관광·레저, 예술, 보건, 사회복지, 정보통신기술, 제조, 채석·채굴, 과학·기술, 상수도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제한해 왔으나 2016.5월 「2001 기업법(2001

Commercial Companies Law)이 개정되면서 동 분야에 대한 국인 지분을 제한이 철폐되었다. 또한 바레인은 2006년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을 철폐하였다. 한편 바레인은 자국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인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가 면제되거나 10% 내외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25~30%의 자국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레바논은 여타 중동국가와 다르게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레바논은 자국의 정치적 불안정 요인을 고려하여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를 설립하였으며,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건당 최고 5,000만 달러까지 보상)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통신서비스 분야에 있어 외국인 지분 상한(국제전화 74%, 휴대전화 80%, 케이블TV 74%)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은행업의 경우 지점 설립시 이스라엘 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임원의 국적요건(이사의 2/3가 이스라엘 영주권자) 및 CEO의 거주요건(항구적인 이스라엘 거주자) 등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에 자본비율에 관한 규제 및 국제거래에 관한 규제는 없다. 관광업의 경우 호텔, 여행사에 대한 등록요건이 있으며 여행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인한 여행에 관한 전문가를 최소한 1명 고용해야 한다.

가나는 노점상, 시장소매상 등에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며 유통업에 대해서는 가나인과의 합작투자만 허용(외국인 100만 달러 이상 투자 및 가나인 지분 30% 이상 보유 요구)된다. 이미용업, 도박·복권업 등과 같은 업종과 회계, 세무, 법무 등 고급 지식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25대 이하)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다. 가나에서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나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프라

분야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크지 않으나, 자금조달(financing), 가나 정부측 절차진행, 세금 과다 부과 등이 사업 진행의 큰 관건이 되고 있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2016.8월말 현재 Vodafone, MTN, Tigo, Expresso, Airtel, Glo 등 6개의 이동통신사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은 충분히 활성화되어있으나 가나 정부에 의한 추가 사업자 선정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제는 통신청(NCA)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으나 WTO GATS에 의한 양허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시장은 과거 인종차별정책 및 무역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렵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3.9월 SADC 서비스 무역자유화 의정서(SADC Protocol on Trade in Service)를 비준하였다. 동 의정서는 SADC 회원국간 서비스 분야 개발, 투자 촉진 및 건설, 교통, 에너지, 관광 분야 등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영전화회사(Telkom)가 독점을 하고 있으며 Telkom의 최대주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51%의 지분(직접 39.8%, 여타 지분은 공공투자공사를 통한 간접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선통신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유선통신시장 독점으로 인해 통신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은 Vodacom, MTN, Cell C 등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 위성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계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매우 높은 사업면허 취득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주요 국내 및 유럽계 외국기업(Makro, SPAR, Woolworth 등)의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유통망 외에 새로 유통망을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

케냐는 보험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각각 66.7%와 70%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언론 분야에도 지분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케냐는 나이로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75%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편, 케냐 정부는 관광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은 정부 독점이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와 합작투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은행·보험 등 금융, 방송, 법률, 재래 의학, 광고, 운송 등은 에티오피아 국민만이 투자할 수 있다.

리비아는 건설시장에 많은 제한이 있다. 리비아 정부는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해 2006.11월부터 토목건축분야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기업과 합작법인(최소자본금 100만LD 이상)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최대 6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⁸⁹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리비아 발주처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사계약금액의 2.0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리비아에서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공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산업경제통상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및 국영석유회사(NOC) 등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참여대상 공사의 종류, 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의 제한이 있다. 그리고 외국 건설인력은 비자와 함께 공사별로 업체에 부여되는 외국 건설인력의 사용 허가증인 'Form B'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와 Form B의 유효기간이 통상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이집트는 여타 국가와 달리 「통합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한정하여 발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동 법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총 24개이며 이중 서비스분야는 호텔, 국제해운, 항공운송, 금융리스 등 다양하다.

모로코 정부는 1993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통신, 금융, 운송, 유통 등 서비스 분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기

89_ 특별한 경우 발주처가 총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지사를 설립하여 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업 지분을 외국기업에 매각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 보험 등은 특수 규정과 절차가 적용된다. 모로코는 자국 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300명 이상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모로코 기술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보건, 여행업,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는데, 외국 회계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회계법인에서 근무해야만 코트디부아르 회계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국적요건이 부여되지 않으나 변호사로 등록하거나 법정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이 있어야 한다.

금융서비스

개관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와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여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는 GATS에 부속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는 물론 한·미 FTA와 TPP에서도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장벽은 이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협정에 위반되는 당사국의 조치이다. 시장접근 제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점 또는 과도한 자본금 요구 등이 그 예이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나 금융제도의 보전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볼 수 있다.

금융서비스 무역협상 동향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최초

의 다자간 협정인 GATS가 체결되었지만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1996년 7월 1차 추가협상에서도 WTO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잠정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2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됨에 따라 비로소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WTO 서비스협상은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정식 출범시킴으로써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각국의 강도 높은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각 회원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를 감안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한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WTO에서의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18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2016.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향후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한편, 2015.10월에 타결된 TPP 협정은 단순한 FTA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른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TPP 협정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으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효과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협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현황분석

EU는 과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SAP: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EU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였다. 또한, EU는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EU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2013.9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14.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2012.6월에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가 악순환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2014.11월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 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서 금융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금융기관 인가 및 취소,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6.1월부터는 부실은행 정리 및 회생을 담당하는 단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EU는 단일예금보험기구(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설립을 위한 입법안을 통해 예금보장 한도, 지급기간, 기금, 예금자정보 등에 대한 EU차원의 통합된 규율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밖에, EU는 역내 투자부진 해소와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통한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

한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 액션플랜, 공공부문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을 발표한 바 있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는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소매금융서비스의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어 통합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U의 현행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여하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면허(single passport) 원칙’, 회원국의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 인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EU의 보험서비스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EU 역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과 재보험의 국경간 공급은 개별 EU 회원국의 WTO 양허나 EU가 체결한 FTA의 국별 양허를 따른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2016.10월 기준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은 국내은행 5개, 외국은행 120개로 총 125개에 이른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에는 머천트 은행 33개, 보험회사 182개, 보험브로커 77개, 증권회사 143개, 선물회사 70개, 펀드메니지먼트사 269개 등이 영업 중에 있다.

싱가포르의 은행업은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이 존재한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25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비은행 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가포르달러 업무에 제한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 및 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 신청에 대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조건, 위안화 업무 제한 등 많은 부분에서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营业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 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 자산이 200억 달러 이상, 현지법인의 경우는 대주주가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며 BIS 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점포확장 속도 둔화로 외국계 은행의 중국내 영업 확장과 현지화 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은행업은 WTO 가입 이후 2006년에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에 따른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은행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이때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

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 시 총행은 1억 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①신청 전 중화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②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③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이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말부터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예대비율이 75% 이하로 규제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어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외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업의 경우 QFII제도 도입(2002.11월), 비유통주 개혁(2005.4월) 등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외자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에 따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외국계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12월)으로 영업범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가능하고, 지분취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이 외국사에게도 허용되었으나 감독당국의 별도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베트남에는 현재 국영은행 5개, 민영상업은행 35개, 합작투자은행 4개, 외국계은행 5개 등 총 50여개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 외국 신용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한·베트남 투자협정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 신청 직전년도 총자산이 100억 USD 이상일 것, ② 사업 건전성과 인허가 신청직전 연속적인 흑자를 달성 할 것, ③ 신청기관이 은행일 경우 국제신용등급을 보유하고 부실자산의 비율이 3%이하 일 것, ④ 본점에서 허가받은 업무와 인허가 신청 업무가 동일할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단, 그 밖의 조건들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또한, 신용기관 설립 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12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다.

2015년 베트남 중앙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를 포함)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30/2015/TT-NHNN호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베트남의 시중은행은 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의 창립주주(발기인)가 되기 위해 100조 동(VND)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각종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시중은행이 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의 창립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 설립등기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은행운영 안전보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은행 및 금융 분야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자본금 출처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질 것,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는 중인 다른 금융기관의 전략적 주주, 발기주주, 지배주주가 되지 말 것, 비은행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재정능력을 갖추 것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기업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창립주주가 되기 위해 자기자본금요건(최소 5,000억 동(VND) 이상)과 자산요건(비은행 금융기관 설립등기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총 자산이 1조 동(VND)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이 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의 창립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흑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설립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달러(USD) 이상이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로는 한국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이 현지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 금융회사의 인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포함한 4개의 우리나라 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 15개 금융회사가 진출해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은행산업 중심의 구조로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주식 시장은 개인에 비해 기관 및 외국인 매매 비중이 높으며 국영 및 외국계 증권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인프라개발로 인해

보험시장도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손해보험시장의 구조는 전형적인 Captive Market으로서 과도한 사업비 집행비율 등으로 인해 외국계 보험사의 성장에 제한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에서 일본 등의 외국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보험사를 인수·합병 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위원회(OJK)는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은행(총 118개)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에게는 2개 이상의 중소형 부실 은행의 인수/합병을 통해서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는 등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한 단일 주체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지분 40%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을 받는 단일 주체는 비단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연인이나 인도네시아 회사도 포함된다. 또한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합작 투자(조인트 벤처) 또는 지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해야만 한다. 다만 민간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이 49%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2013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은행이 신규 규정을 채택하면서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2014년 9월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모든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현지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도에서는 2016.11월 초 기준으로 46개의 외국계 은행이 300개 이상 지점 설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 중에서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는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은행들로 각각 102개, 50개, 50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등과 같은 몇몇 대규모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킨 바 있는데, 이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의 합병하면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었다.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진다. 인도는 보험업 규제를 위하여 과거 2000년에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를 설립한 바 있다. 인도에는 2015.10월 기준으로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민영보험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보험산업이 고성장(연평균 15~20%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매우 높아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5.8월부터는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가 49%(과거 26%)로 상향조정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브라질 은행산업은 낮은 국제화 수준을 보이는데, 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현지통화(헤알화)로 표시되어야 하고 국내 시장에서 외국 통화를 이용한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은행의 신용공급이 둔화되자, 브라질 정부는 공공은행에 재정자금을 대출하여 신용공급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적인 재정확대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은행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브라질에는 2014.6.30.을 기준으로 총 176개의 은행이 있으며 전체금융기관 수(1,995개)의 8.8%를 차지한다. 외국계 은행은 SANTANDER, HSBC 등 54개 은행이 영업 중이다. 우리나라 은행은 2013년을 기준으로 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이상 3개 은행이 브라질 현지에서 영업 중이다.

브라질의 보험업은 남미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남미 최대 보험시장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왔던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 독점체제를 무너뜨렸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 시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브라질이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어 구조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수의 브로커가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멕시코는 1993년 NAFTA 체결 당시 약속한 금융부문의 전면적인 자유화 조치와 1994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및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998년 말까지 대부분의 멕시코 금융회사들이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어 현재 멕시코 금융 분야의 외국계 자본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 이러한 외국계 은행의 참여는 멕시코 금융 분야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선진금융권의 경영방식 및 위기관리기법 등 도입을 통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금융서비스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 의해 외국의 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멕시코의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 요건(2010.10월 기준, 모든 금융관련 기능 수행 상업은행은 90백만 UDIS(약 20백만 달러),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36백만 UDIS(약 8백만 달러))이 있다. 상업은행의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100%, 비체결 국가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은행증권위원회(CNBV)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법인 설립조건과 더불어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 및 재무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최소자본금 요건은 없다.

독일의 금융산업 및 보험시장의 규모는 유럽 최대 수준이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의 경우 상장기업 수가 약 620여개, 시가 총액이 약 1조 6천억 유로 규모이다. 특히, 지난 2016.6.23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되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룩셈부르크, 더블린 등과 더불어 영국의 런던을 이을 차기 금융중심지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런던 금융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은행의 소규모·고밀도 지점망과 공영은행의 높은 시장 점유율은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독일 정부는 지

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 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독일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universal banking system)하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이 제외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다. 한편, 2010년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독일이 공매도금지조치를 가장 먼저 취했다.

독일은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에 대해 특별한 장벽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진출 주요 외국계 은행으로는 Bank of America, Citybank, Chase Bank, ABN ANRO Bank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지법인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에도 아시아계 외국은행으로는 일본 8개, 중국 4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캐나다는 「연방은행법(Bank Act)」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및 지분소유 등을 제한하였으나, 2001년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이 시행되면서 지분취득 제한의 완화·철폐가 이루어졌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의 금융기관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를 불허하고 현지법인(자회사) 설립만을 허용하지만 현지법인 설립 시 개별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등록 기간 3년, 무기한 갱신 가능)하여야 하며, 대표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연구·국제협력증진 등으로 제한된다.

러시아 보험업은 「러시아연방 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2013.9.1일부터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외국 보험회사는 현지법인(자회사) 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으며, 외국자본이 러시아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고(WTO 가입에 따라

50%), 이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WTO 가입 후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는 외국회사의 러시아 지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금융기관은 2016.8.31일 기준으로 총 610개이며, 이 중 외국인지분 50% 초과 기업이 99개, 100%인 기업은 68개이다.

투 자

개관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pre-establishment) 단계와 설립 후(post-establishment)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으며 유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합작투자를 요구하거나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또한 설립 전 단계에서 법인의 설치뿐만 아니라 법률적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지점이나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편 설립 전 단계의 실질적인 장벽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현지부품 사용의무, 기술이전 의무, 수출의무, 외환수지의무, 현지인 고용 및 교육훈련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외 투자에 필수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의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도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경영상 문제점들도 장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체류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 중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실상 불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것도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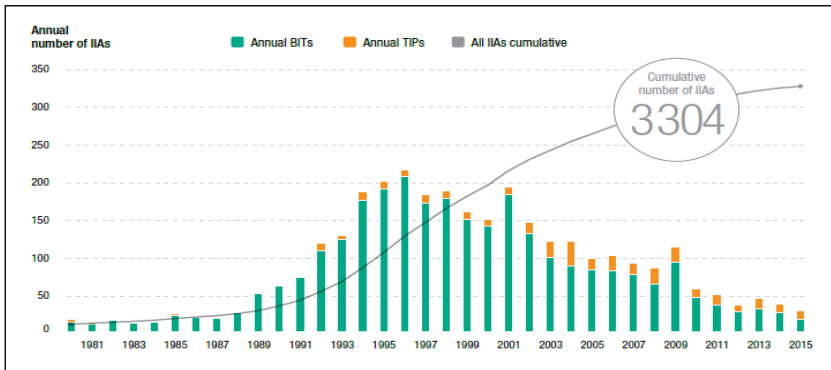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이해상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⁹⁰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제투자규범은 이들 주체간의 이행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90_ 예를 들면, 이전가격의 설정, 반경쟁, 반고용, 환경침해 등이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투자규범이라 볼 수 있는 규범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양자간 상호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자간투자협정(BIT)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국제투자규범의 한 유형으로 World Investment Report(2016, p.101)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그 수가 2,946개이며,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협정까지 포함한 국제투자협정(IIA)은 3,304개에 달한다. 그리고 WTO 체제에서도 국제투자과 관련된 규범으로 TRIMs와 GATS가 있으며, 이외 OECD, APEC, NAFTA, ASEAN 등의 경제협력체들도 회원국에 적용되는 투자 준칙이 있다.

》 전 세계 국제투자협정 현황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p. 101.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국제투자규범들은 투자자에게 안정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뿐 세계 투자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외국인 투자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국제투자규범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규범의 포괄성과 구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1998년 말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불완전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MAI협상의 결렬 이후 WTO에서 무역투자 작업반을 중심으로 다자간투자규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등이 WTO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997년 WTO에 무역투자 작업반이 설치된 이후 7년 동안 WTO 차원에서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2001년 도하 각료회의 그리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WTO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협상개시가 합의되지 못했다. 또한, 향후 WTO 투자협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요국의 투자장벽을 설립 전 단계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업종선택은 물론 외국인의 지분과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투자장벽의 해소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발적인 투자자유화와 기존의 국제투자규범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할 투자장벽들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극복노력도 이러한 틀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 주요국별 투자장벽(설립 전 단계)

국가	투자장벽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
EU	제3국 투자자는 EU서비스공급자에게 반드시 내국민대우 부여
중국	투자금지과 제한규정 자의적 / 외국기업 사무소 설치 허가제
베트남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등 네 가지 범주에 대한 투자 제한 / 국가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등 다수의 분야에서 조건부 투자 허용
인도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신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 / 외국기업의 부동산 사용은 실질적으로 장기임대만 가능
캐나다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기업 인수 시 사전 통지 및 심사 / 문화산업 및 금융 외국인지분율 제한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와 자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아래에서는 국별 주요 투자장벽의 현황을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로 나누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이때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 부과, 부동산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제한 등으로,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한, 인력의 현지파견 제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황 분석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세계 각국은 외국인투자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각국의 투자제한업종은 많이 축소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은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라 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MAI와 같이 포괄적으로 설립 전 단계의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제한업종의 철폐는 전적으로 투자자유치국의 정책에 달려 있으며 투자자유치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만큼 각 국가별로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 중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나,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의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①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②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③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 ④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질랜드달러 초과하는 사업투자의 경우 뉴질랜드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①토지의 총 면적이 5ha(5만 m^2) 초과, ②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천 m^2 초과, ③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④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천 m^2 초과, ⑤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⑥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천 m^2 초과하는 토지 투자 역시 뉴질랜드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있으나, 통신, 에너지, 운송 및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등 일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규제이며, 이는 1988년 「종합무역법」 제5021조(Exon-Florio Amendment)를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거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은 자국의 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집행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8.11월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규정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조사대상을 외국인에 의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을 운영한 결과를 가져오는

Covered Transaction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검토기간은 30일, 조사기간은 45일로 제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효율화 하였다. 상기 외국인 투자 심의제도에 따라 2009~2013년간 총 480건의 외국인투자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실제로 193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2년에 최초로 중국계 기업의 대미투자 1건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가 결정되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투자제한 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으나, 제조업 및 금융정보서비스업 분야 투자에 있어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1건 등 총 4건이 Covered Transaction으로 분류된 바 있다.

스위스는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상의 운행 등에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은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 관련 업종은 주정부(칸톤)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등 6개 제조업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 법률,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회계 서비스, 은행 및 증권업 등에는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에 대해 지분제한이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 기타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제한된 사례는 없다. EU 및 EFTA 이외 외국투자자가 군수무기, 특정 전략물자, 암호생산 관련 기업, 화학,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독일기업을 매수하거나 지분의 25%를 취득한 경우 정부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동 거래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권력 행사 및 공공질서, 안보,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은 예외가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기, 군수품, 폭발성 물질, 전쟁물자 등의 제조 및 거래에 대한 투자와 EU 비회원국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의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영국은 외국인이 금융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는 환경오염산업, 국가 독점사업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며, 그 외에 TV 무선방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약 99.7%)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EU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영화산업 보조금, EU 역외국 은행에 대한 차등적인 자본금 요구, EU 역외국 항공사의 국내노선 취항 등 분야에서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선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일부의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방 및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체코의 모든 산업분야는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군수산업, 금융·재정 분야, 보험, 방송, 미디어부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포르투갈의 경우도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수도, 우편, 철도, 항만에 대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지만,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인 「Investment Canada Act」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투자 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기업 인수 시 캐나다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하거나 허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주로 투자지분율과 관련된 제한이다. 특히 서적 출판 및 배포와 정기 간행물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직접인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간접인수 역시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호주의 경우 부동산(특히, 도시권), 금융, 항공, 해운, 통신, 언론 및 방송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2.5억 호주달러 이상 사업 또는 기업취득, 일정 금액 이상의 호주 부동산 취득, 외국 정부 산하기관의 직접투자, 매스미디어 대한 투자(단, portfolio 투자의 경우 5% 이상 지분투자 시)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국익에 반한다고 평가될 경우 투자를 허가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가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중소 및 영세 가나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Ghana Investment Promotion Centre(GIPC)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상품 판매업·서비스업, 노점상, 택시 운수업, 렌트카 영업(25대 이하), 핸드폰 충전카드 인쇄업은 가나인 전속사업으로 외국인의 투자 또는 영업이 불가하다.

과테말라는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며,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Negative List에서 석유가스와 무기, 마약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며 그 외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니카라과 역시 공공질서,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정책적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대만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금지 또는 제한 분야를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2013.6.17일 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

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경우 행정부의 명시적 권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라오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광산업의 경우 실제 개발을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여 2012.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2015년까지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한 상태이다. 2016년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허가 승인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하여야 한다.

멕시코는 「외국인투자법」(1993년 도입, 1996년 개정)에 따라 금지분야(국가안보관련 산업 등)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동 법에 따르면 총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26개 분야는 외국인투자를 금지(16개 분야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 허용, 10개는 국가에 유보)하고,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35개의 분야는 외국인출자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2014.8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에너지 개혁 부속법 안에는 「탄소법」, 「멕시코 석유공사법」, 「연방전력청법」, 「석유수입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석유공사(PEMEX) 및 자회사가 석유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해 공공입찰을 통해 민간 및 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 관련 업체들도 멕시코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탄소법」에는 석유화학 및 관련 제품의 정유, 생산, 운송, 저장, 수출, 수입 부문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며, 2016년부터는 가스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모로코는 에너지, 수자원, 철도, 운송, 광업,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사업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 보험 및 제약업 등 일부 분야에는 특수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몽골은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2.5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업, 언론, 금융, 통신 분야 등에서 외국인이 49%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지분이 49%를 초과하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 투크릭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통해 투자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레인은 우선 ①도박, 주류제조, 담배제조, 담배 자동판매기 수입, 마약 제조, 무기제조, ②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 방사선 물질 저장·투기, 유독성 물질 수입,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제조, 제한된 화학약품 수입과 산업용도로의 사용, ③제1종 우편(letter post)에 대한 영업 등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금지 되어있다. 그리고 ①부동산 서비스업과 부지와 건물 임대 및 관리, ②언론사와 출판사, TV, 영화, 라디오 연극 제작과 관리, 배포관련 업종, ③운수업, 해양 크루즈, 운전 연수, 오토바이 대여, 렌트카, 콜택시, ④석유관련 제품 공급(주유소 등), 가스분배, ⑤공공기관 행정지원 서비스, ⑥하지와 움라(이슬람 성지순례) 서비스, ⑦외국인 노동력 공급, ⑧상업홍신소(commercial agency) 등은 바레인과 GCC의 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가 된다. 마지막으로 ①어업, ②부기(book-keeping)와 회계서비스(회계감사 제외), ③레이스카 연료 수입, 수출, 판매, ④화물 통관은 바레인 내국민과 기업에만 영업이 허가된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법」상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는 현지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

베트남은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

로젝트,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등 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금융 및 은행 분야,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부동산 사업,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공적 교육 개발 분야,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된다. 2015.7.1일 베트남에서는 개정된 「투자법」이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제6조에 따르면 투자금지분야는 기존 12개 분야에서 6개로,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분야는 기존 386개에서 267개 사업 분야로 감소하는 등 베트남의 투자 장벽이 크게 완화되었다. 더불어 2015.12.20일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향후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ASEAN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하였다.

벨라루스는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등에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는 분야의 경우 경제부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다음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 군사 장비·장치·유니폼 제조, 민간 폭발물 제조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

으며, 서비스분야의 경우 군사부문 음식납품, 보안 및 탐정 서비스, 메카 및 메디나 지역 부동산 중개업, 성지순례(Hajj and Umrah) 관련 관광 여행안내 서비스,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인쇄출판업(단, 일부 항목 제외: 전처리인쇄, 인쇄기, 그림 및 서예, 사진,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 등), 일부 위탁업, 조산원·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 어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와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가 금지된다.

UAE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기업의 회사설립에 관하여 석유 및 가스 산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환경과 더불어 중동 지역 중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면서 UAE는 중동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주목받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외국회사 또는 개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UAE는 프리존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이들 프리존은 면허, 외국인 소유조건, 스폰서 지정, 자국인 고용조건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투자금지 분야는 없으며 방위산업, 공공서비스·우편·전기·가스, 교통·통신, 라디오·TV·잡지·신문, 에너지, 교육, 은행, 금융 분야로의 투자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앙골라는 2015.10월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민간투자법」을 개정, 「2015년 민간투자법」을 새로 발표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천만 달러 이하 투자는 수출투자진흥청(APIEX)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만 달러 이상 투자는 내각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앙골라 최대 산업인 석유와 관련된 탐사/개발/시추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국영석유공사(SONANGOL)와 합작하여야 한다.

에콰도르는 국가안보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문의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관련분야로의 외국자본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주관 하에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우편, 송전, 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군수 및 통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Joint Venture를 허용하고 있다. 커피, 유료 종자, 가죽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 액화 석유 가스, 역청 등의 수입, 제과, 의류, 건축 자재, 인쇄 등 다양한 품목의 제조업은 국내 투자자들에 한정되어 있다. 은행, 보험 등 금융, 방송 등 대중매체, 법률, 재래 의학, 광고 및 번역, 항공 서비스, 운송 등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가 허용된다.

엘살바도르는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14.5월 「민관파트너십법」을 개정, 동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물 사업은 제외)에 대한 국회 승인절차 간소화, 수출투자진흥청(Proesa)의 역할 강화 등 투자촉진책을 포함하였다.

온두라스는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는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개발, 일정면적 이상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온두라스 정부는 2014.7월 발효된 「전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산업을 개방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요르단은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투자제한 업종이 다수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보안 및 사설탐정, 건

축용 석재 및 골재 채취, 통관 서비스, 택시·트럭·버스 등 도로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독점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이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우 방위산업과 내무부 및 국가보안위원회 산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며, 키르기즈공화국 역시 도로건설, 보건, 군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소매분야 투자의 경우,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정유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7년)」 등에 근거하여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란은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가스 분야의 경우 2016.8월부터 국제 석유회사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이란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장기간(20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게 하는 석유계약제도(IPC: Iranian Petroleum Contract)를 발표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24개 투자허용분야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된다. 그리고 ①에너지집약 프로젝트, ②알루미늄 원료, ③메탈합금 프로젝트, ④담배산업, ⑤군수부문(국영 및 관련기업과의 합작은 가능), ⑥시나이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에 해당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다.

인도의 대부분 산업은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외

국인투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자동승인 대상이나 ①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방위산업·설비, 산업용 화약, 유해화학물질 등 강제허가업종, ②소기업 고유 업종, ③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지역에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기술·금융·상표 분야의 협력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주식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와 산업정책상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제조업 외에는 각 산업별로 투자지분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인도 정부는 2015.5.12일부로 발효하는 통합 FDI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공부(DIPP) 웹사이트⁹¹에서 공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패키지의 일환으로, 성장의 정체에 빠진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령 No.44 2016년’을 2016.5월에 공식 발효하였다.⁹² 이번 리스트는 지난 2014년 리스트에 비해 이해가 쉽도록 수정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된 투자제한리스트는 투자금지업종(20개 업종), 조건부 개방업종(145개 업종), 특정 조건부 개방업종(350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영화산업의 개방이 주목받고 있으나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등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한이 유지되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한지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

91_ http://dipp.nic.in/English/Policies/FDI_Circular_2015.pdf 참조.

92_ 리스트는 투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음.

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을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1995년 실행된 이후 6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수정되었으며, 2015년 현재 수정된 목록에 따르면 2011년 79개이던 제한 목록은 38개로 감소하였다. 더불어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합작(合資·合作) 항목은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항목은 44개에서 35개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금지목록에서 제외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담배 도매·소매는 제한목록에 명시되었으나 2015년 수정판에는 금지목록으로 변경되었고 지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되었다.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속해 있다(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의 경우 예외 적용).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2015년 수정안은 외상투자 관련 제한목록 감소 및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방면에서 과거대비 변화가 가장 큰 수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칠레는 2016.1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신규외국인투자법(제20848호)」을 발효하여 운영 중이나,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원자력 및 리튬 관련 광물개발, 연안운송업, 항공업, 방송사업, 어업, 기타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제한이 존재한다.

카타르의 경우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 분야는 2005.9월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⁹³ 동 시행령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로는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기타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된 투자가 있다.

케냐에서는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업용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만 가능하다.

코스타리카는 과거에는 통신, 보험, 석유수입 업종을 국가가 독점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었으나 CAFTA의 발효로 통신과 보험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한편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그 외에도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방위산업,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금융 및 보험, 자원개발, TV 중계 등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의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내국민대우를 받고 외국인에 의한 100% 투자가 가능하다.

쿠웨이트는 2001년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제외한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해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천연자원인 석유 생산(특히 원유 개발)에 외국기업의 독자적인 참여는 불허하고 있다.

터키의 외국인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93_ 동 시행령은 Negative List 방식으로 투자금지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튀니지는 석유정제산업, 의약품제조업(국영기업인 SIPHAT 생산), 무기, 군수품 및 탄약 제조업, 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업, 양탄자 및 용단 제사업, 양조업(맥주, 맥아, 와인), 제분업, 식용유 정제업, 협강 및 시멘트원반 제조업, 직물 분해업, 담배제조업 등은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나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 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 고도 폭발물, 화폐·조폐, 방사능 물질,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 등 5개 분야에 대해 투자진출이 제한되어 있다.

페루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고 있으나,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유해한 동식물, 국민 보건 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용역 및 경비업,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업, 운송업, 은행 및 국방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페루의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취득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리코팅 업종 제외), 엔지니어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환경설계,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 달러 미만), 민간경호회사, 소규모 광산개발업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나) 투자지분관련 제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이다.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적인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자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 중 노르웨이는 방송분야에 대한 투자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를 받지 않으면 개인투자자 1인이 국내 TV와 라디오의 지분을 1/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기업 또는 동 지분의 인수 시에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50%를 넘는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tellamt)에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보험업, 은행업, 전당포업, 경매업, 도박장 운영,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TV 및 라디오 방송은 캐나다인이 80%(모기업의 경우 66.7%) 이상 소유해야 하며, 통신(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0%, 운송(캐나다 국적기에 대한)의 외국인지분율 상한은 25%이다. 반면 에너지 및 광업 산업의 우라늄광산의 경우, 탐사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나 채굴(생산) 단계에서는 외국인에게 49%를 넘는 지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호주의 경우 항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의 외국인지분제한은 국내선 100%, 국제선의 개별 항공사는 49%, Qantas 항공은 49%(외국항공사 35%, 개인 25%)이며 공항의 외국인지분한도는 49%(개별항공사 5%)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 한도는 총지분의 35%이며, 개별 외국인투자한도는 총 지분의 5% 이하이다.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등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측면에서 투자지분을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나는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의 경우 단독투자는 20만 달러 이상, 조인트 벤처는 외국인이 5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가나인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유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만의 단독투자가 불가하며, 가나인과의 조인트 벤처만 가능하다. 가나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때에도 외국인은 100만 달러이상 투자하고, 가나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 수산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물고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치잡이 어선은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투자자가 합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내국인 파트너의 소유지분은 납입자본금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시아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절차의 지연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9년 서비스 자유화 조치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분 참여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금융산업 분야에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즉,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은 상업은행의 경우 30%, 이슬람 은행, 투자은행, 보험사의 경우 70%로 여전히 존재한다.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에는 100% 투자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나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출자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⁹⁴ 그 외에 외국인 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몽골의 경우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 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94_ 멕시코는 총 704개 분야 중 98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25%이상 즉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투자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과 선박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또는 국적선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은 2005.7월부터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지분의 60% 이상을 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광산분야는 외국인이 지분을 49%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브라질은 통신, 유전, 광산, 금융산업, 운송 분야에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이중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의 절대다수 지분 보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등 언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의결권주의 30%까지만 허용하며 그 외에도 케이블 TV는 49%까지, 국내 항공사는 25%까지 외국인의 의결권주 보유 제한을 두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분야와 국가식품안전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9%까지의 자본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지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현지 기업인과의 공동합작형식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WTO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제한조치를 완화하여 2010.9월 현재 보험업은 60%, 금융·통신 서비스업은 70%, 도소매업은 75%로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을 확대하였다.

UAE는 외국인 투자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소유의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 즉, 법인 설립 시 현지인 51%, 외국인 49%의 지분 참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사 설립 시에는 현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단, 예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00% 외국인 소유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알제리는 외국인투자 시 합작투자를 의무화(51/49 규정, 자국기업 51% 지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의 경우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제화·의무화하고 있다. 동 분야에 외국회사가 투자할 경우 Sonatrach의 지분이 최소 51% 이상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앙골라의 2015년 「신투자법」에 따르면 특정 부문(전기, 수력, 호텔, 관광, 로지스틱스, 건설, 통신, IT)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앙골라 현지 파트너를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파트너는 투자법인의 35%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엘살바도르는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해 외국인소유지분이 49%를 상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 지분소유제한은 거의 없다.

오만은 일부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없으나 모든 투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지분소유는 70%까지만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00% 외국인소유 회사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영화 시에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란의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는 전체 산업부문의 25%, 개별 분야당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이 목적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지분이 100% 허용된다.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개정된 네거티브리스트(2016.5월)에 따르면 투자지분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다.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박시설, 통신 콘텐츠 서비스(벨소리, 문자메시지, 콜센터, 통신망 서비스 등) 부문 등의 경우 외국인 지분 취득률이 67%까지 상향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는 1천억 루피아 미만 시에만 49%의 제한이 존재한다.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와 통신 카페 분야는 100% 개방되었으나 각 업종별로 외국인투자허용 지분 범위가 상이하므로 업종별 제한사항 및 투자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부 보호대상 산업에 대해 외국인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별·업종별 제한 요건에 대한 통합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주요 산업인 석유분야의 경우 해상 및 육상 광구 모두 외국인 지분참여는 50%까지만 가능하며, 2012년 \$40/톤, 2013년 \$60/톤, 2014년 \$80/톤, 2015년 \$60/톤으로 일정한 산정 공식 없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유수출에 대한 관세 및 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광산의 경우 노후광산에 대한 매장량이 고갈됨에 따라 탐사사업을 독려하고 신규광산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선진기술 도입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방 메이저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최근 다소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카타르의 경우 외국인은 특정 규제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현지기업(인)과의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자연자원, 채광 산업 분야에서 경제상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인정된다.

케냐는 보험, 정보통신, 전력·항만 등 인프라, 언론분야를 제외하면 자국민의 일정 지분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 정보통신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각각 66.7%, 70%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나이로비 주식시장

(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지분을 75%까지 허용한다.

코스타리카는 전력생산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는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국내선 항공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하
며, 해안선 200미터 이내 지역의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시 외국기업의
지분 한도는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
용하지 않는다.

튀니지는 서비스업분야(운송, 통신, 관광, 교육, 토목공사, 부동산, 전산
서비스 등)에서 완전 수출기업의 형태가 아니고 외국자본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경지 경
작, 수산·양식업(튀니지 북부) 등의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지분소
유는 66%까지 허용된다. 이외 유가증권 투자는 기업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할 시 투자고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두고 있는데 라디오 통신은 20%, 국내 및 해외인
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
설업은 25%, 광고업은 30%,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 달
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은 40%이며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재생에너
지 프로젝트(지열발전프로젝트 제외)도 외국인투자가 40%로 제한된다.

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를 통한 해외진출은 국제기업이 자주 선택하는 해외진출
방식이다. 이 조직형태는 자회사 형식에 비해서 설립과 운영에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생산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사 등에 의해 선택된다. 이러한 지사 및 사무소 진출방식의 유연성은 역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기성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자회사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외환관리상으로도 투자유치국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지사 및 사무소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지사 및 사무소의 운영을 파악하고 있어, 지사 및 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제한이 대부분 개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몇몇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과 관련한 투자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과테말라는 외국기업이 과테말라인을 대표자로 임명할 경우 최소 자본금 5,000계찰로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 하며, 투자보증금으로 5만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외국회사는 나이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 및 계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L/C 개설 및 협상도 불가하다. 대표사무소는 오직 홍보 및 연락 기능만 할 수 있으며, 현지 운영경비는 해외 본사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입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위원회(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모로코의 경우 현지법인(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연락사무소, 해외지사 등 다양한 형태로 현지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지사는 모로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어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현지에서의 영업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된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을 해야 하며 투자허가기관은 무역부(MOT)이다. 지사의 경우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 시 크게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나 각각 약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법인의 경우 유한책임회사, 주식합명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작투자, 유한합자회사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지사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국한되어 상업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연락 사무소는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상사, 제조업 등 일반무역 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엘살바도르는 최소자본금(2천 달러)을 보유(스페인어 구좌 기록을 준비)해야 지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만의 경우 금융업, 기술자문 및 컨설팅서비스분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분야에 한해서만 지사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락사무소는 단순히 모기업과의 연락 및 정보전달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란 내에 외국회사가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부 산하 회사 등록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설립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집트 내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청의 승인을 얻고 상업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설치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록하면 된다.

인도는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적도기니에서 외국회사의 지사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인설립 시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가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립은 허가사항이며 허가신청은 반드시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 등의 본사지원업무만을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연락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 등기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중국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2010.1.4일에 발표하였고, 이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가 2010.11.10일 발표되어 2011.3.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강화는 주로 등기 심사, 대표인원 관리, 위법행위 관리, 기타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카자흐스탄 내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은행의 지점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무부(MoC)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⁹⁵ 캄보디아에서 지사의 영업활동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쿠웨이트는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이 등록한 지사 사무소(registered branch offices) 설립을 불허하며, Commercial Agent 나 Service Agent를 통해서만 쿠웨이트 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95_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 비용은 약 1천 달러 정도이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필리핀의 경우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라) 이행의무의 부과

이행의무의 부과란 외국인투자 설립의 조건으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수출의무, 일정비율의 국내부품조달 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무, 수입액이나 국내 판매 등을 수출액과 연계시키는 의무, 기술이전 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 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관련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WTO의 TRIMs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행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투자규범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를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는 수출의무, 국내조달의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무를 투자의 설립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MAI 협상에서는 이러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기술이전의무, 합작법인의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용·생산·연구개발·판매 의무, 국내 지분 의무 등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현지고용조건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이행의무부과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 TRIMs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용을 이미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이행의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현지부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오스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브라질은 최근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 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요건을 연계하고 있으며 국산부품사용 요구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스리랑카에는 국산화 의무와 수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국산화 의무의 경우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으며, 수출 의무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에 부과된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동차 부문은 「자동차공업법」에 의한 의무비율이 규정되어 있다.⁹⁶ 한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2000.8월부터 시행)에 의한 회원국 간 무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가 30%, 트럭이 25%이며 제3국 부품은 자동차가 40%까지 트럭은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 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 광업 등 주요산업과 주요 국책사업 발주 시 강화된 국내조달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앙골라는 현지 조립생산제품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이 낙후되어 동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예멘 역시 자재, 장비 및 인력사용 등에 있어서 국산품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의무사항은 없다.

96_ A TYPE(승용차)의 경우 40%까지, B TYPE(픽업)의 경우 42%까지 국산화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C TYPE(트럭)의 경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란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정책 일환으로 외국인투자허가 시 국산화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부품국산화율이 45%에서 2011.10월 말 60%로 상향조정되어 외국인기업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승인 시 국산원료사용 비율을 심사한다. 따라서 직접투자 시 국산부품의무 사용비율에 대해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요구된다.

인도는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총가치의 3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조달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총가치의 30% 이상 구매 조달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기업과 주정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 의무비율 등에 대해 규제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은 2010.6월 국립 국산화 전홍원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하다는 조건으로 투자승인이 이루어지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및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작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지인 고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다.

가봉에서는 내국인을 80% 이상 고용해야 하며, 나이지리아는 석유가스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석유투자관리사무소(NAPIMS)에 그 이유를 소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에 따라 기업의 흑인지분 비율, 흑인간부 및 종업원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BBBEE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에게는 필수 고려조건이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입찰이나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 광업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칫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특히, 2015.5월부터 전면 적용될 BBBEE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흑인의 지분소유권에 대한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외국계 및 백인계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라오스에서는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를, 사무직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국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외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모로코는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취업 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노동청(OFPPT)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 인력의 취업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몽골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채용이 허용되며,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노동담당 직원, 선박 혹은 항공의 선장은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용인이 10인 이상인 기

업은 피고용인의 9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총 급여의 80% 이상을 내국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와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유예를 얻을 수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노동법」에 의해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총 근로자의 15%를 넘을 수 없다.

엘살바도르는 「외국인투자촉진및보장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인을 일정 비율 이상(총 고용인원의 90% 이상,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단, 엘살바도르인으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10%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5년 이내에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오만은 국산품 사용의무는 없으나 일정비율 이상 오만인을 고용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된다. 그리고 고용비율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제조업의 경우 35%이다.

온두라스는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이집트 내 설립된 지사에는 외국인 고용 인력을 총 고용원의 10% 이내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총 지급 임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외 이집트 내 영업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순이익의 10% 이상을 종업원에게 배분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적도기니는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 석유분야의 경우 30%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칠레는 종업원 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특정기술자격 소지자로 객관적 증빙제출이 가능한 인력은 상기 85%에서 제외된다.

카자흐스탄은 2011.2월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12.1월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파나마는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마)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외국인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공간적으로 현지에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된다. 각국의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의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큰 제한이 없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은 여가시설(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2015.5월 「세법」 개정안에 따라 본국의 납세자 등록번호, 신분증, 뉴질랜드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라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부동산(토지) 취득권, 건물 취득권, 건물 건축권이 구분되어 있으며, 비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는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모기지 계약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에 있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Lex Koller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정부(칸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용 부동산과 특정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6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개발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미개발상태 또는 부분개발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 지가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산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외국인 회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정책을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최근 개도국들도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철차상의 문제나 법률적 문제의 충돌로 인하여 여전히 동 분야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나는 「헌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며 최대 50년의 임차권(연장가능)만을 허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역시 「토지이용법」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일반적으로 99년까지 점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마다 외국인 토지점유에 대해 상이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 관할 구청의 허가과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는 토지임차권만 허용된다. 다만 2011년부터는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레바논은 외국인이 3천 m^2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몽골의 경우 역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레인에서 부동산 취득은 정해진 지역에서 특정 용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나, 2015.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및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7.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베트남의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벨라루스의 경우 외국인 개인이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브라질은 「외국인법」(1971년 제정)에 따라 외국인의 농지취득 및 국경지

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다. 다만 산업용 목적이거나 농업, 임업, 양식 등의 목적으로 장기 임차는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세르비아에서는 「기본소유권법」에 따라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만 외국법인은 사용과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는 가능하다.

에티오피아의 토지는 정부소유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짧게는 30년부터 길게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임차권은 공공경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장기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파기 및 개발권 환수, 패널티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외교단 및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 외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투자회사 및 외국인은 부동산의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오만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2000년 「부동산법」의 개정으로 GCC권 국적보유자들은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일부 관광특구에 분양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라크는 주택사업을 제외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를 불허한다. 특히, 현지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명의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 100% 해외자본에 의한 투자는 2013.9월 기준 전무한 실정이다.

인도의 경우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대부분 공단지역이 국가소유이며 그 외의 매입 가능한 지역은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은 하지 않고 정부소유 부지를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집단(근로집단 및 농민집단)만이 갖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용도에 따라 사용연한이 다르다(거주용지는 70년(만료 시 기간 자동 연장),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 50년).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유상출양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 방식, 합자·합작방식 등 네 가지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정한 제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외국인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및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카타르는 특정개발 지구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배정된 토지는 장기임대차계약에 의거 최초 50년(추후 갱신)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나 내국인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토지소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케냐의 경우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용으로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 토지 임차권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튀니지의 국유 농경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장기임대로만 가능하며, 구매는 불가능하고 임대기간은 3~40년이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소유는 가능하다.

바)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노르웨이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이어야 하며, 해외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수익이 5백만 NOK 이상인 기업은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해야 하며,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 기업은 이사진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선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스위스는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의무를 2008.1월부터 ‘1명 이상이 국적과 관계없이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국내 매출이 2억 페소 이상인 기업을 인수할 경우 국가경쟁력보호위원회(CNDC)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설립에 생산법인은 평균 3개월, 판매법인은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투자 타당성 조사 시 인터넷이나 발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개 자료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잦은 정책 변경 및 독특한 경제환경 등이 존재하므로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기관, 유관협회, 진

출업체, 경쟁업체, 수요업체, 원·공급업체 등에 대한 직접 상담을 기초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적도기니에서 외국인인 설립한 기업 또는 적도기니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내국인 지분을 최소 35% 보장해야 하며, 이사회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1/3 이상을 내국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국내치안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법령이 빈번히 개정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 시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

가) 과세 문제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자와 관련된 국제적 과세문제는 양자간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간 가능한 경제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의 관할권 문제, 이중과세문제 및 부당한 과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 경제 교류관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한 국가들이 가장 먼저 체결하는 협정이 조세조약이다. 특히 투자국이 투자유치국에 대해서 조세조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BIT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조약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약이 많아지면서 국제과세체계의 복잡화 및 조세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의 남용문제 등이 논의됨에 따라 다자간조세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향후 MAI가 실현될 경우 다자간조세협정의 출현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양국간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유치국의 국내 세법만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해가 현지에서의 과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차별조항은 현지기업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는 달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모기업과의 상품 및 자본거래(이전가격설정) 문제 등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국제조세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투자자는 현지국의 과세조치에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과세제도는 각 국가의 고유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조세조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국 규정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지국이 외국인투자자의 부당한 소득이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하는 과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제도상의 문제이외에도 과세행정에서 받는 장애요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게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세율이 상당히 높다. 브라질정부가 거둬들이는 직·간접세가 전체 GDP의 35%에 달한다. 아울러,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관리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차별적인 조세부과는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인도의 경우 법인세율은 내국인에게 30%, 외국기업에게 40%를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차별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2001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

사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12/13년 회계연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인데, 이는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청구된다. 반면 내국인에게는 Zakat라는 종교세 2.5%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카타르는 외국인소유기업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여 내국기업과 차별을 두고 있다. 쿠웨이트는 자국기업,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 금융 및 자본조달상 제약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모든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는 투자보호와 관련해서 투자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의 송금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송금제한 규정은 투자유치국의 국제수지위기에 따른 예외규정이다.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은 합법적인 목적의 충족을 위한 송금의 제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송금의 보고(배당금 및 여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수단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사법적 절차에서 만족스런 판결 등이다.

양자간투자협정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목적 등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 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한편 개도국에서는 외환관리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차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가나의 경우 외국투자자의 투자 수익, 배당금 등의 송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 거래은행이 가나중앙은행에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75% 이상인 합작투자 기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제한을 받으며 배당이익의 송금 시 외환관리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투자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에서는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해외송금액이 제한되며, 송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설립 후 5년 동안 자본금의 송금이 제한되고 이익금의 80%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며, 청산의 경우 투자자 자산과 기술을 잔존시키는 조건으로 청산잔액의 85%까지만 송금할 수 있는 등 외환송금과 관련된 정부 규제가 존재한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법령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만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②베트남 내의 투자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고,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 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단, 2011.8.12일부터 5,000 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함).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1천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액의 0.3%를 은행 송금세(ITF: Impuesto a las Transacciones Financieras)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을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도 1만 달러 이상은 공항 등에서 제공하는 세관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5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 반출의 경우 볼리비아 중앙은행 및 공항 등에서 신고를 해야 하며, 50만 달러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 투자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대외송금에는 제한이 없고 15%의 원천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앙골라에서는 외환사정에 따라 송금규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송금 거래에 앞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대상인지를 현지거래 은행에 확인을 받아야 송금제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에티오피아 역시 외환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외환통제가 심한 편이다. 온두라스는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 및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외환보유고 상황 등에 따라 태환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적법한 사업 활동으로 취득한 외환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로운 환전이 보장되지 않고 과실송금도 제한적이다.

이집트의 경우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실송금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이 1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인의 1일 송금액은 3만 달러로 제한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달러의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루피화 가치하락으로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과

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득 범위 내에서 연간 10~2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인도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회계사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 시 외환관리국 허가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업의 외화 예금구좌를 통해 송금이 가능하며,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은 「경외외국계은행외채관리방법」을 통해 외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즉 외국계은행 모행 혹은 관리부에서 허가 받은 중국 역내 채무자의 연간 여신한도, 유동성 수요 및 역내 대출항목 수요 등에 따라 연간 단기외채 지표를 확정하되, 외채 잔액이 외화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중장기 외채는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현재 외환관리국은 은행별 외채잔액 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카타르는 외환규제가 없어 송금에 제한이 없으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매년 발생한 이익금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다) 인력의 현지 파견 시 문제점

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핵심적인 사항중 하나가 경영 인력을 본국에서 파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BIT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핵심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 그리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BIT 모델의 경우 “일방체약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

의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한 조인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독일의 BIT 모델에서도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규의 틀 안에서 타방체약국 국민의 투자와 관련된 입국 및 체류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BIT에서 입국 및 체류의 문제는 해당국의 주권사항임을 전제하고 있다.

인력파견과 관련된 거주 및 노동허가 등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공통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선진국에서 거주 및 노동허가와 관련된 제한은 주로 복잡한 신청절차와 단기간의 허가기간에 따른 잦은 갱신의 필요성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개도국의 경우 아예 노동 및 거주허가 대상 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비자발급과 관련해서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인력의 현지파견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파견인력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인력들은 현지국에서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서 현지 파견인에게도 자국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환 경

개관

환경과 관련된 통상장벽은 크게 환경관련 무역조치(ERTMs: Environment Related Trade Measures)와 무역관련 환경조치(TREM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며 동 환경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조치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자간환경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환경목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역효과를 갖는 선진국의 환경마크제,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는 오용 또는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요하게 또는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이익을 보호하고자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높은 환경기준을 제정하거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환경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관련 통상장벽을 형성하며 나아가 환경보전과 무역촉진 간의

마찰을 유발한다. 또한 개도국들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며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추가적 조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수출전략 수립시 환경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

가) 특정제품 및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환경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규제, 제한, 금지로 환경유해제품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사용 혹은 판매의 제한과 금지,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의 제한과 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 특정 제조공정의 사용제한 및 금지

환경피해가 교역제품 자체가 아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정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이 같은 제조공정·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사용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여 환경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 시 호르몬이 투입된 육류,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그 예에 해당한다.

다) 환경기준(Compulsory Norm)

환경기준은 제품기준, 제조공정기준, 배출기준, 대기·수질·소음기준 등으로 분류되며 그밖에 제품의 테스트 또는 제품 및 제조과정에 적용되는 규격의 준수감시에 관련된 절차기준, 생산 및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벨링, 인증·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의 환경기준 관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자국의 동 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동 규정이나 기준 등은 국내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품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제품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 효과를 갖게 된다.

라) 환경마크제도(Eco-Labeling Program)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기준이 높고 소비자의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구매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적 무역효과를 초래한다.

마) 제품부과금

오염물질 함유 또는 오염유발 제품의 생산, 소비 및 처리단계에서 각종 부과금을 징수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제품 사용억제, 오염방지 및 재활용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 및 탄소세, 수입 석유제품 및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미국의 수퍼펀드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바) 다자간환경협약에 의한 조치

다자간환경협약은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으로 당사국간 합의된 무역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로 협약 당사국간 혹은 비당사국에 대해 적용된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20여 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다자간환경협약 동향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화협약 제19차 회의가 2013.11.11~22일에 개최되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

다.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에 이를 시행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합의문에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주적으로 기여하고 각국별로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회원국들은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나 개도국을 선진국이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프로그램 마련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삼림 벌채나 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REDD+’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2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대표적인 환경협약의 하나로 생물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한 이익 공유를 협약의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4.10.3.일 동 협정에 가입한 이후 2014.10월 평창에서 제12회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환경 관련 논의 동향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54개 품목의 환경상품리스트를 개발하여 2015년까지 회원국의 WTO 지위와 상관없이 각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이하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⁹⁷ 2013년 APEC 정상들은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20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환경상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⁹⁸은 2014.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의 요지는 ①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시킬 환경상품 협정 추진, ②모든 주요 교역국을 포함, 최혜국대우 및 교역액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국 참여시 발효(critical mass) 등의 방식을 적용, ③APEC에서 합의된 54개 환경상품

97_ APEC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WTO와 달리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98_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9개국(환경프렌즈 그룹)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가 포함된다.

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2015년까지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을 기반으로 폭넓은 범위의 추가적인 자유화 모색, ④환경 분야의 여타 이슈(비관세장벽 문제도 협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EU측 희망을 우회적으로 반영)를 다루고 앞으로의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 추진 등이다. 2014.7월 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이 공식 출범되었고 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협상 전 절차를 완료하고 2014.12월부터 WTO EG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3.2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2013.5월 한국 환경부와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영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배출권 거래제 설계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2015.12.12일 UN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한바 있다.

현황분석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3.6월 조지타운대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탄소배출 감축 등을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

오염 저감(cut carbon pollution), 기후변화의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 기후변화 관련 국제노력 주도 등 3개 분야를 강조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신규 및 기존 발전소 탄소배출량 규제를 통한 오염유발에너지 사용 감축, 클린에너지 사용 증가, 에너지효율증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미국 내 신규 및 기존 발전소 모두에 대한 탄소배출량 규제 실시,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연재해 대비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010.5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관행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대상 배출원(排出源)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2011.1.2-6.30)에는 여타 오염물질(납, 이산화황 등) 배출 허가를 받은 시설물 중 연간 7만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물만 온실가스배출허가제 적용대상이 되며, 제2단계(2011.7.1-2013.6.30)에는 신규 시설물 중 연간 1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기존 시설 변경으로 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7만5천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 온실가스배출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시설물이 온실가스배출허가대상이 된다.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인 2010.5월에는 환경청과 교통부가 2012~16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온실가스(GHG) 배출 및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안을 발표하여 종전 연비만 규제하던 것을 온실가스로 병행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2016년 생산모델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마일 당 평균 250g/mi, 기업평균연비는 35.5mpg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생산모델부터 연평균 5% 수준의 연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12.8월에는 2017~25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확정 발표하였으며,

2025년까지 연비 54.5mpg, 온실가스 163g/mi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의 연료비 절감 총액이 약 1.7조달러에 이르고, 차량 1대당 소요되는 연료비가 약 8,200달러 절감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석유 소비량은 120억 배럴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도 60억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전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 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2007.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였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다자환경협약(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하여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EU는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와 함께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등을 통하지 않은 연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고 있으며, 등록/허가/위험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 등 유럽 차원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설치되어 2008.6월부터 아래와 같이 REACH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①사전등록(Pre-registration): 연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기존물질을 제조자와 수입자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2008.6.1~12.1일 동안 실시,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 가능하다.

②본 등록(Registration):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을 ECHA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물질은 물질별 특성과 양에 따라 등록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물질은 EU내 제조 또는 수입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③신고(Notification):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관리를 위하여, 비의도적 배출로써 제품중량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2011.6.1일부터 시작되었다.

④평가(Evaluation): ECHA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대상은 유해물질 또는 연 100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다.

⑤허가(Authorization): ECHA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가대상목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체물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물질의 종류는 고위험성 물질(SVHC)-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 독성 물질(CMR) category 1, 2, PBT, vPvB 물질 등인데,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⑥제한(Restriction): 건강·환경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로의 사용 및 수입을 제한하며, 카드뮴과 납·석면 등의 물질이 이에 해당되며, 약 63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은 등록이 2013.5월까지 완료되었으며, 2014.8월말 기준으로 39,767건의 7,877개 화학물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법률에 따른 등록도 9,963건 5,292개 화학물질에 달하고 있다. 한편, EU는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국과 연계하여 비식품을 대상으로 Rapex(Rapid Alert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6월부터는 REACH 규정 위반제품들도 게시하고 있다. 매주 각종 규정 위반제품의 목록과 사유를 게시(Notification)하는데, 규정위반 제품은 판매금지, 자발적 회수, 소비자들에 대한 리콜(recall), 세관당국에 의한 반입거부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REACH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규정

2010.12월부터 시행된 「유해물질의 분류/라벨링/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등에 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은 EU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유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톤 미만의 물질에

도 적용된다. 동 체계 하에서 단일물질과 혼합물은 유해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이름(또는 숫자), 양,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수은사용 규제

EU는 측정기기/전자/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내에서 수은과 수은화합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국제수은협약을 2013.10월 서명하고 비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비준 예정이다. EU는 일부 분야에서 수은협약보다 강화된 규제 채택이 예상되는 데, 역외로부터의 수은 수입금지 등에서 무역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4.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계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은 2009.4월, 경상용차(van) 관련 규정은 2011.3월 제정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유럽 교통 지역 로드맵(2011년)을 통해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60%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초 동 규정들을 개정하였고 2025년 이후 승용차/밴의 배출기준을 2015년까지 검토하여 필요시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제도는 EU에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M1 category)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EU fleet average)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하게 되며(phase-in), 50g/km 이하의 초저배출차량에 대해서는 배출량 계산시 인센티브(수퍼크레딧)를 부여한다. 제작사는 평균 배출량이 해당 제작사의 세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배출량 g당 최소 5유로에

전년도 판매·등록 차량수를 곱한 초과배출 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담하여야 한다.

「경상용차(van)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Regulation 253/2014)」도 시행되고 있다. 대상차량은 국제차량분류 N1 카테고리(적재중량 최대 3.5톤)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공차중량이 2,610kg인 차량으로서 경량차량(light-duty vehicles) 시장의 12%와 EU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s)은 각 차량별 배출기준을 평균하여 산출하며,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4~17년까지 단계적(phase-in)으로 적용하는데 2014년에는 차량대수의 70%의 평균, 2015년에는 75%의 평균 그리고 2016년에는 80%의 평균이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국내 제작사는 2015년 승용차 평균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화된 2020년 목표 달성과 2017년으로 예상되는 측정방식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한편 차량 판매상황 모니터링과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기별 차종 판매전략 등이 필요하다.

5.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또한 EU는 1990~2010년간 36% 증가한 도로교통 배출량의 1/4과 전체 배출량의 5%를 차지하여 항공/해운보다 큰 배출원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에 대한 규제 도입도 준비 중인데, 집행위는 2014.5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관한 대화문을 채택하였다.

집행위는 동 전략을 통해 초기에 대형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측정/보고/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5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측정/모니터링을 통한 대형차량의 배출량 정보가 축적된 후에는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기준치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6.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2004~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ICAO에서 진행중인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시장기반 조치 논의의 가시적 성과 도출 지원을 위해, 2012년에 대해서 비회원국으로부터 도착하고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배출권 정산을 1년 연기하였다. 이후 EU가 동 조치를 2016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는 당분간 EU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2016년 ICAO 총회의 결과에 따라 EU가 2017년부터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전노력이 필요하다.

해상운송분야의 경우 바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신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 후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노력 진척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2013.6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8년부터 온실가스(CO₂)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한 후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U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연료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30년에 BAU 대비 2%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2030년에는 연간 12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_x)을 기존 180mg/km에서 80mg/kg으로 강화한 Euro VI에 의해 신규 차종의 승인은 2014.9월부터, 신규차종의 등록은 2015.9월부터 적용되었다. 한편, 버스와 트럭 등 중형차량(heavy-duty vehicles)의 배출가스와 관련한 형식승인 지침인 「Directive 2005/55/EC」에서는 가스, 분진배출 및 배기가스 투명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OBD) 장착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10월부터 적용된 Euro V 기준에 이어 2013년부터는 Euro VI 기준(「Regulation (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VI는 Euro V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EU는 오존층 파괴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 금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EU는 불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용 냉방시스템 지침(MAC Directive)과 불화 온실가스 규정 등 2개 지침을 운용중이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은 2011.1월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초과 불화 온실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1월부터는 GWP 150 초과 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과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불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정 개정안(Regulation (EU) 517/2014)」을 2012.11월에 제안하여

2014.5월 채택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사한 수소불화탄소(HFCs)의 단계적 감축제도(Phase-down)가 도입되며, 불화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9.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Directive 94/62/EC)」은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 및 예시(부속서 I)하고 있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상업용, 서비스용, 가정용의 모든 포장재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동 지침은 2004.2월 「Directive 2004/12/EC」로 개정되었는데, 중량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였고,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하였으며,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2013.11월에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회원국에 대해 소비 감축대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5.10월부터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봉투를 유상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수출 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에코라벨링(eco-label) 제도

친환경 제품에 대해 EU 차원에서 에코라벨(Eco-Label)을 부여하는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C) No 66/2010」이다. 2015.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운할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

고 있다. EU는 2015년까지 에코라벨 부여대상 품목군을 약 40~50개로 확대하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인바,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1.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10월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집행위 권고문(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권고문(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서, 크기 분포상 50% 이상(입자수 기준)이 1 ~ 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되며,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크기 분포상 입자수 기준 50%는 1~50% 사이로 대체될 수 있다. 현재 EU REACH 제도가 나노물질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물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는 위의 정의를 경험, 과학·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 2015년 말까지 재검토(review)하고 2016년 새로운 정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1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회원국 중에서도 2014.10월 기준 덴마크/헝가리/스페인이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회원국도 2015년에는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2014.10월 발효되었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 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12.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 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됐다”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4.11월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그동안 양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캐나다는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재검토 하였다. 이후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2015.12월 유엔 파리 기후총회에서 전 보수당 정부의 기존 감축목표에 더하여,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2030년까지 2005년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목표로 연방·주정부간 적극적 협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기후변화국가전략(Pan-Canadian Framework)을 시행할 예정
- 오일 및 가스 부문의 메탄배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화학제품 및 질소비료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 도입 예정
- 독자적인 환경규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의 점진적 폐기,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도 지속 추진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47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1.10월 개정안은 Electric motors, residential gas bilders 등의 8개 품목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요구사항(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규정하며, 2012.4월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4.6월 발표된 13번째 개정안 시행 시 Chillers, gas water heaters 등의 15개 품목의 MEPS를 강화할 예정이며 수은등(Mercury vapour lamp ballasts)의 대한 규제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4번째 개정안에는 배터리 충전기, 할로젠램프(metal halide lamp ballasts) 등 분야별 7개 신규품목을 포함한 17개 품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필요규정에 대한 소개 또는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주, 알버타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 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건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 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 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5월 온타리오 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IT: Feed in Tariff)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을 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2012.4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2년간의 FIT 프로그램의 성과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FIT 2.0 지원제도 개정안을 공시하였다.

2009.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가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두고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시설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과 EU는 WTO에 온타리오 주정부의 Local Contents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의사를 제기하였고 2013.5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분쟁해결 패널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5월 온타리오 주정부는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4년까지 Local Contents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7월 Local Contents 규정을 폐지하였다.

»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10.1~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 (10kw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 2011.1.1)	60%
대규모 (10kw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 2011.1.1)	60%
풍력 (10kw 이상)	25% (변동시기 : 2012.1.1)	50%

주: 10kw 이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Domestic Contents 규정과 무관

자료: Ontario Power Authority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5.3월 「전기 및 전자 장비법」을 제정,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폐기된 제품을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분야 화석연료 퇴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환경법」상의 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적 환경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적 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스위스는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를 도입하였다. 2000.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스위스는 현재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₂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CO₂세 부과정책에 따라 2014.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 시 발생하는 CO₂ 1톤당 60프랑의 CO₂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6.1월부터 CO₂ 1톤당 84프랑으로 인상되었다. 관세청은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CO₂세를 부과하나, 유해한 CO₂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CO₂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도 연방 환경청이 담당한다.

「연방에너지법」에 따라 2012.7월부터 스위스의 승용차 수입딜러는 신규 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말까지 평균 130g/km로 감축

해야 했다. 자동차에 대한 CO₂ 배출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위스 연방각의는 2020년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규등록 승용차량은 평균 95g/km로, 3.5톤까지의 소형 신규등록 상용차량은 평균 147g/km로 감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입딜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 중인 중형차에는 총 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앰블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또한 1996.1월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체(GMO)에 대해서도 EU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GMO를 20.9% 이상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흙,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의하여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무역상대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친환경적 제품에 관해서 자율적인 에코라벨을 부여하고 있는데,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4.11월 기준 57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은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 컨디셔너), △의류(섬유 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시),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용지, 그래픽 용지, 티슈페이퍼), △Laundry detergents, △Ecolabel-Eup project (세탁기, 냉장고), △서비스(캠프, 여행객 숙박시설) 등이다.

카자흐스탄은 환경보호부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 시에는 환경보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1년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환경보호부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에 의해 결정된다.

크로아티아는 환경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여타 EU국가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하지만 EU 차원의 환경 규제 강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함께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규제(European Emission Standard)제도를 엄격히 시행 중이다. 1991년부터 Euro 0으로 도입된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는 2014.9월부터 Euro 6 형식이 도입되어 2015.9월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되고 있다. Euro 6에서 규제하는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 비메탄탄화수소(NMHC), 질소산화물(NOx), 매연입자(PM)이며, 허용 기준치를 준수할 경우에만 유럽 내 운행이 가능하다. 2017.9.1일부터는 가솔린 엔진 승용차에 적용되는 Euro 6c 형식검사가 도입될 예정이고, 2018.9.1일부터는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매연입자 필터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 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환경부 및 환경부산하 환경위생기술국(CETESB)이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환경에 유해한 품목(예: 독극물, 폭발물) 등을 수입금지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ey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전무했으나, 최근에 환경관련 인식이 증대되면서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 환경청이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관련 다양한 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의 3대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 산티아고 지역 내 중장비의 배출가스 기

준을 2011.4월부터 미국 TIER II 기준으로 강화, 제련 및 공단 오염물질 저감정책, 디젤유의 황 함유율 개선, 장작난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은 2015년부터 EURO IV로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칠레 환경감독원은 2013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수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입된 내용을 준수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우루과이 역시 「헌법」에 환경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되면서 정부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에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의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주택토지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Direcció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 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주택토지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코스타리카는 화산, 해변, 하천, 밀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바탕으로 Eco-tourism(생태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 개발의 경우에도 산림 자원이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법」, 「탄수화자원법」, 「에너지절약 규정」, 「생물다양성법」, 「수자원법」, 「토양관리보존법」, 「환경기구법」 등이 있으며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는 「식물채취거래협약」 등이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국립환경기술국(SETENA)이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최근 많은 지방 정부들이 건축허가(Building permit) 발급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기업은 1차적으로 국립환경기술국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D1(소규모), D2(중·대규모)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B2 범주(低환경영향)에 속할 경우 추가적으로 환경보전진술서(DJCA)만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프로젝트가 B1범주(환경영향 중간수준)에 속할 경우 앞선 환경보전진술서와 더불어 예비환경관리계획서(P-PGA) 및 환경영향연구(EsIA)도 제출해야 한다.

페루는 일부 위해환경 품목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 제613호」 및 관련 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업체나 기존 업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당국에 환경영향평가(EIA)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광을 희망하는 광업 회사의 경우 폐광계획서를 에너지광업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복구, 재생 및 폐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환경보증(environmental guaranty)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질랜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10월 이후 환경보호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생물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유전자변형식품(GMF)의무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몽골은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스 자동차, 매연 저감형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2005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개정한 신규 「환경보호법」(Law 55/2014/QH13)이 2015.1.1일부로 시행되었다. 2014년 「환경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틀은 기존법과 동일하나, 국가재정 내 환경보호 관련 지출항목 편성 및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보호 지출 비율의 점진적인 확대 정책 추가,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규정 신설, 폐기물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수입 가능한 폐기물의 세부 조건 마련 등이 개정되었다.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와 중고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대상 운반구 및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편, 신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제도로서 ①환경보호 마스터플랜(국가 단위와 성 단위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②전략적 환경평가(이행 대상: 국가 및 지방성·시 단위, 경제구, 공단의 경제-사회 발전 관련 전략과 계획), ③환경영향평가(이행 대상: 국회·정부·총리에게 투자결정권이 있는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자연보전지역·관광지역·문화역사 유적지·생태보존지역 등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④환경보호계획서(이행 대상: 환경영향평가 이행 미대상 프로젝트, 투자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미대상 생산·사업·서비스 방안)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 투자자가 이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용역을 통한 평가 실시도 가능하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환경허가 효력상실 및 기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면서 최근 유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또한 베트남 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의 환경 관련 법규 시행 및 단속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투자자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스리랑카는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수입원 중의 하나이어서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호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모두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을 준수해야 되며, 동법은 관련 산업을 A, B, C의 3가지 Category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1개월 전까지 환경보호라이센스(EPL)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취득된 라이선스는 업종에 따라서 1년 또는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2008.3월에 발효된 「환경보존세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evy Act No.26 of 2008)」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세수는 환경보존통합계정에서 관리되었다가 환경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투자된다. 가령, 동법에 의해 핸드폰 사용시 발생하는 e-폐기물에 대해 환경세가 부과되며, 40W 이상의 램프를 수입 또는 제조할 때, 3루피의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만, ‘절전형 형광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2015년 현재 13개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8만ha 조림허가를 취득하여 조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1만ha에 대해서는 허가 획득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내 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재무부 장관령(2008년, No 223/PMK,011/2008)으로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최소한 1차 가공된 목재제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 대부분의 영세 목재생산업자는 추가 가공을 위한 재제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

문에 일부 대기업에 원목을 납품하는 형태로 목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목거래가격은 국제가격의 1/3수준에 불과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산주협회 등에서 꾸준히 인공적으로 조립된 원목에 한해서 해외수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립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립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진 산업부 등에서는 자국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립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2014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원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공약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당분간 원목수출금지가 해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2.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하며, 인도네시아-EU간 인증 관련 자발적 협정이 2013.9월 체결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다면 對EU 시장 진출이 일정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영세업체가 동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는 영세 목재가공업체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영세 목재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원목 등 1차 목재생산업체를 제외한 일부 가구 등 2차 가공업체등에 대해서는 동 인증의 의무화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를 2017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각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자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 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렵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중에서 외국투자자의 관심대상은 주로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에서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①계획안을 검토하고, 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③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 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중국의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12.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호법」, 「산림법」 등 자연자원관리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각종 환경기준 등이 있다.

그 중 「환경보호법」의 경우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1.1일 정식 발효되었다. 중국의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 확대,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폐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중국의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바와 같이, 그 시행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일 것이라고 하며(2014.12.31., 전국환경부서장 화상회의),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⁹⁹⁾

아울러 중국 정부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민생관련 해결에도 집중하

99_ 2014.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분야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중점방향으로 추진중이다.

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9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10條)」(2015.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 기준 달성, 수질퇴화 방지와 함께 V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오수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토양분야는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제정을 통해 토양오염 복원정화 추진, 오염지역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라고 밝힌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3.6월부터 순차적으로 7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운영(심천, 북경, 상해, 광둥, 천진, 호북, 중경) 중이다.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으로써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련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을 2011년과 2012년에 다수 발표하였다.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12월)¹⁰⁰,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2012.11.8.~14)¹⁰¹,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2013.3월)¹⁰² 등에서도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뚜렷하게 감소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음용수상수원 환경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수질을 대폭 개선시키고, 중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위험 화학품, 위험폐기물 등에 대한 오염방지 효과를 뚜렷하게 하는 한편, 도시의 환경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100_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발전, 농촌 환경 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01_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우선로 삼았다.

102_ 경제발전 방식 전환(내수확대, 환경보호, 해양관리 강화 등),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민생개선, 개혁개방 심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서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감소, 수질환경 개선, 대기오염 종합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 중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

수질오염 방지사업	대기오염 방지사업	농촌오염 방지사업	폐기물처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농촌 오수처리 시설 • 슬러지 처리시설 • 축산폐수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황, 탈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 시설 설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종합 환경 정돈사업 • 농업에서 비점 오염원 감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위험 화학물질, 의료 폐기물, 위해 폐기물 등의 적정 관리 및 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국의 환경시장이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처리 효율과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확보, 현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이어와의 연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용¹⁰³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홍콩은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환경기준을 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데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부문별 업체들이 「환경보호법」을 잘 준수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 요식업, 차량정비업 등과 협력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법준수지원센터(Compliance Assistance Centre)를 운영하여 환경보호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014년에 환경보호부 조사관들은 59,500차례 이상의 현장 감사를 돌며 총 4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330만HKD 이상의 벌금을 추징했다. 스톡홀름협정(The Stockholm

103_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과 로테르담협정(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의 내용은 홍콩에서 적용되며, 「유해화학물질규제법」은 농약 외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및 사용을 규제한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제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의 하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제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규제당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한편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보유, 수입, 수출, 재수출 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높은 멸종위험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수출입은 금지되었으며 그 외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국제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농수산품보호국에 의해 관리되며 동부서와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집행된다. 최대 5백만 HKD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14년에는 25,894차례의 허가를 발행하였으며 총 266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호주 집권당인 자유당 정부는 전 노동당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추진하였던 탄소세(Carbon Tax)를 폐지하고, 탄소배출감축분을 정부가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으로 매입하는 배출감축펀드(ERF: Emission Reduction Fund)를 주축으로 한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 2014.7월부터 호주 정부가 도입한 ERF는 정부가 25.5억 호주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실시하는 기업, 기관들로부터 감축분을 역경매를 통해 최저가로 매입하는 제도이다. 호주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 상위 140여개 업체(연 배출 10만톤 이상)들을 대상으로 과거 5년(2009~2014년)간

최대 배출 규모보다 많이 배출하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2016.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Direct Action Plan」과 병행하여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전력의 23.5%(33,000 Gwh)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목표제(RET: Renewable Energy Target)를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상용화, 건물, 자동차,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에너지 생산성 목표(National Energy Productivity Target)를 설정하는 등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5.8월 호주 정부는 상기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 신재생에너지 목표제, 에너지 생산성 목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하 국별 기여방안(INDC)」을 발표하였다.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26-28%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감축목표(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 감축)에 비해 2배가량 상향조정된 목표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가 거의 없다. 그러나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환경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나일강 오염방지법(법 제48호/1982)」과 동 시행령(「제649호/1982」)이 있다. 나일강 유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공장건설이나 건물, 상점, 관광시설 및 기타 상업용 시설 등은 사전에 보건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공사업·수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허가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투자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관해서는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이 관여하여 환경적합성을 심사한다는 규

정에 따라 투자자는 환경저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술 미흡으로 강력히 시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르단은 2007.1월부터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 변환장치(catalytic convert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알제리는 과거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1994년에는 ‘환경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High Council o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었으며, 환경에 유해한 품목들(식물, 화학약품 등) 수입 시는 관련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이라고 판명된 화학제품 및 기타 물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2002년 「재정법」으로 환경보호 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0디나르) 또는 신설(휘발유 1리터당 1디나르)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소각장치 등 환경보호설비를 갖추 것을 의무화 했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백신관리 교육센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UN에 의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생적인 나라로 지정되는 등 위생 및 환경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 지구오존층을 파괴, 지구온난화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규제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바, 프레온가스(R12 냉매)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완전히 수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R22 냉매도 2030년이면 수입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제품들은 사전에 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환경관련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먼저 석면(ABESTOS) 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석면 원료, 석면 파이프, 석면 시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해양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쿠웨이트 영해에서 트

롤선, 어선 등이 Nylon Fishing Net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Natural Fiber Fishing Net(Cotton Fishing Net)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럭, 버스, 트랙터, 포크리프트 등 중형 중고 중장비 수입 시 생산년도가 10년이 지난 차량은 수입이 금지된다.

카타르는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우간다에서는 투자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국가환경관리청(NEMA: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의 환경영향평가(EIA)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가 NEMA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투자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우간다 정부는 2009년부터 환경적 이유로 플라스틱 백(plastic bag)의 수입 및 생산을 불법화하였으며, 2015.4월부터 시장내 비닐백 유통을 금지시켰다.

예멘은 GATT 20조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고타이어, 7년 이상 중고차, 15년 이상 중고기계, 중고 디젤 승용차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 소형트럭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디젤유를 사용하는 10~15인승 마이크로버스와 2톤 이하의 소형트럭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와 사륜구동 차량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디젤유의 질을 높이고, 휘발유도 유연에서 무연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입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카타르의 경우 화학제품, 화학폐기물,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 수입 시, 선적에 필요한 세관서류 및 안전수치 자료 등을 관세사와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인화물질, 방사능물질, 무기 및 폭발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반하는 물품, 마약류 수입 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환경관리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관련 법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동 법은 협력적인 의사결정, 포괄적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범규약,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위반사례 적발시, 5백만 랜드 미만의 범칙금 또는/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후변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17)에서 Jacob Zuma 대통령이 2020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120랜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탄소세 도입으로 유발될 전기세·유류세 인상 및 매년 6억 랜드 규모의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2016년에 도입 예정이다.

르완다의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와 관련해서는 개발청에 문의하여 환경관리국과 르완다 표준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품 포장재의 경우는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가나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환경보호정책의 집행을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나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의 결과는 영향 없음/일부 영향 있음/영향 있음 중 하나이며, 영향 있음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허될 수도 있다.

가봉의 「환경법(Environment Code)」에서는 폐기물(처리, 재활용, 폐기 등) 관리, 천연자원의 보호 및 보존, 환경오염 방지, 유해물질사용 등을 다루고 있다. 「공해방지법」에 따라 산업 및 생산 시설 설치하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부 허가후 3년내 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운영되지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아울러 가봉은 폐수투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름 및 윤활유, 세제(detergent) 및 농가 폐수 투기는 엄격히 금지된다.

나이지리아는 특기할만한 환경관련 규정적용 또는 수입규제나 환경영향 평가상의 제약은 없다.

멕시코 정부는 1988.1월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은 마킬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6월 유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2024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멕시코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는 2015년 9,250MW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풍력 1,125MW, 바이오 에너지 88MW, 지열 65MW, 태양열 3,833MW 등으로 추가 에너지를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새로 개정된 「에너지 개혁법」에 따르면 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정부기업만이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기업 또한 전력을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멕시코 내 월마트, Femsa, Cemex 등의 기업은 풍력업체들과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형유통업체 중 하나인 Soriana는 2014년 한국 업체인 한화로부터 120개 태양과 판넬을 구입, 660개 업체에 설치하여 31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였으나 2014년 현재까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중고차를 수입할 경우 「법률 3467」 및 「대통령령 28963호」에 의하여 세관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배출가스 측정을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IBMETRO에 통보되어 환경평가 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지게 된다. 또한, 방사선을 배출하는 기계·장비, 방사성 화학 원소 및 동위 원소는 사전에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허용된 물질을 써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환경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사우디 담수공사(SWCC)와 사우디 전력공사(SEC)는 프로젝트 추진 시 각종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사우디 석유평물부(MOPM)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 및 폐열의 회수·산업단지 공급, 석유평물 생산 시 환경보호기준 준수, 무연휘발유 및 저유황경유의 생산·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주무기관은 기상환경보호청으로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기준에 의거하여, 산업시설 계획 또는 운영 시 기상환경보호청이 대기와 물에 대한 보호지침을 부과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약 70~80%가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에티오피아 「환경법」에는 토양, 숲, 생물 품종, 수자원, 에너지, 천연자원, 도시환경, 산업폐

기물,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화 및 자연 보존지역, 인구, 공동체, 토지, 성, 환경경제, 환경정보화 시스템, 환경영향평가, 환경교육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주, 시 구역별로 적용되며,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에 의해 법안이 정해지고 적용된다. 여기서 정해진 기후변화 준수 경제(CRGE: Ethiopia's Climate-Resilient Green Economic) Strategy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탄소배출 중립적 국가(Carbon Neutral by 2025)를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냐 「환경법」은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기업에 오염 활동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법」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자연보호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광산, 도시개발, 수송망, 농업, 전기 및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는 등 기본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7월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í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2.6월 대외무역위원회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제66호, 67호를 발표하였으며, 동 수입규제조치 발표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및 폐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동 조치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하고,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테비데오 조약 등을 언급하는 등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2013.6월 발표된 환경보존을 위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여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혼란을 겪었다.

엘살바도르는 환경을 이유로 한 본격적인 무역규제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원환경부(SERNA: Secretarí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관련 규제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n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6년 초에 열렸던 파리기후협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도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도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후 디젤차에 대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 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

튀니지의 경우, 비인체분야에 대한 유전공학 실험이나 유전자변형유기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활용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GMO 문제 관련, 튀니지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기술학적 위험성 예방에 대한 카르타제나 결의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서명한 바, 유전자변형 규제를 법률상으로 제도화하고 생물안전성을 감시·관리하는 국가위원회의 발족을 검토 중이다. 환경 분야 국제협약에 따라 튀니지는 유해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및 야생 동·식물 수입 등을 철저히 관리·규제하고 있다. 석유, 중합체, 원심분리기, 건전지·배터리, 축전지 등은 수입 및 판매 시 5%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튀니지 국립환경보호청에서 관리하는 '공해방지기금'에 적립된다.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환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2012.7월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II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e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eclaration) 대상, 허가(Authoriz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hori-

z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 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화 비율 20% 목표치 달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서 수질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쓰레기 처리 등에 51억 유로를 배정하였다. 2014~20년 EU펀드중 하나인 환경 에너지 운영 프로그램(EEOP: Environment and Energy Operating Programme) 아래 헝가리내 환경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으로, 헝가리의 EEOP에는 전체 헝가리 EU펀드 기금인 241억 유로중 36억유로(14.9%)가 배정되어 헝가리의 내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2600PJ)의 70%(1838PJ)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5년 현재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1%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량의 수요가 예상된다.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1996)」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5월 「법률 제218

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항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0.8월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등 가축병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로코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로테르담 협약 등 환경협정에 따라 멸종위기 동식물,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특정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입허가 또는 수입금지 대상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입을 2015년 완전히 금지하였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16.11월 마라케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를 개최하는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바레인은 2011년의 보건부의 각서에 따라 139가지의 화학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 방사선 물질, 투기, 유독성 물질, 석면(asbestos)과 석면부산물의 수입, 제조 및 산업용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제조업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청(SEAM)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를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쟁정책

개관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다. 경쟁정책은 경쟁법을 통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가격과 생산량을 특정 하는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경쟁당국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 또는 억제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정책의 통제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 유형에는 국제카르텔, 특히 수출 카르텔을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거래제한, 또는 기업결합제한의 차별적 운영을 통한 시장접근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 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 왔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¹⁰⁴,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회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 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을 설립하여 회원국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APEC은 경쟁정책과 제도개혁을 같이 도모하여 경쟁정책과 법 작업단(Competition policy and Law Group)을 1996년부터 운영하였고, OECD와 같이 「제도개혁에 대한 통합리스트(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를 작성하여 규제와 경쟁정책, 시장개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도모하고,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선진국의 경쟁당국들은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 검토,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경쟁정책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정책은 최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경쟁당국 간의 협의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정책은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집중되고 있다.

104_ 세이프가드 협정문에서는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사한 조치란 수출조절, 수출 및 수입품 가격 모니터링 제도, 수출 및 수입입금제도, 수입카르텔, 재량적 수입허가제도, 수출카르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FTA의 경쟁정책 관련 내용

자유무역협정	실체규정	절차적 규정 및 분쟁해결
EC협정	공동: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정보보조금 경쟁법 적용, 수량제한 금지, 회원국 간 차별금지, 반덤핑조항 폐지	역내 공동 경쟁법, 사법절차 외부 가능 집행기구: EC집행위원회
NAFTA	경쟁법·정책 도입, 촉진 독점기업 설립가능, 반경쟁행위 금지, 회원국 간 비차별 반덤핑 규제, 상계조치 가능	분쟁해결절차 없음.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정책 권고는 할 수 있음.
안데안 공동체	공동경쟁법	Board of Cartagena Agreement: 조사, 중지, 시정명령 권한, 법적효과
MERCOSUR	공동경쟁법, 국제교역에는 반덤핑 규제 가능, 경쟁법 조화 진전과 함께 폐지 예정	
EFTA	부당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정보보조금, 합병 EC협정과 유사 반덤핑 조항 폐지	EFTA Surveillance Authority: 조사 및 집행 권한 없음.
캐나다·칠레 FTA	경쟁법·정책 도입, 촉진 반덤핑 폐지	양자협약의 및 분쟁해결절차 없음. 중앙조정기구 없음.
한미 FTA	경쟁법 집행에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적 대우 명시,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지정 점·공기업 관련사항의 정의 및 의무조항 도입	경쟁법, 소비자보호 협력조항, 상대국 요청 시 협의의무에서 발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
한EU FTA	경쟁철폐에 경쟁색션과 보조금색션을 둠. 경쟁색션에서는 경쟁법 집행관련 원칙 및 경쟁 당국 간 협력, 공기업 및 국가독점의무 등을 규정	〈대한민국 정부와 EU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2009.7.1발효)〉에 기초한 협력, 경쟁분야에서 규정된 의무는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배제

자료: 강문성 외,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이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황분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행 시 상호조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 주요 국제기구별 경쟁정책 논의 및 활동내용

비교항목	OECD	WTO	UNCTAD	ICN
설립취지 및 조직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분야 정책연구 협약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규범의 수립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도상국의 지원 UN 산하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체 협상기구 아님
회원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선진국가입 (참여범위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국가별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경쟁당국 국제기구, NGO, 학계를 포함 (포괄성 최대)
비용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국들의 비용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회원국의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에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 없음
사무국 존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설 사무국이 의사일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한 상설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된 사무국 (UN으로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이 존재안함 (Virtual 조직) 개별 작업반 활동
대표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위원회(COMP) 모범관행을 검토하는 리운드테이블 개최 OECD 권고안 채택 글로벌경쟁포럼(GFC)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경쟁작업반(WGTCP) 활동 다자간 규범수립을 위한 WTO/UNCTAD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et"제정·권고 경쟁법·정책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모델법(Model Law) 제정작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범관행 도출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경쟁추진기능 제고
결과물의 구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택된 권고·구속력 없으나 사실상 이행요구(3년 이내에 권고이행실적 보고의무, 회원국간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 있음 분쟁발생시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은 없으나 경쟁정책의 절차적·실체적 수렴에 영향력 발휘

자료: 김정해 외(2005)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의 동태적 구조와 전개과정』, 한국행정학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경쟁법 운용의 역사가 길고 경쟁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반면,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중진국 및 개도국은 경쟁법을 도입하지 않거나 운용해온 역사가 짧다. 미국, EU국가는 경쟁적으로 자국의 경쟁법 체제를 다른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EU모델을 수용하여 경쟁법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라오스, 필리핀 등 개도국들도 경쟁법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선진국간의 경쟁정책 관련 분쟁은 양자협정이나 지역협정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진국의 경우에는 양자 협정 및 지역협정이 초기단계에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경쟁 이슈 중 우리나라와 직결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¹⁰⁵의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공기업과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ASIA 경쟁법 도입 및 발전 방안 등이다. 각국은 국제경쟁포럼 등을 통해 해당 이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은 인프라, 공공서비스, 해운·수송 분야에서 국내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부과하는 것과 교역국 기업에게 경쟁법을 역외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하는 반경쟁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자국 내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을 경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반경쟁행위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개도국이 취하는 형태이다. 후자의 경우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로 적용하는 유형으로, 미국은 양자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점차로 역외적용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여,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의 독점금지국

105_ 특허를 사들여 제조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얻는 회사를 의미한다.

과 연방거래위원회)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 기업 간에 담합을 하여 가격을 인상·고정시키거나, 시장·고객의 분할, 생산량의 할당, 담합의 이행 상황의 정정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카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 「셔만법(Sherman Act)」인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 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 달러(종전 35만 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 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따라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를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3억 달러, 하이닉스에 1억8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간부 각각 4명에 대해 5개월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8월에는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연루되어 우리나라의 LG Display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미 법무부가 카르텔로 인해 부과한 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2009년 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를 제재 받은 바도 있다. 2011.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014.10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카르텔 유혹에 빠져 회사는 물론 개인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력 있고 평판이 좋은 우리 기업이 카르텔 가담으로 인해 더 이상 고액의 과징금을 물지 않고 한국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기업결합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992년 이후 대폭 개정한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된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 및 경쟁당국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지침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결합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art-Scott-Rodino 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자산 혹은 의결권 있는 주식 규모기준으로 2억 달러 이상의 큰 거래의 기업결합이며, 이보다 작은 거래더라도 기업결합 취득자 및 피취득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 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기

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16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업결합 시에는 심사료를 미 경쟁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심사료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금액은 45천 달러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이 경쟁법 집행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현 미국 경쟁당국은 전 공화당 정부에 비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 경쟁당국은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분위기이므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하여 양국은 경쟁분야 협력을 증진키로 하고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의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고,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

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초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년 11월 새롭게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EU의 경쟁과 관련된 일곱 가지 정책을 점검하였다.

첫째로, EU집행위는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를 최우선 업무로 설정하고 있으며 EU경쟁당국의 연례보고서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년의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 사이에는 31.6억 유로, 2005~2009년 사이에는 79.7억 유로를 부과하였다. 2016년 7월 말까지 총 121.5억 유로의 과징금을 카르텔 위반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 유로, 2014.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6.7월에는 Volvo 등 5개 트럭 제조사업자간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EU의 경쟁법 관련사건 사상 최대 금액인 29.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 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 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 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한국 선사들이 관련된 컨테이너

선사 카르텔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받아 사건의 범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카르텔 사건에서 이례적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market test)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컨테이너 선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및 통신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 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불합의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데, 2013.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합의에 대한 제재 및 14.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 유로의 과징금 부과 등 지속적인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로, EU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디지털경제 관련 혁신업종, 금융업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EU경쟁당국은 2013.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시장의견수렴 등을 거치면서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2015.4월 동의 의결절차를 종료하고, 범위반협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측에 송부하여 정식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글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OS 관련 반경쟁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공식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불과 1년여만인 2016.4월 안드로이드 OS관련 구글의 경쟁법 위반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2015.7월에는 미국의 퀄컴사가 3G 및 4G 관련 일부 칩셋시장에서 자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해 칩셋 구매업체에게 리베이트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경쟁사업자 축출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2가지 EU 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식조사가 개시되었는데, 5개월만인 2015.12월 퀄컴이 EU 경쟁법을 위반

했다는 예비적 결론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송부되었다. 이와 같이 EU는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표준특허남용관련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건은 범위반 판단 없이 2014.4월 동의의결(committment)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2012.1월 EU 경쟁당국의 공식조사착수 이후 통상 사건처리기간에 비해 짧은 약 2년 만에 합의종결 된 것으로 EU경쟁당국의 수장인 Joaquin Almunia집행위원은 삼성측이 합의 종결안으로 제시한 라이선싱 프레임워크가 모범적이며, 다른 산업분야에 유사한 분쟁해결메커니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5.4월 EU경쟁당국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업체인 Gazprom이 중부 및 동유럽 가스공급시장에서 EU 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Gazprom측에 송부하였다.

셋째로,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IT, 미디어, 통신, 금융 업종에서 기업구조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탈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3년에는 글로벌 운송사업자인 미국 UPS사의 네덜란드 TNT Express사 인수건을 불허하였고, 2016년에는 Hutchison의 Telefonica UK 인수건을 불허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14.1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결합신고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의 합병관련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현재는 기업결합 신고기준(notification threshold)으로 매출액(turnover)뿐만 아니라 자산(assets), 기업결합금액(the value of a merger) 등을 포함하는 방안, 소수지분 취득(minority shareholdings)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넷째로, EU는 무엇보다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 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11.10일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2년 내(2016.2.27일까지)에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8월에는 그간 집행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대해 회원국들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regulation)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는 2013.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 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축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섯째로,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 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2014년에도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 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EU경쟁당국은 회원국내 조세심판 관행(tax ruling practices)을 조사해왔으며, 2015.10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피아트(Fiat)와 스타벅스(Starbucks)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세금추납명령을 내린바 있다. 2016.8월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불법적인 조세특혜를 주었다며 130억 유로를 애플로부터 환수하라고 명령하였다. 현재 아마존과 맥도날드에 대한 룩셈부르크 정부의 세제혜택이 불법적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U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 워크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1.30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5월에 EU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 하였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한 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IT, 자동차, 제약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사건들에 대한 제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는 1996년 7월 발효한 「신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적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성카르텔은 완전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의 저해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위스 의회는 2002년 9월 27일 경쟁위원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신경쟁법(Cartel Act)」을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 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 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울러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거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상행위의 집중(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을 규율한다.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는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①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등을 통한 조사, ②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하며 경쟁청이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스톡홀름시 법원이 반경쟁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보험, 은행, 전당포, 경매, 도박, 부동산 중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전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1993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연간 매출이 10억 NOK 이상인 기업이 합병을 원할 경우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해야 하며, 경쟁청은 합병 3개월 내 최종 신고(complete notifica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근무일 25일 내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접수 후 근무일 70일 내 예심 판결을 통보한다. 기업은 예심 판결 후 근무일 15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하며, 경쟁청은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여 회신일로부터 15일 내에 최종판정을 한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이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의 일부내용(가격독점행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약(카르텔), 가격독점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래행위, 행정독점행위,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비 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간 집행업무의 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반유형 및 그 법률책

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점협약(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약’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약’으로 구분된다. 그 중 ‘수평적 독점협약’은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약으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하며, ‘수직적 독점협약’은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독점협약을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017.1월 발개위는 「반독점법」상 규정된 자진신고관련 규정인 「수평독점협약의 사건에의 리니언시(감면)제도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카르텔 가담 후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징금 전액면제 또는 80%이상 감면, 2순위 신고자의 경우 30%이상 50%이하 감면, 3순위 이하 신고자에 대해서는 30%미만 감면 폭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가격독점행위’로서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있다.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 또한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허위표시, 허위홍보, 상업비방),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원(약 1조 7,0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원(약 3,4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원(약 6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商談)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審査; 30일간)와 중점심사(進一步審査;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전심사(약 120일정도가 소요)를 받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이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치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 등을 포함한다. 위반시에는 위법행위의 중지, 위법소득의 몰수, 과징금 부과(위법소득의 1배~3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중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낙찰무효처리 등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가격독점행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위법소득 5배 이하의 과징금 병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업명령 또는 영업취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상업적 뇌물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베트남은 시장경제의 정착과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경쟁법(Law 27/2004/QH11)」이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베트남 「경쟁법」은 ①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과 경제 집중 행위 등의 경쟁 제한 행위와 ② 영업비밀 침해, 영업 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 경쟁기업에 대한 중상모략 등의 불건전 경쟁행위를 규제하며, 개인 사업자와 기업(공공재·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독점 산업 부분 종사 기업,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포함)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각 산업계 협회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경쟁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서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시행의 활성화화를 위해 산업무역부 산하에 경쟁관리국을 설치하였다. 본 기관은 시장경쟁과 관련한 실질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경쟁관리국은 반경쟁적 행위 사건 접수·조사·심사·처리업무, 경제집중 규제는 물론, 시장지배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축·관리함으로써 산업무역부 장관의 경쟁정책 업무를 보좌한다. 이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미비로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 분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RTP Act: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

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비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 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년 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에 따라 상품시장에서의 사업자의 독점적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

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증권시장)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 러시아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협정 등이 러시아 영토 내 상품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또는 기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 동법을 적용한다. 통상 시장지배적 위치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는데 1개 기업이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위치로 판단하게 되면 독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위치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시장내에서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위치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외에 집합적 시장지배 지위(collective dominant position)가 있는데 이는 수개의 독립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에 규정하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상향 또는 하향과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며,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러시아 경쟁법은 상업 법인 또는 개인이 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도의를 벗어난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러시아는 경쟁법 적용예외를 두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생산의 특성상 비경쟁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 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에 관한 법」(1995.7. 제정)에 의거,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자연독점 기업간 이해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시장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22일 WTO가입절차를 완료하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 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

를 들어, 광물자원의 생산·개발·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러시아 보험시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연방 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2013.9.1일부터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자본의 러시아 보험산업 진출에 대하여 비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는 WTO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 중 외국인 지분이 49%이상인 기업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 이상이 될 경우, 규제당국은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아내 자보험회사들은 양국 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나 가능하다.

러시아내 보건산업은 2012.1월 발효된 「러연방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사회보전법(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통상산업부와 연방보건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내 조제약품의 제조·판매·사용은 러시아 보건부에 등록한 이후에 가능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결과가 필요한데 이때 일부는 러시아내에서 실시한 임상결과가 필요하다. 조제약품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등록은 기기 성능에 대한 증빙서류, 안정성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Rules for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허가는 연방 허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세부절차는 「의약품 제조 허가에 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ines, approved by Government Resolution No. 686, dated 6 July 2012)』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내에서는 등록된 약품을 제조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다. 의료장비 제도는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의료장비제조허가에 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al Equipment,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 33, dated 22 January 2007)』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의료 사용을 위한 의약품 수입에 관한 규정(the Rules of Importation of Medicines Intended for Medical Use, adopt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771, dated 29 September 2010)』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이 체결된 이후, 관세동맹국가내에서 등록된 제조약품의 수입허가는 모두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제조약품의 러시아 지역내 반입에 있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170억 달러로 추산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의료서비스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무상지원이 원칙이나 민간의료보험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09년말 기준 전체 러시아인의 10%만이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직장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자발적인 의료보험 가입 규모는 1,240억 루블로 2013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는 592억 루블로 전년도 동기대비 8% 증가하였다.

》》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시장		85	103	118	130	150	171
개인 지출	금액	47	60	67	78	91	107
	비중	55%	58%	57%	60%	61%	63%

출처: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2011년은 추정치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썬트), European Medical Center(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 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는 러시아 법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러시아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년 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였다.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부문 민간투자자에 대한 장려금도 도입하였다. 통신부문의 Qatar Telecom과 Woqod의 석유제품, 석유, 디젤, LPG, 역청, 중유 및 항공연료 독점 공급 등 독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도 있다. 상무무역부는 국가개발계획(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해 오는 기계·장비의 관세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품과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QSTP)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카타르 정부의 장기 전략은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카타르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 관행과 규정은 아직도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집트는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여전히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2004년 7월에 출범한 현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요르단은 과거 요르단 국영통신회사 등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에 독과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타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되어 왔으나, 요르단 국영통신회사를 포함하여 2005년 여타 국영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2010년까지 민영화를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금융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요르단 내 은행 수는 총 25개로서 국내 상업은행(9), 이슬람계 은행(2), 투자은행(5), 외국계 은행(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농업과 주택, 도시개발 등을 전담하는 5개의 특수은행이 존재한다. 자본금 규모에서 최대 은행은 Arab Bank(5억 달러), Housing Bank for Trade and Finance(3.5억 달러), Jordan National Bank이며, 이들 3개 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212억 달러로 요르단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73%를 차지한다.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 및 financing의 경우 내외국계 기업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대출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요르단 내 외국기업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투자자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송금하며, 중앙은행에 통보 없이 투자관련 자금 이체 및 이관이 가능하다.

1996년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번하다.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 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전체 근로자의 30%(QIZ의 경우 50%)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불법고용기업은 일 50JD(약 7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고용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평일 125%, 휴일 150%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은 월 150JD(약 210달러)이며, 인상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법정 최저근로 가능연령은 만 16세이다. 인건비는 급여, 사회보장세(기본급여의 18.75%로서 고용주 12.25%, 근로자 6.5% 분납), 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쿠웨이트 내에서 외국 기업이 물품 공급, 용역, 건설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두어야 하며 에이전트 계약 하에 발주처 등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에이전트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추천 등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칫 불성실한 에이전트와 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수주 활동 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에이전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 시 일정기간의 에이전트 계약기간(예 : 3년)이 종료되는 경우 에이전트 관계가 자동폐기 되도록 하고, 상호합의하에서만 에이전트 계약이 연장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 부처 및 국영기업(군, 석유 부문 모두 포함) 프로젝트 수행 시 쿠웨이트 국무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쿠웨이트 국적자 고용 의무가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였으나, 2015년부터는 의무고용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므로(의무고용비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함) 사업추진 시 해당 프로젝트의 의무고용비율을 확인하고, 의무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과테말라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 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테말라 정부는 현재 경쟁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금년 말까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 분야, TV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으로는 공항,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은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경쟁이 없는 국내시장에서 자연스레 독점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 철폐 이후 외국 기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 흑인기업 출현 등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물류, 교통, 통신부문은 아직도 사실상 독점시장으로 남아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노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산업 전반의 경쟁 정도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최시 축구경기장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 15개사의 담합 사례에 대해 총 14.6억 랜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대만은 일방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함에 따라 셰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14.8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6건으로 중국산 수건/구두/과산화벤조일/론갈리트/포틀랜드시멘트와 그 소결재 및 한국, 중국산 스테인레스강 냉연제품(300계열) 등이 있다.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2013.10월 동 법의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권이 강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가 EU규범에 가깝게 되는 조정되었다. 한편,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과정에 있는 기업은 국가보조규정으로 부터 면제되는 문제가 있다. 특정부문의 자유화와 관련, EU는 많은 수의 세르비아 사업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운송, 인프라, 우정서비스, 방송, 농업, 환경 등 부문에서 EU법과 조화되도록 시장자유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 조건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투자제한에 대한 원칙은 없으며, 코스타리카 「헌법」 상 일부 국유사업을 제외하고 무역자유를 제한하는 독과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재화에 대한 물가통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생성단가, 대중교통요금, 연료가격 등 일반 공공서비스요금의 경우 공공물가서비스청(ARESEP)에 의해 통제·관리된다. 이러한 코스타리카의 자유무역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외국인 지분 참여가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 보험, 석유수입의 3개 업종은 국가독점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2009.1월 CAFTA의 발효와 함께 동 시장에 대해 점진적으로 민간부문 참여가 가능해져, 현재는 석유수입만 국가독점 부분이다. 국영공사(RECOPE)는 석유를 포함한 탄화수소(Hydrocarbon)의 수입, 정제,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코스타리카 전력공사(ICE)는 대부분의 국내전력 생성 및 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력설비용량

은 2,590MW 수준이다. 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민간부문 참여는 총 생산량의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외국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법령 제 7200호」에 따라 민간기업의 전력 생산을 전체 생산량의 15%까지 허용한다(개별기업 최대 20MW 규모). 또한, 「법령 제 7508호」에 의거, BOT방식으로 건설된 전력플랜트의 경우 총 생산량의 15% (최대 50MW)를 추가로 생산가능하다. 관광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내선 항공사의 경우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되며, 해안선(밀물 기준)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6.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1월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활동은 주로 공정경쟁을 통한 국가경제 체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4.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활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11.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법제화(「법률 제 358호」)되어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를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요약문

관세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관세율은 낮아졌다. 공산품 관세의 경우, UR을 통해 선진국은 평균 40%, 개도국은 평균 37% 인하되었다. 그러나 관세는 WTO체제하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통상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DDA 협상은 2008년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양자협상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2016년에는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FTA 발효 건수가 15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중미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과의 FTA가 2016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되었고, 현재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의 협상도 진행 중인바 우리나라의 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의 기회, 목적, 방법,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과세의 기회에 따라서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뉘고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 보호관세, 방법에 따라 중가세, 종량세, 혼합세, 성격에 따라 일반관세, 특수관세로 분류된다. 일반관세는 국정관세, 협정관세를

말하며, 특수관세에는 특혜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 등이 포함된다.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관세는 수입관세로 이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되며 동 관세율표는 국제품목분류기준인 HS code에 따르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인바 여기에는 다자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도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 약 13.9%, 평균 양허세율은 약 16.8%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선진국은 섬유, 의류 등 일부 자국 내 사양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은 운송장비, 전기기계 및 농산물 분야의 관세율이 높다.

수입규제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온두라스,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의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중고자동차와 부품, 중고기계류,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 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환경보호의 차원

보다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방글라데시, 시리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쿠웨이트, 시리아, UAE 등 중동 국가들은 종교상 또는 정치상의 이유로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을 제한하고, 이스라엘산 수입품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상품 수입과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 및 화학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WTO는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 국제수지문제 등의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일시적으로 예외적인 수량제한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량제한은 WTO협정과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대부분 이미 폐지되었거나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수량제한의 대표적인 예였던 섬유류 수입 쿼터제가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각자 중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일부 섬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쿼터를 적용하거나 규제한 바 있다. 일본은 총 17개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EU, 한국 등의 철폐 요구에도 불구하고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소형자동차에 대한 수입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2011년부터 동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2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하였고,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다. 필리핀은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우유, 쇠고기통조림 등의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의 차원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자동등록관리제도, 수입상품분급제도 등의 수입규제제도를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의무화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을 규제하기도 한다.

통관절차

통관절차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절차상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품목분류 임의 변경, 복잡한 서류절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역업자에게 상당한 시간·금전적 교역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절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로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무역원활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DDA 중단에 의해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여타 DDA 이슈들에 비해 논의 진전이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무역원활화는 2011년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대표적인 조기수확 의제로 거론되었으며, 이후 회원국 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발리 각료결정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인도의 반대로 채택 시한인 2014.7.31일을 넘기며 이행 작업이 지연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

였으나, 미국과 인도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 2014.11.27일 정식으로 WTO 협정에 편입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WTO 설립 및 DDA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협상으로 이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절차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서류 및 문서요건의 축소 및 조화 등 수출입 여건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OECD(2011, 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선진국은 10%, 저소득 국가는 14.5%, 중하위 소득국가는 15.5%, 중상위 소득국가는 13.2%의 잠재적 교역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2013)는 무역원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2,000만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TO의 발표들에 따르면 그간 세계 각국은 통관절차를 원활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통관절차 분야의 경우 통관 자동화시스템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활용, 통관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운용 등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

각한 피해'(serious injury)라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으로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별된다.

WTO 통계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총 297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5년과 2007년을 제외하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총 10건 이상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2002년은 총 34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가 개시된 해이다. 작년인 2015년에는 2건으로 조사개시 건수가 다시 한자리 수로 감소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의 순이다. 선진국들은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폴란드, 슬로베니아와 같은 동구권 국가들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는 특징을 보인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입국 정부는 덤핑(보조금 지급)이 발생하여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수입(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조사를 통해 판단한 경우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전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01년 372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2008~09년에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208건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편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03년에 224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98건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2013년부터 다시 15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4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인도, 미국의 순서이며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 EU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빈번하게 취하는 국가의 순위도 이와 같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화학제품에, 미국은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조금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GATT 협정에서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간접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 규

정은 없다.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거나 소비를 증가시키고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과거 GATT 협정과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함으로써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보다 강화하였다. 동 협정은 제조업 부문의 보조금만을 다루고 있으며 보조금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왜곡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조금 문제는 WTO 체제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부당성 증명, 보조금 정의의 명확화 등의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달라 보조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적 보조금의 허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입장 차이 뿐 아니라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보조금, 보조금의 철회, 심각한 손상 등 보조금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도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주로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조선, 철강, 섬유 등 사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지칭한다.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 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를 공고하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쿼터 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적용범위는 MFN원칙,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표시요건,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할당관세 등의 적용과 같은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 작성 등에 대해 적용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무적으로 관세상의 특혜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적용이 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즉, 특정국가간의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goods wholly obtained test)기준과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이 있으며 실질적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와 WTO는 공동 작업으로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1995년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타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3.9.26일에는 WTO 원산지규정위원회에서 반덤핑 조치 등 적용영역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2007년 이후 진전이 없는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되었다.

반면,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특유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상이하다. 한편, 2013년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 각료결정에 따라 최빈국의 시장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빈국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 관련 지침이 제시되었고 2015년 제10차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최종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발리 각료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이후 제네바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동 합의문에서는 최빈개도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상당한 또는 실질적 변형요건을 완화 또는 단순화해 주었다. 또한 동 합의문은 최빈개도국간 원산지 누적확대 노력을 독려하고 자가증명서 허용 등 관련 서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국 GDP의 약 10%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시장으로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를 폐쇄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함은 물론 조달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효율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정부조달은 다자협상 또는 양자협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다자무역체제 뿐 아니라 지역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관한 논의는 과거보다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협정으로는 GATT, GATS와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 있으나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 관련 무역에 대해서 비차별원칙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체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항의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만이 준수 의무를 가지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GPA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도 국내기업에 혜택을 주는 조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칠레 등 일부 국가는 GPA가 규정하는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에 관련된 조건 및 이행사항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개방적인 정부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타결된 개정 GPA가 2014년 4월 발효되면서 회원국의 조달시장이 확대 개방되었고 개정 GPA에 개도국에 대한 과도조치(가격 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도국의 GPA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국과 호주를 비롯하여 10개 국가가 G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조달 시장 개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TBT는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SPS의 경우는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상의 위험’ 및 ‘질병 또는 병충해로 인한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WTO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은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보건 및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기술규정이나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의 비차별원칙과 더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채택 또는 적용을 금지하는 필요성(necessity) 원칙, 국제표준을 사용할 의무,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자무역규범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 회원국의 건강과 생명 관련 정책의 합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과학적 원칙’을 도입하여 SPS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것과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과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TBT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TBT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통보건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SPS도 마찬가지로 SPS 통보건수가 높아지고 있으며, 과학적 증거와 조치의 상관관계 입증에 있어서의 구체성 및 충분성 입증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오염 및 각종 질병·병충해의 진화로 인해 SPS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SPS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 인식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SPS 조치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국제무역에서 무형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여러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히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TRIPs협정은 위조 상표의 교역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국제협약을 모두 흡수하여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위의 확장, 신유형 지재권 보호 등으로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내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경쟁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인력 및 시설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011년 11월 방글라데시 등 최빈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협정 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TRIPs 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안하여, 2013년 상반기 TRIPs 이사회를 거쳐 2021년 7월까지 연장되었다. 의약품의 경우, TRIPs와 공중보건에 대한 2001 도하 선언에 의해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TRIPs 협정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국가들의 경우 무역협상, 논의, 기술 원조 및 전문가, 선진국,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침서와 같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특허심사 품질향상과 지재권 관련 중소기업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와 상표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중국은 2014년에 설립한 지식재산권 법원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단일특허제도의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조품 단속과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개진하고 있다.

서비스

GATT 체제하에서의 제8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UR협상 당시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 채택되어 2000.2월부터 GATS하에서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재개되었다. 이후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9개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DDA가 출범하면서 DDA 선언문에 서비스협상의 일정 및 최종협상시한이 명시됨에 따라 동 분야의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02.6월에 서비스 분야별 1차 양허요청안을 제출하였고, 2003.3월에 양허요청안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양자간·다자간 협상과 서비스 국내규제 및 규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2003.9월)가 결렬되면서 최종협상시한의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서비스협상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나, 2004.8.1 'July Package'가 채택되면서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서비스 협상의 경우 July Package에서 1차 양허안 미제출 국가의 조속한 제출을 독려하고 1차 양허안 기제출 국가의 수정 양허안 제출시한(2005.5월)을 명시함에 따라 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서비스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5월에는 수정양허안이 제출되었다. 제6차 WTO 각료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DDA 협상은 2011년 들어 DDA 출범 10년째를 맞이하여 연내 협상을 타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WTO에서는 1/4분기 동안 복수국간·양자간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2016.12월 현재까지 DDA는 미타결 상태이다.

DDA 서비스 협상이 2005.5월 주요국들의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11년 하반기부터 호주 및 미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DDA 서비스협상을 주도하는 공조(RGF)국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TiSA)의 협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2012.2월부터 2013년 초까지 개최되었으며, 2013.3월부터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시작하였다. 2013.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TiSA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 TiSA 협상 참여국들이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 등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6.12월 기준 21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고 협상 완료기한을 설정해놓지 않고 현재 참여 국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GATS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장벽은 이러한 네 가지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MA) 및 내국민대우(NT), 그리고 최혜국(MFN)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국내 사업체 설립 시 지분제한, 외국서비스 공 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자격요건, 인허가, 기타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국내규제 등이다.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 으로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 서,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MFN 대우를 일시적으로 적용 하지 않는 목록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들 네 가지 요소 중 시장개방 양허 와 MFN 대우의 일시적 유보 목록은 GATT에서의 관세양허계획과 같이 GAT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통상장벽은 내국민대우 제한 및 규제 조치로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해운업에 있어서는 각국의 해운법 에 따라 외국 해운사의 연안항해 및 화물수송이 제한되어 있다. 통신업 의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지분 제한, 시장접근 제한 등의 장벽이 있다. 금 융업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지연, 엄 격한 지점 승격요건 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으로 국적선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 및 통신 분야에 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과 건설기술자의 이동 등 인력이동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는 운송·통신 분야의 진입제한 이외에 도 유통·건설 등에 있어 합작요건 등 지분제한이 있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요건상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이 많으며, 외국인 설 립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서비스시

장은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WTO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 단계적인 개방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인 규제 완화·철폐가 이루어졌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제한목록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을 제한 완화·철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제한·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이며, 여기에는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와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여타 금융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는 GATS에 부속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는 물론 한·미 FTA와 TPP에서도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들은 당사국이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나 금융제도의 보전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합리적인 이유의 이른바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도 정에 따른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이자 금융서비스 무역장벽이다.

WTO에서의 협상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자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복수국간협정의 형식의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 개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TiSA 협정에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18개 규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GATS 보다 더 높은 규범 수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2016.11월 21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향후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2015.10월에 타결된 TPP 협정은 단순한 FTA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른바 Mega FTA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TPP 협정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이 있으며, 규범 수준은 한·미 FT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규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금융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연관되어 있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해외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서민금융 위축 우려,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투자

투자장벽은 한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들의 집합체로 크게 설립 전 단계와 설립 후 단계의 장벽으로 구분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투자자와 동등하게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주재(access and presence)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사항을 말한다. 설립 전 단계의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는 진출대상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설립 후 단계의 장벽은 기투자된 외국인투자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및 자본조달 관련제도 역시 장벽이 될 수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투자장벽은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이해상충에서 비롯된다.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유치국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 사항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투자유치국의 주권사항으로만 인정하여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투자유치국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이해상충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장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 투자지분관련 제한,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 이행의무의 부과,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관련 제한,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제한 등이 있으며 설립 후 단계에서의 투자장벽은 과세 문제, 금융 및 자본조달 상 제약, 인력의 현지 파견 제약 등이 있다.

투자업종에 대한 제한의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방식으로 투자유치국은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정책 목적 하에 경영권을 국내투자자(내국인)가 보유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을 제한한다. 투자지분관련 제한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제한의 강도는 개도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사 및 사무소 설립관련 제한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외환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및 사무소 설립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도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 투자관련 이행의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자국 경제발전정책 차원에서 다수의 이행의무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제공과 결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시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체제전환국, LDC 등의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사용권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 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투자장벽은 현지에서의 세금문제이다. 과세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주로 선진국들이 방대한 과세자료의 집적 및 정교한 과세방안의 개발 등으로 조금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투자장벽과 달리 과세 문제는 개도국보다 선진국에서 많이 직면하는 투자장벽이다. 한편, 투자설립 후 현지 운영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의 이전 및 운영자본의 조달 등에 대한 제약이다. BIT에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과세 상 목적 등으로 송금 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친 과실 및 양도차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과세목적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 차원에서 송금을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환경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관련 통상장벽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제19차 회의가 2013년 11월에 개최되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최종안 마련을 2015년으로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

년 이를 시행하기로 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노력은 최근 몇 년간 APEC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6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 규범형식은 복수국간 협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개도국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환경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은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허가대상을 확대시킬 것이며, EU는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를 한층 강화시키고 2016년 ICAO 총회 결과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가능성도 엿보인다. 캐나다 역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하였고, 영국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저탄소사업전략을 통해 경쟁력 확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는 GMO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과테말라 등은 건축이나 사업 허가시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보호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유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캄보디아도 인접국가에 비해 환경관련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중국은 최근 환경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오염배출허가증 제도, 녹색경제와 순환경제의 발전 등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정책인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을 발표하였다. 호주는 기존 ‘탄소가격제’와 ‘탄소세’를 폐기하고 탄소배출감축분을 정부가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으로 매입하는 배출감축펀드 (Emission Reduction Fund, ERF)를 주축

으로 한 「직접행동계획(Direct Action Plan)」을 도입하였다. 또한,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하 국별 기여방안(INDC)을 발표하여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26-28%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약 23.5%를 풍력, 태양광 및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4%, 2025년까지 42%까지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2009년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중진국진입 및 탄소배출 중립국을 목표로 국가발전방안 및 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 중 인도는 환경관련 규제 장치를 발전 및 강화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개별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되고 있으며 대상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쟁정책

경쟁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제한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관행, 즉 기업 간의 공모행위나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상에서 통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은 가격 또는 수요 담합(카르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독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수직·수평적 거래 제한 등이 있다.

경쟁정책을 세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국제기구 및 협의체들은 경쟁정책의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사례 검토, 권고안 채택, 경쟁포럼 채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4개 국가들의 경쟁 환경을 평가하는 경쟁법/정책 지표(CLP: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개발하였다. 다자간 규범에도 경쟁과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되어 왔다. GATT 협정은 수입독점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율(제2조)과 수입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제3조)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1조)93, GATS협정은 독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 시 협의요청 및 협의 의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그러나 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기존의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및 조화를 위하여 WTO와 OECD 범위 밖에 구성된 경쟁법 전문 국제협의체이다. ICN 총회에서는 경쟁정책의 이행, 카르텔, 기업결합 등 각 실무그룹들의 활동을 보고하며 경쟁정책 집행경험 공유, 모범사례 도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ASEAN은 2007년아세안 경쟁정책 전문가그룹(ASEAN Expert Group on Competition)을 설립하여 회원국간 자유무역 확산과 경쟁법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국제 규범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쟁정책은 최근 체결되는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경쟁 당국 간의 협의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정책은 경쟁정책 관련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된 절차적 협력 및 조율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자국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국제기구 등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경쟁법 이행시 상호조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경쟁법을 역외로 확대하거나 경쟁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보호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6 외국의 통상환경

- 분야별 통상환경 -

- ◆ 인 쇄 | 2016년 12월
- ◆ 발 행 | 2016년 12월
-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 인쇄처 | (주)나모기획 (044-998-6998)